

방통융합정책연구 KCC-2020-33

#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령 정비방안 연구

(Research o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for strengthening user protection)

권오상 외

2020. 12

연구기관 : 미디어미래연구소



방송통신위원회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이 보고서는 2020년도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방송통신  
융합 정책연구사업의 연구결과로서 보고서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  
이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제 출 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령 정비방안 연구』의 연구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연구기관 : 미디어미래연구소

총괄책임자: 권오상 선임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윤금남 책임연구원

이순환 책임연구원

김민주 연구원

남승용 연구위원

노창희 연구위원

성지연 연구위원

유지운 연구원

# 목 차

요약문 .....	viii
<b>제1장 서론 .....</b>	<b>1</b>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1.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목적 .....	2
<b>제2장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분석 .....</b>	<b>3</b>
제1절 정보통신망법 체계 및 정비 현황 .....	3
1. 정보통신망법 관련 환경변화 .....	3
2. 정보통신망법 연혁 .....	4
3. 기존 정보통신망법상 목적 및 구조와 주요내용 .....	11
4.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주요 내용 및 한계점 .....	21
제2절 정보통신망법 등 이용자보호 관련 법체계 .....	23
1. 정보통신망법 .....	23
2. 전기통신사업법 .....	26
3. 방송통신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29
제3절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이용한 불법정보, 범죄 등 행위 유형 .....	36
1. 불법정보 .....	36
2. 디지털성범죄 .....	42
3. 청소년 범죄(사이버 폭력) .....	49
4. 스팸 .....	53
제4절 플랫폼 사업자 약관 및 정책 분석 .....	56
1. 유튜브 .....	56

2. 네이버 .....	62
3. 카카오 .....	66
<b>제3장 주요국의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 보호 정책 .....</b>	<b>17</b>
제1절 EU 입법안 .....	71
1.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한 불법콘텐츠 규제 .....	71
2. 디지털 서비스법 제안 내에서의 불법콘텐츠 규제 .....	72
제2절 독일 이용자 보호 정책 .....	77
1. 개요 .....	77
2. 정보통신망 상 불법·유해정보, 범죄 등 행위의 유형 및 법규제 .....	78
제3절 영국 이용자 보호 정책 .....	87
1. 개요 .....	87
2. 정보통신망 상 불법·유해정보, 범죄 등 행위의 유형 및 법규제 .....	88
제4절 미국 이용자 보호 정책 .....	98
1. 개요 .....	98
2. 정보통신망 상 불법·유해정보, 범죄 등 행위의 유형 및 법규제 .....	98
제5절 일본 이용자 보호 정책 .....	113
1. 개요 .....	113
2. 정보통신망 상 불법·유해정보, 범죄 등 행위의 유형 및 법규제 .....	113
제6절 시사점 .....	121
<b>제4장 정보통신망법 정비방향 .....</b>	<b>2</b>
제1절 정보통신망법령 정비 필요성 .....	123
제2절 정보통신망법 정비 방향 .....	125
1. 정보통신망법 개정 .....	125
2. 이용자 보호 관련 신법 신설 .....	126
<b>제5장 결론 .....</b>	<b>12</b>
제1절 정보통신망법 체계 정비에 대한 제언 .....	129

제2절 추가이슈 1_허위조작정보 .....	130
1. 허위조작정보 현황 및 규제의 필요성 .....	130
2. 국내 허위조작정보 입법안 논의 .....	132
3. 허위조작정보 소관 법률에 대한 논의 .....	135
제3절 추가이슈 2_혐오표현 .....	136
1. 혐오표현 현황 및 규제의 필요성 .....	136
2. 혐오표현 관련 입법안 논의 .....	139
3. 혐오표현 소관 법률에 대한 논의 .....	141
제4절 추가이슈 3_디지털성범죄 .....	143
1. 디지털성범죄 현황 및 규제 필요성 .....	143
2. 디지털성범죄 관련 입법안 논의 .....	144
3. 디지털성범죄 소관 법률에 대한 논의 .....	146
<b>[참고 1] 정보통신망법령 정비방향 관련 전문가 의견 .....</b>	<b>81</b>
<b>[참고 2] 중국 정보통신망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b>	<b>51</b>
<b>참 고 문 헌 .....</b>	<b>171</b>

## 표 목 차

<표 2-1>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986)」 주요 내용 .....	5
<표 2-2> 제2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추진 목표 및 전략 .....	7
<표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9)」 개정 주요 내용 .....	7
<표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1)」 개정 주요 내용 ..	8
<표 2-5> 「개인정보보호법(2011)」 과 「정보통신망법(2001)」 비교 .....	9
<표 2-6> 「정보통신망법」 연혁 .....	01
<표 2-7> 「정보통신망법」 주요내용 및 조문 .....	21
<표 2-8>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정보 유통 금지 정보 .....	31
<표 2-9> 사업자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의무 .....	71
<표 2-10> 통신과금서비스 유형 .....	91
<표 2-11> 정보통신망법 목적 .....	22
<표 2-12> 정보통신망법 내 개인정보보호 존치 조문 .....	32
<표 2-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의 처분성 .....	33
<표 2-14> 불법정보 유형별 행정제재조치 .....	53
<표 2-15>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	73
<표 2-16> 불법·유해정보 분류체계 .....	8
<표 2-17> 정보통신망법 내 불법정보의 유형별 형사처벌 규정 .....	24
<표 2-18> 음란물 분류체계 .....	34
<표 2-19> 불법컨텐츠범죄 .....	54
<표 2-20> 주요 성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2008-2019) .....	64
<표 2-21> 현행법상 디지털성범죄 법정형 체계 .....	84
<표 2-22> 학교폭력실태조사 피해 유형별 비중 .....	25
<표 2-23> ‘20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요약 .....	55
<표 2-24> ‘20년 상반기 스팸 발송량 .....	55

<표 2-25>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	7 5
<표 2-26> 유튜브에서 금지되는 스팸 콘텐츠 .....	8 5
<표 2-27>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지 콘텐츠 .....	9 5
<표 2-28>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연령제한 콘텐츠 .....	10 6
<표 2-29>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콘텐츠 규정 .....	10 6
<표 2-30> 네이버 스팸메일 기준 .....	3 6
<표 2-31> 네이버 이용약관 및 정책 상 청소년 보호 정책 .....	5 6
<표 2-32> 카카오 서비스 이용 시 금지하는 행위 .....	7 6
<표 2-33> 카카오 통합서비스 약관에 의한 스팸성 게시물에 대한 처리 .....	8 6
<표 2-34> 카카오 청소년 보호정책 .....	9 6
<표 3-1> 독일의 불법·유해정보 규제 체계 .....	8
<표 3-2> 영국의 불법·유해정보 규제 체계 .....	9
<표 3-3> 미국 리벤지포르노 처벌법 운영 주와 법령 .....	21
<표 3-4> 미국의 불법·유해정보 규제 체계 .....	17
<표 3-5> 일본의 불법·유해정보 규제 체계 .....	18
<표 4-1> 현행 정보통신망법 규율 내용/소관/분리가능성 .....	4
<표 5-1> 혐오표현 정의 .....	8



## 그 립 목 차

[그림 2-1] 데이터3법 개정의 현황 .....	3
-----------------------------	---

## 요 약 문

1. 제 목: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령 정비방안 연구

2. 연구 목적 및 필요성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법률 내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한 후 법의 입법목적 및 정체성 등이 모호한 상황이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조항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부 이관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 조항으로 남게 되었고, 이러한 삭제 조항 비율이 일반 다른 법률보다 높아 법의 체계가 혼란해졌다. 또한 개인정보 등 삭제 조항을 제외하고, 존치하는 조문 또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배치되어 있지 않아 법의 구조 및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삭제 조항에 따른 가지 조항을 정비하고, 존치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이용자보호,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조문에 대한 정비를 통해 법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보호법익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한편,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정보통신망 기술발전이 발전하고, 이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이에 따른 이용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N번방), 불법촬영물 유통, 온라인 상 혐오표현, 사이버 폭력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향후 정보통신망 기술은 더욱 진보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도 끊임없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및 관련 분쟁에 대한 능동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연구 필요성에 입각하여 본 연구는 정보통신망법의 체계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 방향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즉, 법체계 정비를 통해 현행 정보통신망법령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보호법익을 명확히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방향을 검토한다.

### 3. 연구의 구성 및 범위

본 연구는 정보통신망법의 체계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 방향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으로의 이관 후 정보통신망법령의 체계 현황을 검토하는 한편,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이용한 불법정보, 범죄 등 행위 유형을 분석했다. 또한 정보통신망서비스 사업자의 이용자보호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플랫폼사업자 약관을 분석했다. 그 다음으로 해외 주요국의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 보호 정책을 조사 및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우리법 체계에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았다.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한 후 정보통신망법 정비방향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더 검토해야 할 사항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논의들을 정리했다.

이를 위해 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밝혔다. 제2장은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법령을 분석하였다. 현행 정보통신망법령 체계와 관련된 이용자보호 법체계를 분석했으며,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이용한 불법정보, 범죄 등의 행위 유형을 검토했다. 또한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분석하여 사업자의 이용자보호 현황을 검토했다. 제3장은 최근 입법된 EU의 Digital Service Act(DSA)을 분석하는 한편 독일, 영국, 일본의 이용자 보호 정책을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했다. 제4장에서는 제3장까지의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정보통신망법의 정비 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 제5장에서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용자보호 관련 이슈를 추가적으로 검토했다. 허위조작정보, 혐오표현, 디지털 성범죄 등이다.

## 4. 연구 내용 및 결과

### 가.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분석

데이터3법의 개정안이 통과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규제 일원화를 위하여 법률 제4장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게 되었다. 즉,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기존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이한 제재규정, 일부 차이가 있는 행위규정, 기존 정보통신망법에만 있었던 규정은 특례(제6장)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존치하는 정보통신망법 체계를 전면 재 정비하고, 그와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보통신망법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1986년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으며, 1987년부터는 ‘제1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1987~1991년)’을 추진하였다. 1992년에는 ‘제2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1992~1996년)’을 추진하기 시작하였고, 1999년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었다. 2001년 1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였는데, 고도화된 정보통신망 구축 및 정보화 사회의 구현, 사적 부문에서의 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정되었다. 이후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유사 규정이 다수 있어 혼재를 겪어왔다. 마지막으로, 2020년 2월, 개인정보 관련 조문을 이관하게 된다.

기존 정보통신망법은 ①정보통신망의 이용 촉진, ②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 ③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④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목적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지만 기존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제4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들이 모두 삭제되면서 많은 부분이 삭제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존치하는 법률 규정은 단말기 접근권한, 통신과금서비스 등이다. 이에 대해서는 본문에서 자세하게 살펴본다.

정보통신망법 등 이용자보호와 관련된 법체계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 정보통신망법 외에 전기통신사업법과 방통위 설치법을 검토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불법정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이용자 보호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의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 조항은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침해사고와 광고성정보에 대한 이용자 보호 조항은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동법 및 타법(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제하는 이용자보호 체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일관된 법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은 통신분야 이용자보호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서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법의 목적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진입부터 사후적인 금지행위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이용자보호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방통위설치법은 방통위법은 제21조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로 제3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는 통신윤리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제24조에서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는 경우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재조치를 정하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재조치를 정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이용한 불법정보, 범죄 등 행위 유형으로 불법정보, 디지털 성범죄, 청소년 범죄(사이버폭력), 스팸 등에 대해 각각의 개념, 현황, 규제에 대해 검토했다. 세부내용은 본문에서 다룬다.

마지막으로 플랫폼 상에서 사업자가 수행하고 있는 이용자보호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 및 정책을 분석했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의 세 플랫폼 사업자의 약관을 분석하였다. 세 사업자 모두 관련 법률에 따라 약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이점은 유튜브와 카카오는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을 한다는 점이다.

#### 나. 해외 주요국의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 보호 정책

EU는 2020년 12월 15일, 전자상거래법의 내용을 현 상황에 맞추어 대폭 개정한 ‘디지털서비스법’ 입법 제안을 발표했다. 유럽위원회 측은 전자상거래법이 20여년 전에 채택되었기 때문에 내용개정이나 수정을 넘어선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제안에는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온라인플랫폼사업자들의 운영투명성 및 책임프레임워크 구축, 단일시장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특히 ‘불법콘텐츠’의 정의에 대해 제품이나 서비스, 활동과 관련된 광의의 개념으로 적용함으로써 그 범위를 넓혔다. 정보나 활동의 불법성이 유럽연합의 법이나 회원국의 법에 기인하는지 여부, 위반법률의 성격, 내용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불법적 활동을 규제범위에 포함시켰다. 즉,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혐오표현(증오표현), 차별콘텐츠 등과 같이 그 자체가 불법이거나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의미하고, 불법아동성착취 이미지 공유, 개인이미지의 불법적인 비동의 공유, 온라인 스토킹, 위조제품 판매, 저작권 보호자료의 무단사용, 소비자보호법위반 등의 활동도 포함시켰다. 한편, 소셜네트워크 또는 온라인마켓플레이스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최종사용자(서비스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대중에게 배포하는 호스팅 서비스업체로 정의했다.

독일은 정보통신망 상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단일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개별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불법·유해정보 유형 중 대부분은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아동성적확대, 아동성착취물, 모욕, 명예훼손, 비방, 사이버스토킹, 해킹, 바이러스(위법행위목적의 소프트웨어 제작), 디지털성범죄(카메라 이용, 리벤지포르노 포함) 등이다. 청소년 유해물 표시위반은 청소년미디어보호법에서, 디지털 성범죄(비동의촬영물 배포)는 예술저작권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비동의광고 노출은 불공정경쟁금지법에서, 개인정보침해는 연방데이터보호법에서, 혐오표현은 네트워크집행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영국도 정보통신망 상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단일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개별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극단적음란물과 아동성착취물, 사생활촬영물 비동의 유포, 사이버협오는 형사사법에서, 음란물출판은 음란물출판법에서, 청소년 유해물 표시위반은 디지털 경제법에서, 사이버스토킹은 커뮤니케이션법에서, 불법개인정보취득과 이용은 데이터보호법에서, 불법촬영은 관음법에서 각각 규율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법 체계에 따라 연방법, 주법에서 관련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우선 음란물, 미성년자를 묘사한 음란물, 미성년자 음란물 보호, 아동성착취물 전송, 해외 제작 아동성착취물 유통, 사이버스토킹, 상업용메시지의 표시기준과 동의, 불법도박은 연방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연방법과 주법이 함께 규율하고 있는 행위는 사생활 영상 비동의 유포와 해킹 행위이다. 리벤지포르노의 경우 연방법이 부재하여 주법(캘리포니아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명예훼손의 경우도 연방법이 부재하여 주법(버지니아주)으로 규율하고 있다.

일본은 정보통신망 상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단일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개별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명예훼손, 모욕, 협박, 신용훼손 업무방해는 형법에서, 아동포르노 소지, 제공, 제조, 운반, 수출입, 지열은 아동포르노금지법에서, 아동성매매유인정보는 만남주선사이트제한법에서, 스토킹은 스토커규제법 등에서 각각 규율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국내 정보통신망법처럼 단일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국가는 찾기 어렵다. 실제 국내 정보통신망법도 온라인 상의 모든 불법·유해 콘텐츠를 규율하고 있지 않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해외 주요국들은 국가들마다의 고유법체계로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행위들을 규율하고 있다.

#### 다. 정보통신망법 개선방향

2001년 전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강화, 인터넷상 음란·폭력물에 의한 청소년 보호 등 현행 제도의 개선·보완을 목적으로 하였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의 큰 축을 담당

하고 있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영역으로 이관됨에 따라 많은 조문들이 삭제되었다.

그동안 정보통신망을 둘러싼 입법적 논의는 항상 다양하게 제기되어왔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역시 새로운 내용을 담거나<sup>1)</sup> 삭제하는<sup>2)</sup> 정비작업을 반복하여왔다. 하지만 이번 개인정보 조문들의 이전 및 삭제로 인해 전체 136개 조문에서 89개만 존재하고 있으며, 57개는 삭제된 채로 법에서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정보통신망법 정비 방향으로 우선 현재 정보통신망법을 유지한 채 개정하는 방식의 정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부분이 빠지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통신망 이용자보호, 정보통신망 정보보호(보안), 통신과금 서비스에 관한 내용들과 보칙과 벌칙이 남아있다. 기존에 망법에서 삭제되었던 많은 규정들(인터넷 주소나 전자문서증개인)과 달리 최근 삭제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들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컸다. 기존의 삭제 조문과 가지조문을 정비하고, 새로운 정보통신망의 규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법의 전부 개정과 폐지·제정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기존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다른 개념들이 남아 있으므로 전부 개정의 방식으로 조문을 재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재정비 작업과 함께 정보통신망법의 새로운 이념을 담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며 기존에 미흡했던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정보통신망 기본법」 등으로 법제명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조문의 정비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삭제 조항이 전부 없어지고, 가지조문의 정비가 이루어져 법조항들의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게 되고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복잡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용자보호 관련 신법을 신설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서 살핀 것과 같이 현재

---

1)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제8장 국제협력은 2007년 추가되었다.

2) 인터넷주소 관련 조문이 관련 법 신설로 삭제(2004년), 실효성을 이유로 전자문서 중계자 관련 조문 삭제(2015년) 등이다.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담고 있는 법률이다. 또한 각 분야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하는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이용촉진의 진흥법으로 남겨놓거나, 현재 법제명과 같이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 관한 내용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새로운 법으로 만들거나 타법으로 이관하여 법제정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라. 이용자보호 관련 추가 이슈

ICT생태계는 이용자 중심으로 진화(CPND+U)하고 있으며, 5G 등 이동통신 기반 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정보통신망 체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환경이 급변하고, 지능정보사회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정보통신망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규범 설정과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현행 정보통신망법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법체계 및 현행 이용자보호 이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보통신망 서비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용자 보호 이슈를 법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허위조작정보의 경우, 국내에서는 미디어의 영향이 기존 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에서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로 변화되면서 방송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받고 있던 인터넷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됨에 따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콘텐츠를 심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의결을 하고, 경찰청은 관련 정보 유통자를 처벌하는 등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sup>3)</sup>하였고, 2020년에는 그 대책 중 하나로 팩트체크 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

---

3)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1) 팩트체크 활성화 2) 미디어 리터러시 도입 3) 혐오 차별 표현 금지 4) 역사 왜곡 금지 5) 플랫폼 공적규제 강화 6) 언론사 정보보호 위치 합리화 7)정법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8) 딥 페이크 성범죄 처벌 신설 등 8개 항

이 주도하는 팩트체크 센터 설립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허위조작정보는 현행 법률에 적용되는 허위조작정보와 현행법에 규제받지 않는 공백의 일반적인 허위조작정보로 구분이 가능하다. 현행 법률에 적용되는 허위조작정보가 언론보도인 경우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선거의 허위사실 공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불법 및 유해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70조,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등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현행법상 규제가 가능하기에 허위조작정보는 추가적인 규제가 불필요하며, 법률 규제는 결국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황성기, 2017). 한편,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국내 입법안의 주요 개정 방향은 ‘허위조작정보’란 개념의 구체화를 시도하며 허위조작정보 해결 방안으로 미디어 교육을 규정하는 의안이 주를 이룬다. 허위조작정보는 법률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설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규제 대상 정보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한정된 정보와 제한된 권한으로 판단 주체가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판단에 있어 판단 주체의 주관적 평가 잣대가 개입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위해서는 허위조작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의 조항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관법률 및 감독과 관련하여 혼란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해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의 의무부과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예방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시행 방안도 법률 내에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혐오표현은 전세계적인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UN은 사회

---

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적 소수자의 인권을 위협하는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미국 시카고 대학은 ‘차별금지선언(Non-discrimination Statement)’을 마련, 영국 옥스퍼드 대학은 ‘평등 정책(Equality Policy)’을 채택하였다. 더 나아가 독일은 개별법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있다.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각국 사이에서도 규제의 방식이나 실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각국은 역사적인 배경과 사회적인 경험을 기초로 특정한 혐오표현에 대해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의 실현 역시 사회 분위기에 많이 좌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혐오표현의 규제보다 표현의 자유 보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유럽 국가들은 혐오표현의 규제에 보다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3년 이후 혐오표현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표적 집단에 대한 해악성이 심각하게 드러났다. 2017년에는 남성과 여성 혐오 논쟁을 원인으로 한 유튜버가 발언을 한 유튜버를 살인하겠다고 하며 실제로 해당 유튜버의 주소로 짐작되는 곳으로 향하는 사건이 일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혐오표현은 감정이 담긴 개념으로 국제인권법상 통일된 정의가 부재하며, 국제 및 지역인권기구들은 혐오표현을 정의하고 제한하는데 있어 서로 다른 기준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 문헌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개인 또는 집단을 나타내는 대상과 그 대상의 특징,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포함되는 표현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현행 법률상 혐오에 대해 명문으로 규제하는 법령은 없으며, 다만 혐오 표현에 대응할 수 있는 형사법적 규제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존재한다. 또한 특별법상 장애인차별금지 및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괴롭힘의 하나로 비하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 상 욕 또는 욕설은 혐오표현 중 가장 많은 유형 중의 하나이며 욕설과 악성 댓글 등은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제310조)나 모욕죄(제311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혐오표현 관련 법안은 단순히 혐오표현 사용자에 대한 처벌, 혐오표현 관련 게시물을 삭제 외 혐오표현의 정의와 해악을 설명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찬반의 논란이 많다.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찬성은 혐오표현의 파급력이 광

범위하며, 혐오표현에서 시작되는 차별행위 및 인권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혐오표현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혐오표현 범위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표현의 대상이 된 소수자 집단 전체가 해악을 입었다는 것은 지나치게 막연하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혐오표현의 개념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국 입법례와 다르게 사회적, 역사적 합의된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가 없어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의한 헌법적 보호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혐오표현의 개념 설정과 함께 이에 대한 입법적 규제 모색이 필요하다.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불법촬영으로 인한 디지털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의 정도가 매우 극심한 상황이다. 디지털성범죄는 현실 공간에서의 물리적 접촉 없이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한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내용을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상 해당 범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에 해당되는 범죄 유형은 종래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악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까지 모두 포함된다. 디지털범죄의 유형은 정보통신망과 컴퓨터를 침해하는 범죄와 정보통신망과 컴퓨터를 악용하는 범죄, 정보통신망과 컴퓨터를 이용한 유해물 범죄로 구분된다. 이 중 디지털성범죄는 컴퓨터 이용 유해물 범죄에 해당된다. 현행법상 정보통신망 이용 디지털성범죄로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 등을 범죄규정으로 보기에 그 규제범위가 제한적이고, 정보통신망을 악용하여 음란물의 유통 측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정보통신망법 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타법률과의 관계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규제는 21대 국회에서는 아직 발의된 법안이 없다. 대부분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발의안은 여성가족부와 교육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보통신망법 내 디지털성범죄 법률 마련을 위해서는 디지털성범죄의 유형

을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명확한 법개념을 도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신종범죄 등 다양한 개념과 형태가 등장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정의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가해행위의 내용과 특성 뿐만 아니라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자의 공포감 또는 불안감, 성적수치심에 대한 구체적 규정과 피해자 보호 및 피해방지와 관련한 법률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성범죄는 사이버공간을 개설하여 영리를 취하는 범죄와 결합될 수 있다. 따라서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할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마련과 사이버 공간에 유통되는 불법음란물에 접속하여 이용하고 보관하는 행위의 범죄화도 검토해야 한다.

## 5. 정책적 활용 내용

본 보고서는 정보통신망법 체계의 정비방향을 설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책 기본 방향 및 세부 추진과제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 기술발전 및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이용자 보호 규제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 관련 제도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참조할 수 있는 선행연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6. 기대효과

본 보고서를 통해 관련법이 정비되면 이용자 중심의 보호체계가 확립되어 이용자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용자보호 이슈를 검토하였기 때문에, 향후 이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이용자보호 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제1장 서론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연구의 필요성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법률 내 개인정보보호 조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한 후 법의 입법목적 및 정체성 등이 모호한 상황이다.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조항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전부 이관되면서 해당 조항이 삭제 조항으로 남게 되었고, 이러한 삭제 조항 비율이 일반 다른 법률보다 높아 법의 체계가 혼란해졌다. 또한 개인정보 등 삭제 조항을 제외하고, 존치하는 조문 또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배치되어 있지 않아 법의 구조 및 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삭제 조항에 따른 가지 조항을 정비하고, 존치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이용자보호, 통신과금서비스 등의 조문에 대한 정비를 통해 법의 정체성을 재정립하고 보호법익을 명확하게 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한편,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정보통신망 기술발전이 발전하고, 이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이에 따른 이용자들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N번방), 불법촬영물 유통, 온라인 상 혐오표현, 사이버 폭력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향후 정보통신망 기술은 더욱 진보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도 끊임없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 및 관련 분쟁에 대한 능동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 필요성에 입각하여 정보통신망법의 체계 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 보호 강화 방향 도출을 목적으로 한다. 즉, 법체계 정비를 통해 현행 정보통신망법령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보호법익을 명확히 한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방향을 검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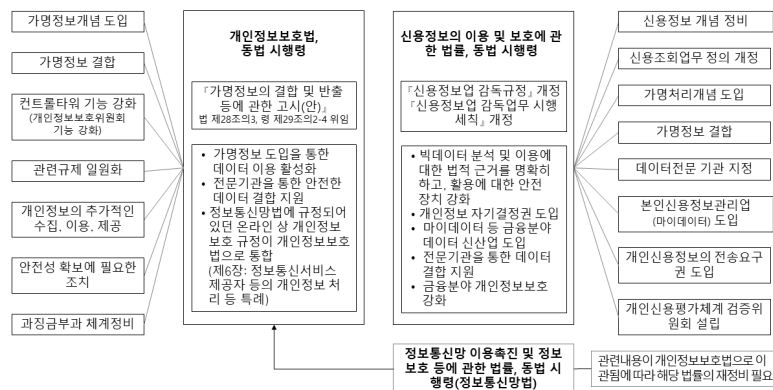
## 제2장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정보통신망법 분석

### 제1절 정보통신망법 체계 및 정비 현황

#### 1. 정보통신망법 관련 환경변화

데이터 기반 경제가 도래함에 따라 데이터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2020년 1월 9일 데이터 3법<sup>4)</sup>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8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가명정보 개념의 도입, 가명정보 결합, 관련규제 일원화,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등의 이슈를 가지고 개정되었고, 신용정보법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도입, 데이터전문기관 지증 등의 이슈를 기반으로 개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 규제 일원화를 위하여 법률 제4장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게 되었다.

[그림 2-1] 데이터3법 개정의 현황



출처: 미디어미래연구소(2019)

4)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통칭, 이하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으로 칭한다.



즉,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기존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이한 제재규정, 일부 차이가 있는 행위규정, 기존 정보통신망법에만 있었던 규정은 특례(제6장)으로 이관되었다. 이에 따라 존치하는 정보통신망법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고, 그와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정보통신망법 및 시행령 규정 중 데이터3법 개정으로 인해 이관되었거나 위임근거가 사라진 조항<sup>5)</sup>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단말기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적용 대상이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자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에 존치하고 있다. 삭제된 조항들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통합하여 반영해야 한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에 존치하고 있는 방통위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본인확인기관 지정, 앱 접근권한 등 정보통신망법 존치 조문 중 개인정보 규정이 삭제된 조문에 대한 체계에 대한 것들이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 변경, ‘개인정보보호’를 ‘이용자보호’로 변경,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변경할 수 있을 것이다.

## 2. 정보통신망법 연혁

1983년 ‘국가 5대 기간 전산망 사업’<sup>6)</sup> 계획안이 수립되었고, 1985년 국가기간전산망조정위원회는 국가기간전산망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sup>7)</sup> 이듬해인 1986년에는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해당 법률은 전기통신

5) 개인정보보호지침(제3조), 개인정보 처리위탁의 통지 등(제10조부터 제18조의2까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제54조의2),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보호조치(제67조), 과징금 산정기준(제69조의2, 제69조의3), 기타 이관 조항

6) 국가 5대 기간 전산망 사업에는 ‘행정전산망’, ‘금융전산망’, ‘교육·연구전산망’, ‘국방전산망’, ‘공안전산망’을 포함한다.

7) 행정, 금융, 교육·연구, 국방, 공안전산망 등 5개 분야별 전산망기본계획과 주전산기 개발 및 보급, 표준화추진, 감리제도발전, 정보보호 및 안전대책 수립 등 8개 분야의 지원계획으로 구성되었다.

과 전자계산조직의 균형적인 발전 및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화 사회의 기반조성과 고도화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참여 또는 지원(법 제6조 및 제8조), 국내의 중요정보의 전산망을 통한 국외유출을 제한, 전산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의 비밀 침해 또는 누설금지(법 제25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sup>8)</sup>

<표 2-1>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986)」 주요 내용

개정 조문(당시)	주요 내용
법 제명	전산망 보급확장사업이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화사업으로 전환 및 추진,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제도가 신설 등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로 변경함
법 제8조 및 제9조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내용물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하는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함
법 제16조 내지 제18조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내용물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하는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기술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함
법 제19조제2항	무분별한 광고성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

1987년부터는 ‘제1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1987~1991년)’을 추진하였다.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와 정보산업발전의 기반 마련을 위해 행정, 금융, 교육·연구, 국방, 공안의 5대 기간망을 대상으로 하였다. 1987년 행정전산망 종합계획을 확정함과 동시에 착수된 행정전산망사업은 1987년부터 1991년까지의 제1차 행정전산망사업 기간 중에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통관, 고용관리와 경제통계 등 6개 우선 추진업무를

8)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총 제33조로 구성되어 규제를 하면서 1999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변경할 때까지 8번 개정하였다.

비롯해 40개 계획업무(신규사업), 45개 기존업무를 각각 개발하였다.<sup>9)</sup> 제1차 사업기간 중 금융전산망사업에는 은행간 전산망 구축이 주로 추진되었으며, 대고객 전산망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sup>10)</sup> 교육연구전산망은 1988년 12월 교육전산망 및 연구전산망의 기본계획 확정과 함께 본격화되었다.<sup>11)</sup>

1992년에는 ‘제2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1992~1996년)’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제1차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면서 전산시스템의 연계 운영에 중점을 두었다. 행정전산망사업의 우선 국민복지망,우체국 종합서비스, 해상화물관리망, 산업재산권정보관리망, 기상정보관리망, 물품목록관리망, 어선관리망 등을 추진업무로 개발하였다.<sup>12)</sup> 금융전산망사업은 1차 금융전산망 구축사업을 통해 전자화된 금융서비스의 증가로 인해 기존 ARS, CD, 타행환공동망 등 3개 공동망 이외에 신용정보 공동이용망과 직불카드 공동망 구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였다.<sup>13)</sup> 교육연구전산망사업은 국내외 교육연구 자원의 공동이용 체계를 구축, 국제화된 교육연구 환경을 구축하고 정보사회에 대비하는 인력 양성을 목표로 시행하였다.<sup>14)</sup>

- 
- 9) 행정기관에 4,300여 대의 PC를 보급, 전국민의 성명, 주소 등 필수항목을 종합, 전산화하고 전국 읍·면·동사무소와 유관부처 및 공공기관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사업인 주민등록관리 전산망사업 등 포함하고 있다.
  - 10) 은행간 전산망으로 1988년 가장 먼저 가동된 현금자동인출기 공동이용시스템(CD/ATM 공동망), 자동응답서비스시스템, 타행환시스템 등이 있으며, 대고객 전산망으로는 홈뱅킹과 펌뱅킹시스템이 있다.
  - 11) 3단계에 걸친 교육전산망의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학교 컴퓨터교육 지원, 대학전산화, 도서관망 구축,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교육행정 전산망 구축, 대학망-도서관망-교육행정망 통합체계 구축 등이 시행되었다.
  - 12) 행정전산망 2단계 사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는 중점 지원업무를 새로 채택하였다는 점이다.
  - 13) 은행의 온라인처리 업무량은 1993년 중 69억 4,000만 건으로 전년 대비 10.4%가 늘었으며, 1989년에 비해서 2.1배나 늘어남(한국은행, 1993)
  - 14) 서울 대덕연구단지 중심으로 시범연구망을 구축하고 전산자원 확충, DB 및 VAN(Value Added Network) 구축 등의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표 2-2> 제2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 추진 목표 및 전략

목표	o 1990년대 중반 사업을 완성 o 2000년대부터는 선진국 수준의 정보사회를 실현
추진 전략	첫째, 국민편의 위주의 능률적 행정체제로 전환 소규모, 다양한 서비스 정부 구현 둘째, 기관별 전산화에서 기관 간 전산망을 통한 공공정보 및 자료 공동활용 촉진 셋째, 분야별 전산망의 연계운영으로 국가기간 전산망의 완성

1999년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전면 개정되었다. 1997년 무렵 2단계 국가기간전산망사업이 완료되자 전산망법은 사실상 그 법률의 목적을 다하게 되어 고도화된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정보화 사회의 구현을 앞당기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 것이다. 당시 사적 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입법적 미비를 시정하고자 했으나, 법률이 갖는 한계로 인해 최소한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을 마련하는데 그쳤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규정 신설,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표 2-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1999)」 개정 주요 내용

개정 조문(당시)	주요 내용
법 제명	전산망 보급확장사업이 정보화촉진기본법에 의한 정보화사업으로 전환 및 추진,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제도가 신설 등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로 변경함
법 제8조 및 제9조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내용물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하는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기술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함
법 제16조 내지 제18조	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내용물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업무를 효율화하는 정보통신망응용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및 기술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함
법 제19조제2항	무분별한 광고성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

이후 2001년 1월 1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기에 이르른다. 고도화된 정보통신망 구축 및 정보화 사회의 구현, 사적 부문에서의 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전면적으로 개정된 것이다. 전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강화, 인터넷상 음란·폭력물에 의한 청소년 보호 등 현행 제도의 개선·보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강화 및 정보화 부작용 해결을 위한 다수 조문을 신설했다. 따라서 2011년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공공과 민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 모두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될 때까지는 민간영역의 일반적인 개인정보 보호에 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sup>15)</sup>

<표 2-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1)」 개정 주요 내용

개정조문(당시)	주요 내용
법 제명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항외에 정보통신서비스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보호제도에 관한 사항이 대폭 규정됨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변경함
법 제25조 및 제58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의 수집·처리·관리 등을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개인정보보호위반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저장·처리하는 경우에도 이 법에 의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의무를 부과함
법 제31조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법정대리인에게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및 정정 요구권을 부여함
법 제42조 및 제66조제1항 제12호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당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법 제46조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

15) 독일 「정보통신서비스데이터보호법 (Teledienstschutzgesetz)」에 규율되어 있던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을 참고하여 포함한다.

	리하는 사업자에게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도록 함
법 제48조 및 제62조	컴퓨터바이러스를 전달·유포하거나 타인의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정보를 전송하는 등의 행위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함

한편, 2011년 제정된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적 성격인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유사 규정이 다수 있어 혼재를 겪어왔다.

<표 2-5> 「개인정보보호법(2011)」과 「정보통신망법(2001)」 비교

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정보주체의 권리	제4조(정보주체의 권리)	제30조(이용자의 권리)
시책 마련	제5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시책의 마련)
국제협력	제14조(국제협력)	제62조(국제협력)
개인정보 수집 제한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개인정보 목적외 이용제한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 제한)	제24조(개인정보의 이용제한)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제1항
개인정보 목적외 제공 제한	제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제2항
개인정보 파기	제21조(개인정보의 파기)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동의 받는 방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26조의2(동의를 받는 방법) 제31조(법정대리인의 권리)
민감정보 처리 제한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3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등) 제1항
주민등록 번호 처리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 번호 처리의 제한)	제23조의2(주민등록 번호의 사용제한)
개인정보 업무 위탁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25조(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영업 양도 양수에	제27조(영업양도 등에	제26조(영업의 양수

다른 개인정보 이전 제한	다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개인정보 보호 조치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30조(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 및 공개)	제27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제31조(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제27조(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제47조의3조(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개인정보 유출 통지	제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제27조의3(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과징금	제34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64조의3(과징금의 부과 등)
정보주체 권리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등)	제30조(이용자의 권리 등) 제44조의2(정보의 삭제 요청 등)

마지막으로, 2020년 2월, 일부개정의 형식으로 개인정보 관련 조문을 이관하게 된다.

<표 2-6> 「정보통신망법」 연혁

연도	추진내용
1983년	‘국가5대기간전산망사업’ 계획안 수립
1985년	국가기간전산망 추진계획 발표
1986년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1987년	‘제1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1987~1991년)’ 추진
1992년	‘제2차 국가기간전산망사업(1992~1996년)’ 추진
1999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
2001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
2020년 2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 3. 기존 정보통신망법상 목적 및 구조와 주요내용

#### 가. 목적 및 구조

정보통신망법은 크게 네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한다. 둘째,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한다. 셋째,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넷째,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한다.(동법 제1조)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라 야기되는 역기능에 대처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와 불법정보로부터의 개인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정보통신망에서 컴퓨터에 의해 처리되는 개인정보에 국한하여 규율한다. 정보통신망법은 적용대상인 ‘정보통신망 서비스 제공자’를 넓게 정의함으로써 민간부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리목적의 온라인 서비스 상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이러한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전 규범적 구조는 모두 10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표 2-7> 「정보통신망법」 주요내용 및 조문

장	주요 내용	조문
제1장	정보통신망법의 목적, 각종 개념정의	제1조 - 제5조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제6조 - 제17조 제16조, 제17조 (2004.1.29. 삭제)
제3장	전자문서증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의 활용 (2015. 6. 22 삭제)	제18조 - 제21조
제4장	개인정보 보호	제22조 - 제32조의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제33조 - 제40조 (2011. 3. 29. 삭제)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보호	제41조 - 제44조의10 제44조의 9 (2008. 2. 29. 삭제)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방안	제45조 - 제52조 제46조의3(2012. 2. 17), 제50조의2 (2014.5.28. 삭제)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제53조 - 제61조
제8장	국제협력	제62조 - 제63조의2
제9장	보칙	제64조 - 제69조의2 제65조의2 (2005. 12. 30.삭제) 제68조 (2010. 3. 22.삭제) 제68조의2 (2015. 6. 22.삭제)
제10장	벌칙	제70조 - 제76조

나. 주요내용

1) 정보통신망법상 이용자보호(제41조-제44조의10)

‘정보통신망법’ 제44조 등은 전자공간상의 음란, 명예훼손 등의 불법정보로 인한 권리침해 예방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율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정보제공자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는 청소년을 해당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이용을 억제하기 위

한 취지이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제공 및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된다.

<표 2-8> 정보통신망법 상 불법정보 유통 금지 정보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li><li>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li><li>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li><li>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li><li>5.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li><li>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li><li>6의2. 이 법 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내용의 정보</li><li>6의3. 총포·화약류(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물건을 포함한다)를 제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설계도 등의 정보</li></ol> |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3개월간 일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등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청소년 보호 책임자의 지정을 해야 하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한편, 국가기관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려면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의 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인터넷실명제).<sup>16)</sup>

## 2) 정보통신망의 안전확보 조치(제45조-제47조의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사용되는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에 해당된다.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말하며, 여기에는 모든 전기통신사업자(기간

---

16) 헌법재판소는 2012년 8월 만장일치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5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본인확인제’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새롭게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계획 또는 설계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정보통신망법은 원칙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그 규율대상으로 하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신고 주체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볼 수 있다. 2018년 법률안 개정으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자격요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제45조의3제3항 및 제7항 신설 등). 기존 법률에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표현이 ‘지정하고’로 변경되고, 기준도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으로 표기됐던 것이 ‘자산총액, 매출액’으로 변경되었다.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 운영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에 경우, 해당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① 정보시스템에서 발생한 이상 현상으로 다른 시설이용자의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정보통신망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과기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요청하는 경우이다.

### 3) 정보통신망의 침해행위(제48조-제49조)

정보통신망법 제48조에서 제49조의 조항은 정보통신망의 침해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 침해행위, 정보통신망법상 침해행위 종류, 정보통신

방법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 금지,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사이버 침해 시의 대처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정의하고 있는데,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란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를 의미한다. 침해행위는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공격하는 행위를 하여 발생한 사태’를 의미한다.

한편,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안된다. 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안된다.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안된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 개인정보가 분식·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거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분식·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거나 오·남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표 2-9> 사업자의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의무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li>1)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의 세부 내용</li><li>2)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li><li>3) 외부 인터넷망의 업무망 분리 조치</li><li>4)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li><li>5)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 조치</li><li>6)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 조치</li><li>7)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li></ol> |
|--|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침해사고 신고 의무 대상은 첫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둘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해당되며, 침해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정보통신망법상 광고성 정보(제50조-제50조의8)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의미한다.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한다.

정보화 사회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성 정보가 등장하게 되었고, 전송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수신자가 수신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송자가 무작위로 이를 전송하고 있어서 수신자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수신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용자는 불필요한 정보를 확인하고 삭제 및 거부를 하기 위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런 광고성 정보는 전송 단계에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업자의 역할 또한 매우 중요하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는 스팸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결하고자 광고성 정보 전송에 대한 규제를 두고 있다. 규제의 대상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되는 모든 광고

성 정보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송된 정보가 이용자의 사적영역(이메일, 휴대전화 등)을 침범하여 들어오는 경우를 규제 대상<sup>17)</sup>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TV 광고나 인터넷 홈페이지 배너광고, 팝업 광고 등은 이용자가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가 해당 광고가 노출되는 곳으로 접근하여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팸 규제 대상이 되는 광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전자적 전송매체(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정보의 전송이 가능한 모든 매체)를 이용한 모든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는 사전에 수신자의 수신동의를 받아야 전송할 수 있다.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야간시간(PM9~AM8)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전송 동의와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광고성 프로그램 설치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sup>18)</sup> 광고성 정보 전송 원칙에 대한 예외는 세가지가 있는데, ①재화 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6개월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 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②전화권유 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 권유판매를 하는 경우, ③야간시간(PM9~AM8)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은 별도의 동의가 없더라도 가능하다. 한편, 광고성 정보를 게시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별도의 권한 없이 누구든지 쉽게 접근하여 글을 게시할 수 있는 게시판의 경우에는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sup>19)</sup>

---

17) 즉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특정 매체로 이용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대해 규제를 두고 있는 것이다.

18) 프로그램 용도, 삭제방법 등 프로그램 설치 전 알기쉽게 고지하고 동의받아야 한다.

19) 로그인 하지 않거나 별도 인증과정 없이 게시글 작성 가능한 경우, 그러나 운영자가 거부 의사 표시한 경우, 동의했다가 철회했을 때는 삭제를 바로 해야 한다.

5) 정보통신망법상 통신과금서비스

통신과금서비스는 정보통신서비스로서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즉, 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등의 대가가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 징수되도록 거래정보를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업무를 말한다.<sup>20)</sup> 통신과금서비스 유형으로는 일체형, 정보제공형, 대행 또는 매개형 통신과금서비스가 존재한다. 이러한 차이점은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지위를 비롯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하였을 경우 그 대금반환의 무의 부담에 있어서 나타난다.

<표 2-10> 통신과금서비스 유형

유형	업무 내용
일체형 통신과금서비스	사업자와의 계약을 통하여 사업자의 대금을 자신의 전기통신요금에 합산하여 소비자에게 청구 및 징수하는 업무
정보제공형 통신과금서비스	사업자를 대신하여 그 거래정보를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자적으로 송수신하는 것
대행 또는 매개형 통신과금서비스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일체형 통신과금서비스의 경우 사업자와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 간에 정보제공자 또는 대금정산대행업자가 존재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에 관한 제반 법률관계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가 사전에 마련한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한 특칙을 정하여 그 약관을 과기부에서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신고를 받은 과기부는 약관의 내용을 판단한 후,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에게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동

20) 소비자가 현금없이 재화 등을 구입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와 달리 매우 간편한 절차에 의해 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통신과금서비스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법에서는 소비자가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통신과금 서비스 제공자에게 약관을 마련할 의무와 더불어 신고의무를 부과하여 통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통신과금서비스는 결제수단의 일종으로서, 이를 무권한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요구받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주의의무는 관리적 조치의무와 기술적 조치의무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단계에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과기부 장관의 명으로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①청소년유해매체물을 청소년에게 판매 및 대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②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③소비자에 대한 기망 또는 부당한 유인에 해당하는 수단을 이용하여 소비자로부터 하여금 재화등을 구매·이용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경우, ④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등을 판매 및 제공하는 경우의 네가지이다.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재화등의 판매 및 제공의 대가를 청구할 때에 소비자에게 일정한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 고지에는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일시,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의 거래 상대방의 상호와 연락처,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해 구매 이용금액과 그 명세, 이의신청 방법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소비자가 구매 및 이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소비자가 구매 및 이용내역에 관한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해야 한다.<sup>21)</sup>

---

21)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거래, 금액,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 이용의 거래 상대방, 거래일시, 대금을 청구 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등이다.

#### 4.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주요 내용 및 한계점

##### 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주요내용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제4장)에서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중복되는 규정들은 모두 삭제되었다. 즉, 개인정보 정의, 민감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제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정보주체의 권리, 손해배상, 개인정보보호 인증 등의 규정은 모두 삭제된 것이다. 삭제된 「정보통신망법」 규정 중에 「개인정보보호법」과 상이하거나 「정보통신망법」에만 존재하는 규정은 특례 규정으로 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6장으로 편입하였다. 여기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유출통지 및 신고, 동의철회권, 손해배상, 국내 대리인, 개인정보 국외 이전, 상호주의 등 규정과 해당 조항에 따른 과징금 및 형사 처벌 조항도 함께 편입되었다. 이들 특례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을 규제 대상으로 한정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아닌 ‘이용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그 보호범위로 하고 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의 단말기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규정은 삭제되지 않고 여전히 존치하고 있다. 이들 조항이 존치하는 이유는 개인정보보호와는 직접 관련은 없으며, 그 적용 대상이 통신사업자 등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자라는 특성을 반영하였기 때문이다. 해당 거래를 한 날로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하나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이에 대해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이용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면 그 결과 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통신과금서비스가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sup>22)</sup>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의 이익신청 및 권리구제를 위한 분쟁해결절차를 마련

해야 한다.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의 손해 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책임발생요건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을 요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과실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이용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불문하고 그 책임을 면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나. 개정 정보통신망법 한계점

개정전 정보통신망법이 개인정보보호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어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이 이전된 이후의 존치 법령의 구성 체계 개정 및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등 법령 재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과거 정보통신망법의 법제명이 개인정보의 보호 제도에 관한 사항이 대폭 규정됨에 따라 법률의 명칭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되었다는 점을 토대로 개인정보 규정이 이전된 현재 정보통신망법의 법제명의 개정이 필요하다.

#### <표 2-11> 정보통신망법 목적

첫째,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한다.  
둘째,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셋째, 이러한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동법 제1조)

정보통신망법 개정 후 개인정보보호 관련 존치 조문에 대한 재배치가 필요하다. 정보통신망법 개정 후 개인정보보호 관련 조항 일부가 존치하여 있어 존치 조문에 대한 분석 및 법령 정비를 통한 재배치가 필요하다.

- 
- 22) 통신과금서비스의 경우, 통신과금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한 경우 까지 이용자에게 그 전부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표 2-12> 정보통신망법 내 개인정보보호 존치 조문

조항	규정내용
제22조의2	접근권한에 대한 동의
제23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제23조의3	본인확인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4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제32조의5	국내 대리인의 지정

마지막으로 이용자 보호 관련된 체계적인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관해선 제2절에서 논의한다.

## 제 2절 정보통신망법 등 이용자보호 관련 법체계

### 1. 정보통신망법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광의의 이용자 보호의 개념에 따라 법체계가 구성되어 있어 관련 조항들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협의의 이용자 보호 개념을 적용한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제5장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불법정보,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이용자 보호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외의 통신과금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보호 조항은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침해사고와 광고성정보에 대한 이용자 보호 조항은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전성 확보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동법 및 타법(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제하는 이용자보호 체계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일관된 법체계를 정비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sup>23)</sup>

23)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자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내에서는 해당 서비스(불법정보, 침해사고, 광고성정보, 스팸, 통신과금서비스 등)에 따른 분류로 법체계가 구성되어 있어 ‘이용자 보호’가 분산되어 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을 대상별(이용자, 사업자 등)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정보통신망법 내 이용자 보호 관련 조항(제5장)의 한계를 보완하여 정보통신망법 이용자 보호 강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가. 인터넷 게시물 규제와 이용자보호

현행 정보통신망법에는 일정한 위법게시물 삭제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 본다면 사업자들이 삭제 내지 차단해야 할 대상 게시물과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에 따라 가짜뉴스, 악의적 댓글 등의 인터넷 게시물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이로 인한 피해자가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는지 입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사업자 임의의 임시조치에 의해 처리되는 게시물의 경우 삭제 및 복원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면 사업자와 정부는 어느 범위에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지 명확하지 않다.

#### 나. 불법정보와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정보

우리나라 현행 규제는 불법정보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구분하고 있다. 불법정보는 방통위가 정보의 취급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국가기관에 의한 게시물의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용자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누구에게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법령상으로 보면 명확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그 대상이 되는 불법적인 표현물이 무엇인지에 관한 해석의 여지가 많다. 명예훼손의 경우,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만 한정하여 신고에 의한 처리절차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가 임의로 임시처리하는 절차를 별도로 정하고 있어 대상이 되는 인터넷 게시물의 범위가 매우 한정되어 있다. 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가 권리침해성 게시물을 포착하여 이를 삭제하는 등에 대한 기대가능성을 갖기 어렵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객관적 정황에 비추어 ‘지체없이’ 삭제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만 판단한다면, 사

업자가 이를 피하기 위해 삭제 등의 과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가 있다(시진국, 2009).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30일간 임시조치 제도는 그 게시물이 권리침해 가능성이 상존하더라도 무조건 30일 이후에 복원되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의 관점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다.<sup>24)</sup> 이에 관하여 30일 내 이의제기가 있거나, 기간을 도과한 후의 처리에 대해서 또는 위법 게시물의 목록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는 사업자를 감독하는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

#### 다. 정보통신망의 불법정보

온라인 상에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의 불법정보가 만연하고, 음란, 청소년 유해 정보도 여과없이 유통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동법 제5장에서는 이로 인한 권리침해 예방과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율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은 전자공간상의 음란, 명예훼손 등의 불법정보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다. 불법정보에 관한 책임은 방통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이용자로 나뉘어 규율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정보생성자의 역할도 공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이율적인 구분이 타당한지에 대한 지적이 발생하고 있다. 불법정보로 인한 권리침해를 받은 당사자는 이용자 및 사업자에게 민·형사적 책임 및 행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데 하나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으로는 과도한 책임 부과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공간에서의 다양한 역기능 해결을 위해 형사적 규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다양한 순기능마저도 저해할 우려가 높다. 전자공간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 및 정보 접근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분쟁의 사전 예방 및 신속한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사전 예방적 규율 및 자율규율이 중요하다. 자율규율이 실효성을 거두고,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는 사후 규제인

---

24)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복원 운영 실태에 따르면, 임시조치 기간 내에 복원 신청이 접수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내용에 따라 선별 절차 없이 기간 경과 후 무조건 복원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피해가 지속될 우려가 있다.

민·형사적 규제보다는 사전·조성적 행정작용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 2. 전기통신사업법

통신분야 이용자보호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서 전기통신역무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법의 목적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전기통신사업자의 진입부터 사후적인 금지행위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이용자보호 관련 규정을 두고 있다.

### 가. 이용자보호 관련 진입규제(제6조, 제18조)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및 사업의 양수, 법인의 합병 등에 대한 인가를 심사할 경우, 이용자 보호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사업휴지·폐지 시 이용자보호(제19조, 제26조)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경영하고 있는 기간통신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용자에게 알리고, 그 휴업 또는 폐업에 대한 과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과기부장관은 기간통신사업의 휴업·폐업으로 인하여 별도의 이용자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간통신사업자에게 가입 전환의 대행 및 비용부담, 가입해지 등 이용자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가통신사업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예정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전기통신서비스이용자에게 알리고, 과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한 1년 이상 계속해서 휴업해서는 안된다.

### 다. 약관의 규제(제28조)

기간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정하여 방통위에 신고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또는 신고된 약관을 준수하지 않으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라. 이용자보호(제32조)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만약 즉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알려야 한다.

마. 고지의무(제32조의2)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처음 약정한 전기통신서비스별 요금한도를 초과한 경우나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 고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바. 전기통신역무제공의 제한(제32조의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6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의2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전기통신번호에 대해 1년-3년 기간에 대한 전기통신역무제공을 중지할 것을 명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사. 이동통신단말장치 부정이용방지(제32조의4)

이용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sup>25)</sup>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제32조의5제1항에 따른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

---

25) 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위탁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한다.



아. 부정가입방지 시스템 구축(제32조의5)

과기부장관은 부정한 방법을 통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정가입방지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자.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제공(제32조의6)

이용자보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명의도용방지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 가입제한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차. 청소년유해물 등의 차단(제32조의7)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카. 이용자피해 발생시 손해배상 의무(제33조)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이의 처리지연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통신역무제공이 중단된 경우 이용자에게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 중단된 사실과 손해배상의 기준 및 절차 등을 고지해야 한다.

타. 이용자정보보호(제43조)

전기통신사업자는 제공받은 기술적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에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의 제공은 금지된다.

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제45조의2~제26조의8)

방통위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이용자 사이에 발생하는 손해배상 등의 분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하. 이용자보호 관련 금지행위(제50조)

전기통신사업자는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다른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법에서 정한 금지행위를 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이용자보호와 관련해서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전기통신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또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이용요금, 약정 조건, 요금할인 등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 또는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성명 또는 고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거. 조사권(제51조)

방통위는 신고나 인지에 의하여 금지행위를 위반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에게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너. 이용자편익 증진(제56조 등)

전기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사전선택제 및 전기통신번호이동성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 3. 방송통신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가. 정보통신망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은 2008년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대응하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방통위법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방송통신위원회의 구성 및 임명,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 방송통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방통위법은 이 뿐 아니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

한 사항을 담고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통신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 보장과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고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방통위법 제18조제1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통신망에서 이용자보호와 관련하여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방통위법은 제21조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로 제3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4호는 통신윤리 함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제24조에서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하는 경우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재조치를 정하는 경우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재조치를 정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심의위원회의 직무) 심의위원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규정된 사항의 심의
4.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정보 등 ① 법 제21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및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 등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정보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2.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또는 이용해지
3. 청소년유해정보의 표시의무 이행 또는 표시방법 변경 등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불법정보인 때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취급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심의규정의 제정·공표 등) 심의위원회는 제21조에 정한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하 다음 각 호의 심의규정을 제정·공표한다.

1.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2. 제21조제3호 및 제4호를 심의하기 위한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25조(제재조치 등) ① 심의위원회는 방송 또는 정보통신의 내용이 제24조의 심의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제재조치 등을 정할 수 있다.

1. 「방송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권고 또는 의견제시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취급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

③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제재조치를 정한 때에는 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재조치의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재조치의 처분을 요청받은 때에는 「방송법」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 등에 대하여 그 제재조치의 처분을 명령하여야 한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2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유통금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행정처분을 할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 미이행을 하나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정보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정보의 경우에는 해당 정보로 인하여 피해를 받은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그 처리의 거부·정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없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제1항제9호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한다]이 있었을 것
2. 제1호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른 시정 요구를 하였을 것
3.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관 관리·운영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것

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용규제 수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내용규제 수단은 시정요구와 제재조치로 구분할 수 있다. 입법당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독립기구라는 법적 성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므로 제재조치에 대해 직접적인 규정을 두지 않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내용 심의를 한 후 불법정보로 판단하여 제재가 필요하면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재를 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행정청으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떠나 법적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게만 제재조치에 관한 법적 권한이 인정된다. 하지만 내용심의로 인한 제재조치의 당사자가 쟁송을 하는 경우 형식적 권한만을 보유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의 권한을 차용하지 않고 직접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방통위법은 제21조제4호에서 시정요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시정요구는 법적으로 권고적 성격을 갖는 비권력 사실행위로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행정청이 아니어도 발할 수 있다는 입법적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 조치에 대해서 처분성을 긍정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표 2-1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정요구의 처분성

학설	근거
처분성 부정	- 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음(권고적 성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민간독립기구로 행정청이 아님
처분성 긍정	- 시정요구가 사실상 당사자를 구속할 수 있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행정청에 해당

한편 하급심 판례는 시정요구가 단순한 행정지도로서 한계를 넘어서 규제적·구속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여 처분성을 긍정하였다.<sup>26)</sup>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조치는 제재조치와 구분하여 자체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처분이라 할 여지는 있다.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으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취급 거부, 정지 또는 제한을 하도록 하는 명령을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점(방통위법 시행령 제8조제4항)을 고려할 때 국민과의 관계에서 고권성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기구의 법적 성격, 그리고 시정요구에

26) 서울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0누9428 판결.

방송통신위원회가 반드시 기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기속되는 경우에도 하나의 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처분성이 반드시 인정되는지는 학설과 판례의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만 가능한 제재 조치와 달리 시정요구조치가 방심위가 판단하는 모든 정보를 대상으로 점을 고려할 때,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는 방송통신통신위원회의 행정조치와 관련하여 제44조의7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는 경우로 한정되는 것으로 볼 것이다.

#### 다. 불법정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7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의3까지의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나 게시관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있다 하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처분의 발령이나 그 종류에 대해 재량을 갖는다.

한편 제44조의7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는 제3항에서 정하는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기속행위). 이때 요건 중 하나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방통위법상의 시정요구를 하였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즉, 해당정보에 대해서 방송통신위원회는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의 요청, ② 방심위의 심의 및 시정요구,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나 게시관 관리·이용자가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경우를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관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표 2-14> 불법정보 유형별 행정제재조치

불법정보 유형 (망법 제44조의7)		행정제재조치		
1호	음란물	(불법정보 유형)	(방심위)	(방통위)
2호	비방할 목적의 명예훼손	①음란물 ②명예훼손 ③사이버스토킹 ④해킹바이러스 ⑤청소년유해물 표시위반 ⑥도박·사해행위 ⑥-2 개인정보거래	심의·시정요구 (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 불응 시 <b>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재량</b>
3호	협박, 사이버 스토킹			
4호	해킹, 바이러스			
5호	청소년 유해물 표시위반			
6호	도박 사해행위			
6의 2호	개인정보 거래			
6의 3호	총포 등 불법제조	○ 1단계: 방심위는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b>시정요구</b> (게시물 삭제, 국내사이트·블로그 이용해지, 해외사이트 접속 차단 등) ○ 2단계: 방심위의 시정요구 미이행시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재량)		
7호	국가기밀 누설	(불법정보 유형)	(방심위)	(방통위)
8호	국가보안 법 위반	⑦국가기밀 누설 ⑧국가보안법 위반 ⑨기타 범죄행위 ※ 관계 중앙행정기 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시정요구 (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 불응 시 <b>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음:                      의무</b>
9호	기타 범죄행위			

제44조의7 제3항에서 규율하고 있는 제1항의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정보 유형을 살펴보면, 제7호와 제8호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불법정보이며 제9호는 범죄를 목적으로 교사, 방조하는 내용의 불법정보이다. 제44조의7의 제2항과 제3항의 재량과 기속의 차이는 불법정보의 경중에 있어 차이를 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제3항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는 바 제7호부터 제9호의 정보와 관련된 제한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판단에 따르



도록 규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신고나 자체판단에 의해 시정요구가 가능하다.

### 제 3절 정보통신망 서비스를 이용한 불법정보, 범죄 등 행위 유형

#### 1. 불법정보

##### 가. 불법정보의 개념

불법정보는 인터넷 정보 중 그 내용이 현행법에 위반되는 불법으로 판단되어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한 정보를 의미한다.<sup>27)</sup> 또한 일반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 저작권법 제133조의2 소정의 불법저작물 정보를 의미한다.

---

27) 여기서 불법이란 형법에서 금지된 위법 행위 자체를 의미하므로 그 행위의 정도 차이에 관점이 있다. 불법정보의 개념은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호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법원리상 무엇이 불법정보인가의 문제, 즉 ‘불법’의 개념과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이 아니다.

<표 2-15>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불법정보의 개념은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호의 내용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법원리상 무엇이 불법정보인가의 문제, 즉 ‘불법’의 개념과 직접 관련이 되는 것이 아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은 각호에 규정하고 있는 정보들이 인터넷상에 유통되기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에서 불법정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유해정보는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한 정보 중 아동,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데 해로움이 있는 정보’로 정의된다(윤여생, 2013). 현실에서 불법·유해정보가 온라인 공간에서 같이 적용되며, 온라인 내 유통되는 불법·유통 정보에 대한 별도 기준이나 법적 정의는 부재하다. 정보통신망법에서는 불법정보,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유해매체물(유해정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규제적용대상에 따라 불법정보와 유해정보로 구분하여 정의되고 있다.

<표 2-16> 불법·유해정보 분류체계

구분	정의	예시
음란 선정성	성행위 정보, 노출·성 표현 정보, 불건전 만남 정보	포르노, 음란물, 아동, 야설, 변태, 원조 교제, 성인 화상채팅 및 애인대행, 성매매 등
권리침해	초상권(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의 사진, 영상들을 게재하여 타인의 인격권 침해),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 재산권 침해 정보	S/W, 영상물, 음악 등 저작권 및 특정인의 초상권 등 무단배포 및 게재 등
명예훼손 및 사이버스토킹	구체적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스토킹하는 정보	특정인에 대한 비방 및 모욕, 허위사실 유포, 몰래카메라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도박과 사행심 조장 등 부정확한 방법으로 이익을 바라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정보	온라인 도박 사이트, 카드게임(포커, 맞고), 릴게임(바다이야기, 슬롯머신 등), 아이템 현금거래 등
범죄·폭력 등 사회질서 위반	포악성이나 범죄 충동 유발, 미화 및 국가와 사회존립의 기본체제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정보	자살·폭력 미화, 바이러스, 언어폭력, 살인청탁, 약물제조, 마약, 자살, 폭탄제조, 불법명의거래(대포폰, 대포통장) 등

출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18)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 유형은 규제대상이 되는 정보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내용규제의 대상을 판단 기준이 아닌 유형화 방식으로 채택됐다. 반면 대부분 내용규제방식은 대상이 되는 내용을 특정한 유형으로 분류·한정하지 않고, 내용규제의 판단 기준을 일반적 또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입법형태를 따르고 있다.<sup>28)</sup>

불법정보에 관한 내용의 유형화를 법제화한 것은 전통적 매체가 다루는 내용보다 인터넷매체가 다루는 내용이 광범위하며, 인터넷 내용규제는 내용규제 시 채택할

28) 방송법에서는 방송심의의 목적을 ‘공정성 및 공공성을 위하여’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심의 기준에 대한 대강을 법률에 정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위원회 심의 기준으로 위임하며, 프로그램 등급분류기준에서는 ‘폭력성 및 음란성 등 유해의 정도, 시청자의 연령 등’을 감안할 것을 규정한다.

수 있는 정책수단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 유통에서의 배제나 금지를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다른 매체에서의 내용규제의 정책 내용은 유통금지 등 해당 정보의 삭제보다는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영상물 사전등급제 등의 수단을 선택하고 있다. 방송, 영화 등에서는 명확성의 원칙, 규제의 원칙상 ‘내용규제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정도로 규제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고 있지만, 인터넷매체에서는 동일 규제를 적용 시 그 실효성이 낮다.<sup>29)</sup> 예를 들어 방송 등에서 ‘연령등급제’라는 표현 그 자체를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영역을 특정하는데 반해 인터넷에서는 ‘연령등급제’라는 그 실효성이 방송, 영화 등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인터넷 내용규제의 핵심을 이루는 불법정보의 유형화 정책은 판단 기준을 설정하는 방식보다 바람직한 입법 방향으로 판단되고 있다.

#### 나. 불법·유해정보 현황

인터넷매체는 전통매체와 비교하여 정보의 양이 많고, 광범위하며, 불법정보 건수 및 심의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2019년 불법·유해정보 20만6000여 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위반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 정보가 가장 많았으며, 불법도박 정보, 불법 식·의약품 정보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현행 인터넷매체에 대한 내용규제 전문규제 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력이 모든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심의를 담당하기 역부족인 상황이다.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 담당 인력 부족으로 최근 5년간 2000건이 넘는 심의요구 중 시정요구는 9.66%에 불과하므로 대응 인력 충원 등의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다(2020, 국정감사).<sup>30)</sup>

---

29) 방송 등에서의 ‘연령등급제’는 표현 그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의 영역을 특정하는데 반해 인터넷에서의 ‘연령등급제’는 그 실효성이 방송, 영화 등에 비해 낮다.

30) 인터넷 속성상 불법 정보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정보를 신속하게 삭제·차단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행 집행 구조하에서 신속한 삭제를 통한 구제에 어려움이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불법 저작물, 리벤지 포르노 및

한편 구글코리아가 적발한 불법·유해정보는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1만9409건으로 조사됐다. 구글코리아는 2015년 방심위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에 참여해 자체적으로 불법·유해정보를 심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참여에도 불구하고 방심위가 적발한 구글의 불법·유해정보는 2015년 3,141건에서 2016년 5,024건으로 증가하였다. 2017년에는 1,947건으로 감소하였으나<sup>31)</sup> 2018년에는 5,195건으로 다시 증가하였으며, 2019년 8월까지 4,102건을 기록하였다.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자체 심의를 통해 삭제한 건수는 총 1,897건으로 9.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조선비즈, 2019.09.30.).

또한, 불법 유해 영상으로 심의를 받은 인터넷 개인방송(스트리밍)이 5년간 2,813건에 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심위에 제출받은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 및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인터넷 개인방송 심의는 2,183건, 시정요구는 211건이 있었다. 실제 심의 내역 211건 중 음란항목이 16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욕설은 30건, 기타 항목(차별, 비하, 잔혹, 혐오, 도박, 성폭력) 21건으로 나타났다. 유튜브의 경우 최근 3년간 접속차단 조치된 3,646건 중 기타 법령 위반(불법무기류, 불법금융, 문서위조, 차별·비하 등) 항목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 불법·유해정보 규제 현황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서 규정한 불법 정보 분류에 따른 국내 실정법은 형법, 성폭력처벌법, 청소년보호법 등이 있다. 정보통신망법에서 인터넷상의 불법정보 유통금지에 관한 사항은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에 의하여 규정하며, 타인의 명예훼손과 관련하여서는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등에서 규정하여

---

몰래카메라 등 범죄 정보는 관련 소관 기관의 요청에 따라 방심위 심의 후 시정요구를 하도록 되어있어 불법 정보 발견에서 시정요구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고 있다(2020, 국정감사). .

31) 방심위원 임기만료로 7개월간 심의·의결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처벌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 제9조에서는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인 것이나 음란한 것’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인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과 관련하여서 정보통신망법 제73조에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등 음란한 전기통신 정보를 생산, 유통, 배포하는 사업자와 생산자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형법에서는 제242조(음행매개) 및 제243조(음화반포 등) 등에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으며, 사행 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인 도박 등 사기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 사기)에서 규정하여 처벌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2조 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19세 미만)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에 관해 규정하고 제11조에 근거해 처벌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서 규정한 불법 정보 분류에 따라 위에서 나열한 처벌 규정은 다음과 같다.

<표 2-17> 정보통신망법 내 불법정보의 유형별 형사처벌 규정

불법정보 유형	정보통신망법	기타
제1호 (음란물 배포)	· 제74조 제1항 제2호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통신매체 이용음란) 및 제14조의 2(카메라 등 이용촬영) · 형법 제242조(음행매개) 및 제243조(음화반포 등)
제2호 (명예훼손) <sup>32)</sup>	· 제70조	· 형법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제311조
제3호 (공포심 유발)	· 제74조(벌칙)	-
제4호	·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2조(주요 정보)

(정보·통신 업무방해)	행위 등의 금지) · 제72조(벌칙)	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제 28조(벌칙) · 물류정책기본법 제33조(전자문서 및 물 류정보의 보안), 제71조
제5호 (청소년 유해물)	· 제73조(벌칙)	· 청소년보호법 제58조
제6호 (사해행위)	-	·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 등 사용사기)
제7호 (국가기밀 누설)	-	· 형법 제98조(군사상), 113조(외교상)
제8호 (국가보안법 위반)	-	· 국가보안법
제9호 (기타 범죄)	-	· 기타 해당 처벌규정

출처: 미디어미래연구소(2020)

## 2. 디지털성범죄

### 가. 디지털성범죄 및 음란물의 개념

디지털성범죄 또는 사이버성범죄에 대한 합의된 개념은 아직 정립되지 않았다. 온라인성폭력, 디지털성폭력 등의 개념과 분별없이 혼용되어 이용되고 있는데(김현아, 2017), 이는 성범죄로 이해하는 법학적 관점과 여성 대상폭력으로 이해하는 여성학적 관점으로 구분되기 때문이다(김은경, 2001). 서승희 한국사이버성폭력상담센터 대표는 디지털성범죄를 ‘디지털 기기가 매개가 되어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온라인 기반 성매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온라인상의 성적 괴롭힘, 촬영물의 불법 유포 등을 통하는 용어이며,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해당하는

3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등의 명예훼손이 해당한다.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사이버공간인 경우를 일컫는다'고 정의하였다. 또한 디지털성범죄란 사이버상에서 성(sexuality) 및 성차별(gender)과 관련한 다차원적인 불법적이고 불편한 행위 유형들을 통칭한다고도 보았다(김은경, 2001). 경찰청에서는 사이버범죄를 정보통신망침해범죄(해킹, 악성프로그램 등), 정보통신망이용범죄(인터넷사기, 사이버금융범죄 등), 불법콘텐츠범죄(사이버성폭력, 사이버 도박 등)로 분류하며, 디지털성범죄를 불법콘텐츠범죄의 하위 개념인 사이버성폭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음란물'이란 전체적으로 관찰·평가해 볼 때 단순히 저속하다거나 문란한 느낌을 준다는 정도를 넘어서서 존중·보호되어야 할 인격을 갖춘 존재인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왜곡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로, 노골적인 방법으로 성적 부위나 행위를 적나라하게 표현 또는 묘사한 것을 의미한다.<sup>33)</sup> 불법정보, 유해정보 중 '성'과 관련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표 2-18> 음란물 분류체계

구분	정의	처벌 법률
포르노그래피	폭력적이고 잔인하며 어두운 분위기 아래 생식기에 얽힌 사건들을 기계적으로 반복·구성하는 음란물의 일종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불법정보에 해당하여 유통이 금지
타인의 신체 촬영물 유포	카메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카메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처벌
성적수치심 유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33)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도3558 판결 참조



글, 사진 등의 유포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행위	처벌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포	<p>“아동·청소년성착취물(기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말함)”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다음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교 행위</li> <li>2.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li> <li>3.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li> <li>4. 자위 행위</li> </ol>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

자료: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

최근들어 디지털성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성폭력(digital sexual violence), 혐오적 성폭력(hate sexual violence), 알고리즘성폭력(algorithm sexual violence), 버추얼성폭력(virtual sexual violence), 리벤지포르노(revenge porn), 시선 강간 등의 다양한 개념이 등장하고 있다.

#### 나. 디지털성범죄 현황

디지털성범죄에 관한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2018년까지 사이버 음란물의 범죄 발생 건수와 검거 건수는 2017년까지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8년 다시 증가하였다. 또한, 사이버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와 검거 건수는 2016년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2017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의 원인에 대한 설명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김한균(2017)은 발생 건수와 검거 건수 간의 차이가 좁혀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 사이버범죄에 악용되는 기법이 진화하여 신고나 적발은 어려워지고 있으나, 수사기관에 포착된 이후에는 디지털 성범죄자를 추적, 검거하는 사이버 수사기법이 발전한 것에 따른 것으로 추측하였다.

경찰청 <범죄통계> 주요 성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2020)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과 통신매체 이용음란의 발생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 가장 증가세가 큰 범죄유형은 불법촬영 및 유포사범에 대한 처벌 규정인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이다. 이는 '08년, 전체 성폭력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6% 였으나 '19년에는 전체 성폭력범죄 31,417건에서 5,763건으로 18.3%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범죄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카메라등 이용촬영죄가 급증한 이유는 인터넷 환경의 발전과 스마트폰 사용 대중화에 따른 사이버공간이 무한대로 확장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함영욱, 2020).

<표 2-19> 불법컨텐츠범죄

구분 (단위: 건)		총계	사이버음란물	사이버스토킹
2014	발생	18,299	4,354	363
	검거	14,643	3,739	300
2015	발생	23,163	4,244	134
	검거	17,388	3,475	124
2016	발생	28,438	3,777	56
	검거	23,539	3,435	53
2017	발생	21,307	2,646	59
	검거	17,312	2,329	52
2018	발생	23,029	3,833	60
	검거	17,305	3,282	50

출처: 김한균(2017)

한편 최근 디지털성범죄 상담 건수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2020년 4월 발표한 최신 통계를 보면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한 상담 건수는 2020년 2월 227건에서 3월 한 달간 330건으로 증가했으며,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상담 건수는 같은 기간 448건에서 573건으로, 피해촬영물 삭제 건수는 3,013건에서 4,096건으로 증가하였다(여성신문, 2020. 5.27).

<표 2-20> 주요 성폭력 범죄 유형별 발생건수(2008-2019)

(단위 : 건)

구분 (건)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카메라 등이용 촬영	585	834	1,153	1,565	2,462	4,903	6,735	7,623	5,185	6,465	5,625	5,763
통신 매체 이용 음란	378	761	1,031	911	917	1,416	1,254	1,135	1,109	1,249	1,365	1,438
강간 강제 추행	9,701	10,101	11,697	12,960	15,238	18,535	17,941	21,352	22,229	24,106	23,467	23,580

출처: 경찰청(2020)

#### 다. 디지털성범죄 규제

디지털성범죄는 특성상 범죄수단, 경과 등이 사이버공간과 관련되어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가해행위와 피해결과가 현실 공간에 존재하는 사람 사이의 실제 문제라는 점에서 다른 범죄와 다르지 않으며, 현실 공간 안에서의 물리적 접촉 없이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한다(김한균, 2017). 이에 따라 현행 형사법체계에서는 디지털성범죄를 범죄화하고,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피해가 실제 성폭력 못지않게 두려움과 모욕감을 겪게 되므로 중한 성범죄로 규정한다(김은경, 2001).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내용을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상 해당 범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제2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에 해당되는 범죄유형은 종래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악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까지 모두 포함된다. 디지털범죄의 유형은 정보통신망과 컴퓨터를 침해하는 범죄와 정보통신망과 컴퓨터를 악용하는 범죄, 정보통신망과 컴퓨터를 이용한 유해물 범죄로 구분된다. 이 중 디지털성범죄는 컴퓨터 이용 유해물 범죄에

해당된다. 현행 법제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영리목적 도촬물 정보통신망 유포 행위, 정보통신망이용 음란물범죄(사이버음란), 정보통신망이용 스토킹범죄(사이버스토킹), 컴퓨터 등 통신매체이용 아동청소년음란물 범죄를 디지털성범죄로 규정한다. ‘성폭력범죄’에 해당되는 디지털성범죄는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며,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상의 디지털성범죄는 현행 범죄통계상 강력(흉악) 범죄로 분류된다(김한균, 2017).

사이버성폭력에 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라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통신매체 이용음란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카메라나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 카메라이용촬영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촬영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지만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해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를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유포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보통신망법에서도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반포·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정보를 유통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제44조의7 제1항 제1호),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성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현행법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제재는 형법상 음화반포죄(제243조) 및 「형법」 상 음화반포죄(제243조) 및 음화제조죄(제244조)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인데 비해 사이버음란물죄의 형은 가중되어 있다. 이는 음란물의 판매·배포·제공·전시 형태와 그 침해 결과가 현실보다는 사이버공간에서 더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21> 현행법상 디지털성범죄 법정형 체계

범죄유형	근거법률	법정형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3조	2년이하/500만원이하
영리목적 도촬물 정보통신망유포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4조제3항	7년이하/3천만원이하
정보통신망이용음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제74조제1항	1년이하/1천만원이하
정보통신망이용 스토킹		
아동청소년음란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제2,3,5항	영리목적 판매: 10년이하 배포: 7년이하/5천만원이하 소지: 1년이하/2천만원이하

출처: 김한균(2017)

2020년 12월에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시행되었다. 개정안에서 법 적용 대상 기업은 이용자의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포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불법촬영물 발견 즉시 삭제·차단해야 한다.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불법촬영물은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에서는 ‘불법촬영물등’을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른 불법촬영물,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른 불법편집물,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정보이다.

2020년 4월,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가 발표된 이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5월 20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방통

위는 제도 시행을 위한 위임사항과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고 고시를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요청 주체를 일반 이용자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으로 확대했다. 신고·삭제요청을 받은 정보가 불법촬영물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자는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삭제·접속차단 조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위반행위의 중대성 등을 판단하여 매출액 3% 이내에서 차등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일평균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중 SNS·커뮤니티·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또한 해마다 투명성보고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하며,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사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검색결과 송출제한, 필터링 등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2021년말부터 이행해야 한다.

### 3. 청소년 범죄(사이버 폭력)

#### 가. 사이버폭력의 개념

사이버폭력(Cyber Violence)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타인에게 글, 이미지, 음성 등 적대적 표현 등으로 상대에게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이버폭력을 ‘사이버공간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부호, 음향, 화상 등을 이용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온갖 형태의 폭력적인 표현과 행위’라고 규정한다(남재성·장장현, 2011). 사이버폭력이 이루어지는 공간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이며, 사이버폭력은 물리적인 유형은 불가능하므로 사이버공간을 통해서 전달될 수 있는 ‘음향이나 문자, 부호, 동영상, 사진 등 표현물’이 형태이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음향, 문자, 동영상 등은 사이버공간에서 나타나는 표현물의 예시적인 열거이며, 이는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표현물이 나타날 때, 해당

문구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내용은 ‘음란, 욕설, 허위사실, 비난, 협박’등이며, ‘타인에게 정신적 및 심리적 고통을 주기 위한 목적’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표현물을 통해 사이버폭력이 행사되는 유형은 ‘게시, 배포, 링크, 전송, 전달 등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사이버폭력은 국내에서 사이버불링, 사이버따돌림 등의 다양한 용어로 쓰이고 있다.

청소년 사이버폭력은 주체, 객체, 방관자 등이 청소년에 해당된다. 또한 현실에서의 학교폭력 등이 온라인으로 연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피해를 받거나 가해를 하는 청소년이 현실과 사이버의 경계를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청소년 사이버폭력은 청소년들끼리 놀이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어 고의성이 성인 사이버폭력에 비해 적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인의 사이버폭력과 동일하게 처벌의 관점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도 있다(형사정책연구원, 2017).

우리나라에서 사이버폭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법적 정의를 내리고 있지는 않다.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 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제1조 제2호에서 따돌림에 대해 정의를 하고 있으며, 제1조 제3호에서 사이버따돌림을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 반복적으로 심리적 공격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법에서는 사이버따돌림을 학교 폭력 중 하나로 제시하고 있다.

한편 사이버불링(Cyberbullying)은 국내에서는 사이버폭력과 거의 동일된 개념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불링이란 ‘집단 따돌림’이란 용어로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는 ‘상습적으로 힘없는 개인에 대한 집단 공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학대’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사이의 힘의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행위이며, 의도적으로 해할 목적으로 공격하는 행동을 의미한다(형사정책연구원, 2017). 미국에서 사이

버블링은 ‘이메일이나 채팅룸, 소셜네트워킹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친구들을 괴롭히는 행위’로 보고 있다(Justin W. Patchin & Sameer Hinduja, 2011).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은 다양한 선행 연구들에서 크게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물, 사이버불링(따돌림) 등으로 유형화되고 있으며, 신종유형으로 피해학생을 카톡방에 초대한 뒤 여러 사람이 무조건 무시하는 ‘카따’, 피해학생을 카톡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계속 카톡방에 초대하는 ‘카톡감옥’, 스마트폰 테더링이나 핫스팟 기능을 가해학생들이 피해 학생들에게 강요하여 공짜로 인터넷 데이터를 이용하는 ‘와이파이셔틀’ 등이 있다.

#### 나. 사이버폭력 현황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2016~2018 학교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폭력 발생 건수가 △2016년 2122건 △2017년 3042건 △2018년 3271건으로 지난 3년간 증가율은 54.1%로 나타났다. 물리적 폭력 비중이 △2016년 57.9% △2017년 53.2% △2018년 51.1% 등 점차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사이버폭력(사이버따돌림)은 △2016년 8.6% △2017년 9.4% △2018년 9.7%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던 사이버 괴롭힘 등의 사이버폭력 비중은 2019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2019)의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과 학생, 가해 또는 피해를 합산한 사이버폭력 경험률이 33.5%로 나타났으며, 2018년 대비 0.7% 증가하였다. 이 중 학생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26.9%로 2018년(29.5%) 대비 2.6% 감소하였다. 사이버폭력 유형 중에는 언어 폭력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 사이버폭력이 주로 발생한 공간은 카카오톡, 페이스북과 같은 인스턴트 메시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가해 이유로는 ‘상대방이 먼저 그런 행동을 해서’가 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22> 학교폭력실태조사 피해 유형별 비중

구분	2013 년 1차	2014 년1차	2015 년 1차	2016 년1차	2017 년 1차	2018 년1차	2019 년 1차	증감 (건)
언어폭력	34.0	34.6	33.3	34.0	34.1	34.7	35.6	0.9
집단따돌림	16.6	17.0	17.3	18.3	16.6	17.2	23.2	6.0
사이버 괴롭힘	9.1	9.3	9.2	9.1	9.8	10.8	8.9	-1.9
스토킹	9.2	11.1	12.7	10.9	12.3	11.8	8.7	-3.1
신체폭력	11.7	11.5	11.9	12.1	11.7	10.0	8.6	-1.4
금품갈취	10.0	8.0	7.2	6.8	6.4	6.4	6.3	-0.1
강제심부름	6.1	4.7	4.2	4.3	4.0	3.9	4.9	1.0
성추행·성폭행	3.3	3.8	4.2	4.5	5.1	5.2	3.9	-1.3

자료: 2019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도자료(교육부, 2019.8.26)

#### 다. 사이버폭력에 대한 규제

현재 사이버폭력 규제를 위한 통일된 법률은 없는 실정이다.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를 통해 규율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서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비방의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의 단순 명예훼손죄가 적용된다. 사이버모욕에 대해서는 형법상 오프라인 모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형법 제311조에 따라 사람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사이버따돌림은 학교폭력예방법에 규정이 되어있으나 이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선도할 수는 있으나 형사처벌을 할 수는 없다. 사이버스토킹의 경우, 이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으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

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되고, 이러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보내는 행위를 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41조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① 내용 선별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보급, ②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술의 개발 및 보급, ③ 청소년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42조는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자 중 청소년유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경우,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안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일일평균 이용자의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해당 정보를 보관하여야 한다.

#### 4. 스팸

##### 가. 스팸의 개념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의미하며, 이 중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법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

한다. 정보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전송되는 광고 성 정보가 등장하였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으로 전송량이 급증하였다. 하지만 수신자가 수신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송자가 수신자에게 불필요한 정보를 수신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용자는 불필요한 정보를 확인, 삭제 거부하기 위하여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고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는 등 스팸은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다.

#### 나. 스팸 유통 현황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20)이 발표한 「2020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전체 스팸 발송량은 3,536만건으로 2019년 하반기(4,522만건) 대비 21.8% 감소하고, 1인 일평균 스팸 수신량은 0.47통으로 2019년 하반기 대비 0.05통 증가했다. 휴대전화로 수신된 전체 스팸 발송량은 1,470만건('19년 하반기 대비 4.6% 감소), 이메일 스팸 발송량은 2,066만건('19년 하반기 대비 30.7% 감소), 음성스팸 발송량(821만건)은 2019년 하반기 대비 9.7% 감소하였다. 조사 결과 유선전화 서비스를 통해 가장 많이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선전화 서비스(439만건)를 통한 스팸 발송이 53.4%, 인터넷전화 서비스(233만건) 28.3%, 휴대전화 서비스(150만건) 18.3%로 순으로 나타났다. 문자스팸 발송량(649만건)은 대량문자발송서비스<sup>34)</sup>를 통해 가장 많이 발송된 것으로 조사<sup>35)</sup>되었으며, 휴대전화 문자스팸 중 대출사기, 주식광고 등 금융스팸이 2019년 하반기 대비 396% 증가(22만건→112만건)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34) 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에서 이동통신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휴대전화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해주는 전기통신사업법상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서비스'에 속한다.

35) 대량문자발송서비스(568만건)를 통한 스팸 발송이 87.5%, 휴대전화 서비스(65만건) 10.0%, 유선·인터넷전화 등(16만건) 2.5% 순으로 나타난다.

<표 2-23> '20년 상반기 스팸 유통현황 요약

구분		'19년 하반기	'20년 상반기	증·감 비교
발송량	휴대전화	1,541만건	1,470만건	4.6%(71만건) 감소
	이메일	2,981만건	2,066만건	30.7%(915만건) 감소
	계	4,522만건	3,536만건	21.8%(986만건) 감소
수신량* (1인 일평균)	휴대전화	0.13통	0.16통	23.1%(0.03통) 증가
	이메일	0.29통	0.31통	6.9%(0.02통) 증가
	계	0.42통	0.47통	11.9%(0.05통) 증가
이통3사 스팸 차단율**		89.5%	96.2%	6.7%p 향상

\* 휴대전화 및 이메일 이용자 1인의 하루 평균 스팸 수신량

\*\* 이통사의 '지능형 스팸 차단서비스'의 문자스팸 평균 차단율

출처: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20)

'2020년 상반기 스팸 수신량 조사결과에 따르면, 음성스팸 수신량은 1인당 1일 0.07통으로 '2019년 하반기 대비 0.01통 증가, 문자스팸 수신량은 1인당 1일 0.09통으로 '2019년 하반기 대비 0.02통 증가되었다. 또한 이메일 스팸 수신량은 1인당 1일 0.31통으로 '2019년 하반기 대비 0.02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4> '20년 상반기 스팸 발송량

구분		'19년 하반기	'20년 상반기	증·감 비교
휴대전화 스팸 발송량	음성	910만건	821만건	9.7% ↓ (89만건 ↓)
	문자	631만건	649만건	2.8% ↑ (18만건 ↑)
계		1,541만건	1,470만건	4.6%(71만건) 감소
이메일 스팸 발송량	국내발	32만건	9.7만건	69.3% ↓ (22만건 ↓)
	국외발	2,949만건	2,056만건	30.3% ↓ (893만건 ↓)
계		2,981만건	2,066만건	30.7%(915만건) 감소

출처: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2020)

## 제4절 플랫폼 사업자 약관 및 정책 분석

### 1. 유튜브<sup>36)</sup>

유튜브는 이용약관 외 관련 운영정책을 같이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를 규정하고 있다. 커뮤니티 가이드에서는 허용되는 콘텐츠와 허용되지 않는 콘텐츠를 명시하고 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는 특히 증오표현<sup>37)</sup>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연령, 계급, 장애, 민족, 성 정체성 및 성 표현, 국적, 인종, 이민 신분, 종교, 성별, 성적 지향, 큰 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그 친인척, 군필 여부와 같은 특성을 문제삼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 또는 혐오감을 조장하는 콘텐츠는 게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튜브는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증오심 표현을 금지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으며, 관련 정책의 일부를 변경하는 방식(업데이트)으로 계속 시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용약관을 포함한 유튜브 전체 정책에 대해 게시물 제한 조치, 광고성 정보(스팸) 정책, 아동·청소년 보호정책을 검토한다.

#### 가. 게시물 제한조치 및 절차

유튜브는 콘텐츠가 유튜브와의 (약관) 계약을 위반하거나, 유튜브,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해를 야기한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콘텐츠를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삭제 사유 및 제한 조치 사유는 부적절한 콘텐츠, 서비스 약관 위반, 저작권 보호 콘텐츠, 상표권 정책 위반 콘텐츠가 있다. 부적절한 콘텐츠는 커뮤니티 가이드에서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크게 ①스팸 및 현혹 행위, ②민감한 콘텐츠, ③폭력적이거나 위협한 콘텐츠, ④규제상품으로 구분된다.

---

36) 구글은 서비스 약관과 서비스별 추가 약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서비스 약관과 서비스별 추가 약관이 상충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해서는 추가약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각 서비스 중 대표적으로 유튜브를 분석하였다.

37) 증오표현, 혐오표현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정립된 바 없어 해당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했다.

<표 2-25>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커뮤니티 가이드: 유튜브에서 허용되는 콘텐츠와 **허용되지 않는 콘텐츠**를 명시하며, 동영상, 댓글, 링크, 미리보기 이미지 등 플랫폼에 존재하는 모든 유형의 콘텐츠에 적용된다.

<스팸 및 현혹행위>

- ① 허위참여: 자동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시청자가 의도하지 않은 동영상을 보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회수, 좋아요 수, 댓글 수 또는 기타 측정항목을 인위적으로 늘리는 행위
- ② 명의도용: 개인 또는 채널의 명의를 도용할 목적을 가진 콘텐츠
- ③ 콘텐츠에 포함된 링크: 이용자를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콘텐츠가 포함된 웹사이트로 안내하는 링크
- ④ **스팸**, 현혹행위, 사기: 유튜브 커뮤니티를 표적으로 하는 스팸, 사기, 기타 현혹 행위

<민감한 콘텐츠>

- ① **아동보호**: 미성년자의 정서나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콘텐츠
- ② 맞춤 미리보기 이미지: 커뮤니티 가이드를 위반하는 맞춤 미리보기 이미지
- ③ 과도한 노출 및 성적인 콘텐츠: 성적 만족을 위한 음란물
- ④ 자살 및 자해 행위: 자살과 자해를 조장하거나 이용자에게 충격 또는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으로 제작된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콘텐츠>

- ① 괴롭힘 및 사이버 폭력: 타인을 위협하는 콘텐츠
- ②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 심각한 신체적 손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하거나 불법적인 행동을 독려하는 콘텐츠
- ③ **중요심 표현**: 연령, 계급, 장애, 민족, 성 정체성 및 성 표현, 국적, 인종, 이민 신분, 종교, 성별, 성적 지향, 큰 폭력 사건의 피해자와 그 친인척, 군필 여부와 같은 특성을 문 제삼아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 또는 혐오감을 조장하는 콘텐츠
- ④ 폭력 범죄 조직: 폭력적인 범죄 조직을 찬양, 홍보 또는 지원하려는 의도로 제작된 콘텐츠
- ⑤ 폭력적이거나 노골적인 콘텐츠: 시청자에게 충격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의도의 폭력적이거나 잔인한 콘텐츠 또는 다른 사람의 폭력적인 행동을 조장하는 콘텐츠
- ⑥ 잘못된 코로나19 정보 관련 정책: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고,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COVID-19 관련 콘텐츠

<규제상품>

- ① 총기류가 등장하는 콘텐츠: 총기를 판매하려는 의도로 제작된 콘텐츠나 시청자에게 총기와 탄약, 특정 액세서리의 제조 방법을 안내하거나 액세서리의 장착 방법을 안내하는 콘텐츠
- ② 불법 또는 규제 상품 판매: 특정 규제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의도의 콘텐츠

출처: 유튜브 홈페이지, 커뮤니티 가이드

유튜브는 ①법적 이유로 금지되거나, ②이용자, 기타 제3자, 유튜브 또는 그 계열사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에게 게시물 삭제에 대한 이유를 지체없이 통지해야 한다.

나. 광고성정보(스팸) 정책

유튜브는 약관에 근거한 커뮤니티 가이드에서 스팸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표 2-26>). 유튜브에 게시하지 못하는 스팸 콘텐츠로 동영상 스팸, 인센티브 스팸, 댓글 스팸을 규정하고 있다. 해당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콘텐츠는 삭제되고 이와 관련한 알림 메일이 발송된다. 처음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채널에 대한 제한조치 없이 주의만 받게 되며, 처음이 아닐 경우 경고 조치가 적용된다. 경고가 3번 누적되면 채널이 해지된다.

<표 2-26> 유튜브에서 금지되는 스팸 콘텐츠

<p><b>동영상 스팸:</b> 과도하게 자주 게시되거나 반복되거나 뚜렷한 대상이 없고 다음 내용을 하나 이상 포함한 콘텐츠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청자에게 무언가를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지만 보여주지 않고 외부 사이트로 유인합니다.</li> <li>- 시청자에게 빠른 수익 창출을 약속하면서 YouTube 외부 사이트로 클릭, 조회 또는 트래픽을 유도합니다.</li> <li>- 멀웨어를 유포하거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사이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다른 사이트로 시청자를 유인합니다.</li> </ul> <p><b>인센티브 스팸:</b> 조회수, 좋아요 수, 댓글 수와 같은 참여도 측정항목이나 그 외 다른 YouTube 측정항목을 판매하는 콘텐츠입니다. 구독자 수, 조회수 또는 다른 측정항목을 높이는 것만이 목적인 콘텐츠도 여기에 포함됩니다(예: 내 채널을 구독하는 조건으로만 다른 크리에이터의 채널을 구독하겠다고 제안하는 '서로 구독해 주기' 콘텐츠).</p> <p><b>댓글 스팸:</b> 시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잘못된 정보로 시청자를 YouTube 외부 사이트로 유인하거나 위에 설명된 금지 행동을 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작성된 댓글입니다.</p>
--

출처: 유튜브 홈페이지, 커뮤니티 가이드

다. 아동·청소년 보호

유튜브는 약관에 근거한 커뮤니티 가이드에 아동보호에 대한 정책을 명시하고 있다(<표2-27>). 미성년자의 정서나 신체적 건강을 위협하는 콘텐츠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여기서 유튜브는 미성년자 정의를 법적 성인 연령 미만으로 정하고 있다.<sup>38)</sup>

아동·청소년 보호 항목은 게시가 금지되는 콘텐츠, 연령이 제한되는 콘텐츠,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콘텐츠에 대한 내용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만약 해당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콘텐츠는 삭제되고 이와 관련한 알림 메일이 발송된다. 처음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채널에 대한 제한조치 없이 주의만 받게 되며, 처음이 아닐 경우 경고 조치가 적용된다. 경고가 3번 누적되면 채널이 해지된다.

<표 2-27>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금지 콘텐츠

**미성년자의 성적 대상화:** 미성년자가 나오는 음란물 및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착취하는 콘텐츠입니다. 아동 성적 학대 이미지가 포함된 콘텐츠가 발견되면 YouTube에서 NCMEC(National Center for Missing and Exploited Children)에 신고하며, NCMEC는 각국의 법 집행 기관과 협력합니다.

**미성년자와 관련된 유해하거나 위협한 행위:** 미성년자가 위험한 행동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미성년자에게 위험한 행동을 독려하는 콘텐츠입니다. 미성년자를 위협한 스톨트, 도전, 장난을 비롯해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유해한 상황에 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의 정신적 고통 유발: 미성년 참여자 또는 시청자에게 다음과 같이 정신적 고통을 초래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 미성년자에게 성인용 주제를 노출
- 부모의 학대 상황을 가장
- 미성년자에 대한 강요 또는 강압적 행위
- 폭력

**오해를 일으키는 가족 콘텐츠:** 미성년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하지만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콘텐츠입니다.

- 성적인 주제

38) 유튜브는 대부분의 국가 및 지역에서 대개 만 18세 미만에 해당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폭력
- 아동 시청자층에게 적합하지 않은 외설적이거나 음란한 내용
- 미성년 시청자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폭력, 성행위, 사망, 약물 등의 성인 대상 주제 또는 연령 제한이 적용되는 주제가 담긴 가족용 만화. 제목, 설명, 태그가 대상 시청자층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청자층 설정이 내 콘텐츠를 시청하기에 적합한 시청자층을 올바르게 나타내는지 확인하세요. 성인 시청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업로드 시 콘텐츠에 연령 제한을 직접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연루된 사이버 폭력 및 괴롭힘:** 다음과 같은 콘텐츠가 해당됩니다.

- 학대하거나 모멸감을 주기 위해 개인을 표적으로 삼는 콘텐츠
- 이메일 주소 또는 은행 계좌 번호와 같은 개인 정보를 노출
-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을 녹음/촬영
- 성희롱
- 괴롭힘 행위를 선동

출처: 유튜브 홈페이지, 아동안전 카테고리

### <표 2-28>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연령제한 콘텐츠

**미성년자가 모방할 수 있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행위:** 성인이 미성년자가 쉽게 모방할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을 하는 콘텐츠입니다.

- 참고: 미성년자에게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경고하는 콘텐츠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전문 기술을 갖춘 성인의 지도가 필요하다는 설명도 있어야 합니다.

**성인용 주제가 담긴 가족 콘텐츠:** 성인 시청자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가족 콘텐츠로 쉽게 혼동될 수 있는 콘텐츠입니다. 여기에는 폭력, 성행위, 사망 등의 성인용 주제가 담긴 만화가 포함됩니다. 성인 시청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업로드 시 콘텐츠에 직접 연령 제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속한 언어:** 일부 언어 표현은 어린 시청자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나 과도한 욕설을 사용하는 콘텐츠에는 연령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출처: 유튜브 홈페이지, 아동안전 카테고리

<표 2-29>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콘텐츠 규정

YouTube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YouTube 정책을 위반하는 콘텐츠가 아니더라도 아동이 등장하는 경우 일부 기능이 채널 및 동영상 단위에서 사용 중지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댓글
- 실시간 채팅
- 실시간 스트리밍
- 맞춤 동영상(내 동영상이 추천되는 방법 및 시기)
- 커뮤니티 게시물
- 콘텐츠 속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방법

YouTube의 목표는 시청자뿐 아니라 업로더도 보호하는 것입니다. 본인, 가족, 친구의 콘텐츠를 게시하기 전에 콘텐츠에 등장하는 사람이 악의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는 성인의 감독하에 취미 시연, 교육 콘텐츠 또는 공연 등 연령대에 맞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연령대에 맞는 복장을 착용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신체가 과도하게 노출되거나 너무 딱 붙는 복장은 피해야 합니다.
- YouTube의 공개 범위 설정을 사용해 게시한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대상을 제한합니다.

미성년자가 등장하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항이 있는 콘텐츠는 YouTube에 게시하지 마세요.

- 침실 또는 욕실 등 집안의 사적인 공간에서 촬영
- 낯선 사람들의 접근 또는 온라인 챌린지를 부추기거나 성인용 주제를 다루는 미성년자가 등장
- 신체 곡예 또는 ASMR 등 미성년자에 대한 원치 않는 관심을 끌 수 있는 활동을 보여줌
- 미성년자 개인의 신상에 관한 세부정보를 밝힘

출처: 유튜브 홈페이지, 아동안전 카테고리

## 2. 네이버

네이버는 이용약관 외 관련 운영정책을 같이 명시하고 있다. 이용약관 계위에는 네이버 이용약관, 네이버 유료서비스 이용약관, 네이버 위치정보 이용약관, 네이버 운영정책이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 중 좀 더 세분화 하여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개인정보처리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스팸메일정책 등에 대해서는 이용약관과 동일한 계위에서 규정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용약관을 포함한 네이버 전체 정책에 대해 게시물 제한 조치, 광고성 메일 정책, 청소년 보호정책을 검토한다.

### 가. 게시물 제한조치 및 절차

타인에 대해 직접적이고 명백한 신체적 위협을 가하는 내용의 게시물, 타인의 자해행위 또는 자살을 부추기거나 권장하는 내용의 게시물, 타인의 신상정보, 사생활 등 비공개 개인정보를 드러내는 내용의 게시물, 타인을 지속적으로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내용의 게시물, 성매매를 제안, 알선, 유인 또는 강요하는 내용의 게시물, 공공 안전에 대해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내용의 게시물은 제한된다. 또한, 관련 법령상 금지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행하거나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하는 등의 범죄 관련 직접적인 위협이 확인된 게시물, 관련 법령에서 홍보, 광고, 판매 등을 금지하고 있는 물건 또는 서비스를 홍보, 광고, 판매하는 내용의 게시물, 타인의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하거나 모욕,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이 확인된 게시물은 제한될 수 있다.

한편, 자극적이고 노골적인 성행위를 묘사하는 등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거나 왜곡된 성 의식 등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의 게시물, 타인에게 잔혹감 또는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의 게시물, 본인 이외의 자를 사칭하거나 허위사실을 주장하는 등 타인을 기만하는 내용의 게시물, 과도한 욕설, 비속어 등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심한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을 제한될 수 있다.

네이버는 이용자가 게재한 게시물이 관련 법령, 약관, 게시물 운영정책, 각 개별

서비스에서의 약관, 운영정책 등에 위배되는 경우 비공개 또는 삭제, 게재 거부등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모든 콘텐츠를 검토할 의무를 지고 있다는 것은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광고성정보(스팸) 정책

네이버는 약관에 스팸메일 정책을 따로 항목화하여 규정하고 있다. 네이버가 제정한 스팸메일 기준에 해당될 경우 메일을 차단하고, 스팸메일 발송자에 대해 메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

<표 2-30> 네이버 스팸메일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계법령 및 스팸메일 방지 가이드라인에서 광고성 메일에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정보 (업체명 또는 성명과 연락처, 이메일주소),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스팸메일로 판단합니다.</li> <li>- 또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메일을 전송하는 경우 제목란과 본문란에 반드시 ‘광고’를 기재해야 하고, 메일의 본문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스팸메일로 판단합니다.</li> </ul> </li> <li>○ 수신자의 동의 없이 대량으로 발송되는 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신자가 동의하지 않은 메일이 대량으로 발송되는 경우에는 메일 규정을 준수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하지 않은 경로를 통해 메일주소를 수집한 것으로 간주하여 스팸메일로 판단합니다.</li> </ul> </li> <li>○ 관리자 사칭 또는 허위사실 유포 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이버 서비스 관리자를 가장하여 메일을 발송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메일을 보내는 경우 스팸메일로 판단합니다.</li> </ul> </li> <li>○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송되는 ‘대출’광고 또는 선전 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대출’광고 또는 선전 메일을 영리 목적으로 발송하는 경우 스팸메일로 판단합니다.</li> </ul> </li> <li>○ 음란성 글, 음란/불법 CD 및 프로그램 판매 메일</li> </ul>
--

- 업체 혹은 개인이 보내는 음란성 글, 음란/불법 CD 및 프로그램 판매와 관련된 메일을 스팸메일로 판단합니다.
  - o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연속성 메일 및 사기성 메일
    - 행운의 편지 또는 저주의 글을 비롯해 다른 사용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메일, 정확한 근거 없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사기성 메일을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스팸메일로 판단합니다.
  - o 스팸메일 신고가 일정 수치 이상이며, 메일내용이 객관적으로도 스팸인 경우
    - 네이버 회원으로부터 특정 메일에 대해 스팸신고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해당 메일 수신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의미이므로, 스팸메일 신고 횟수가 일정 수치 이상이고 해당 메일내용이 객관적으로도 스팸으로 보이는 경우 스팸메일로 판단합니다.
- 출처: 네이버 홈페이지 이용약관

스팸메일 발송인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네이버 메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 ①네이버 스팸메일 기준에 해당하는 스팸메일을 전송한 경우, ②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 불법스팸 전송사실을 확인하여 이용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③대량으로 스팸을 전송하여 시스템 장애를 야기했거나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④스팸릴레이로 이용되거나 웹에 감염된 스팸메일을 전송한 경우 해당 이용자의 메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용제한 조치 시에는 해당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용제한을 받은 회원은 이용제한 기간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면 제한을 해제한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의도적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및 이를 하게 한 자(광고주, 위탁자)는 수사기관에 고발됨을 적시하고 있다.

#### 다. 청소년 보호정책

네이버는 청소년 보호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방지하는 근거로서 작용하며, 이와 관련하여 네이버가 청소년보호를 위해 취하고 있는 의무에 대한 조치를 게재하고 있다. 우선 네이버는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 장치 없이 청소년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인증장치를 마련하여 청

소년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한 예방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업 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 관련 법령 및 제재기준, 유해정보 발견 대처방법,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절차 등을 교육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를 입었거나 고충이 있을 경우 상담이나 처리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표 2-31> 네이버 이용약관 및 정책 상 청소년 보호 정책

<p><b>&lt;네이버 이용약관&gt;</b> 네이버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내용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다만, ‘<u>청소년보호법</u>’ 등 관련 법령이나 기타 개별 서비스 제공에서의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연령 또는 일정한 등급을 기준으로 이용자를 구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이용 시간, 이용 횟수 등을 다르게 하는 등 일부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p>
<p><b>&lt;네이버 청소년 보호정책&gt;</b> 네이버 주식회사 ("회사" 또는 "네이버"라 함)는 <u>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u> 회사는 청소년들이 유해정보에 접근할 수 없도록 방지하고 있는 바, 본 청소년 보호정책을 통하여 회사가 청소년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p> <p>1. <u>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u> 회사는 청소년이 아무런 제한장치 없이 청소년 유해정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인증장치를 마련, 적용하며 청소년 유해정보가 노출되지 않기 위한 예방차원의 조치를 강구합니다.</p> <p>2. <u>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를 위한 업무 담당자 교육 시행</u> 회사는 정보통신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청소년보호 관련 법령 및 제재기준, 유해정보 발견시 대처방법,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절차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p> <p>3. <u>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u> 회사는 청소년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그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분들께서는 하단에 명시한 "4. 네이버 청소년보호 책임자 및 담당자의 소속, 성명 및 연락처" 항을 참고하여 전화나 메일을 통하여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p>

출처: 네이버 홈페이지, 청소년 보호정책

### 3. 카카오

카카오는 카카오계정 약관, 카카오통합서비스약관의 두 개 이용약관과 함께 운영 정책, 청소년보호정책 등 관련 정책들을 규정하고 있다. 카카오 계정 약관은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회사 또는 관계사의 개별 서비스에 모두 접속 가능한 통합로그인계정 체계에 적용되는 약관이다. 카카오 통합서비스 약관은 카카오가 제공하는 다양한 인터넷과 모바일 서비스<sup>39)</sup>에 대한 약관이다.

최근 카카오는 증오표현에 대한 대응 방안의 일환으로 증오표현 관련 활동의 금지를 운영정책에 추가하였다. 이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증오표현을 재빠르게 반영한 카카오의 선제적인 조치라고 판단된다. 해당 사항을 위해 2021년 1월 13일에 관련 조항을 변경하였고, 이는 2021년 1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하에서는 카카오계정 약관과 카카오 통합서비스 이용약관을 포함한 카카오 전체 정책에 대해 게시물 제한 조치, 광고성 정보(스팸) 정책, 청소년 보호정책을 검토한다.

#### 가. 게시물 제한조치 및 절차

카카오는 운영정책에서 서비스 이용시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표 2-32>의 행위를 할 경우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다만, 이 중 음란한 내용의 게시와 유포 및 사행성 도박 홍보 등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는 명백한 불법행위,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사안은 통합서비스 이용이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 다른 이용자가 문제 게시물을 볼 수 없도록 게시물의 노출이 제한되거나 삭제될 수 있다. 이 경우 서비스 이용 제한은 한시적 제한에서 영구적 제한으로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진다.

---

39) 카카오 서비스, Daum 서비스, 멜론 서비스 등을 의미하며 이하 해당 서비스들을 모두 합하여 ‘통합서비스’ 또는 ‘서비스’라고 한다.

<표 2-32> 카카오 서비스 이용 시 금지하는 행위

- (1) 불법적인 사행성·도박 사이트를 홍보하는 행위
- (2) 게임 아이템, 점수, 계정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판매, 구매, 환전하거나 요청하는 행위
- (3) 불법 제품 또는 인터넷에서 판매 금지된 물품을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행위
- (4) 불법 행위에 대한 동기 부여 및 실행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5) 악성코드, 바이러스 등의 프로그램을 설치·유포하여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
- (6)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파괴하거나, 할 수 있는 행위
- (7) 타인의 개인정보를 탈취·유포·거래하려는 행위
- (8) 방송·음원·영화·만화·사진·영상·게시물 등 타인의 저작물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공유하거나, 불법적인 경로로 획득할 수 있는 정보나 방법을 제공하는 행위
- (9) 타인의 권리에 속하는 상표권, 의장권 등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행위
- (10) 청소년에게 유해한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행위
- (11) 성매매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
- (12) 타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 (13) 타인의 성을 착취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이나 이미지 등의 콘텐츠를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행위
- (14) 타인의 성을 착취할 목적으로 협박, 유인하거나 이를 모의, 조장하는 행위
- (15) 지역·장애·인종·출신국가·성별·나이·직업·종교 등을 차별하거나 이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내용을 작성하는 행위
- (16) 자살·동반자살을 목적으로 하거나 방조 또는 유인하는 행위
- (17) 동일한 내용을 동일 개별 서비스 또는 여러 개별 서비스에 반복적으로 등록하는 행위
- (18) 타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시스템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타인의 게시글 또는 공간에 광고·홍보·방문 유도 등 상업적 내용을 등록·전송하거나 ‘공감’, ‘친구신청’ 등의 활동을 하는 행위
- (19) 서비스의 명칭 또는 회사의 임직원이나 운영진을 사칭하여 다른 이용자를 속이거나 이득을 취하는 등 피해와 혼란을 주는 행위
- (20) 욕설·비속어·은어 등의 사용 및 그 외 상식과 사회 통념에 반하는 비정상적인 행위
- (21) 언론사의 명이나 언론사의 직책 등을 사칭 또는 도용하여 기사 형태를 갖춘 게시물 중 그 내용이 허위로 판단되는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
- (22) 회사가 허용하지 않은 악의적인 방법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등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

출처: 카카오 홈페이지, 카카오 통합서비스약관



나. 광고성 정보(스팸) 정책

카카오 통합서비스약관 제6조 제8항은 스팸성 메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스팸 운영정책을 기능을 제공함을 밝히고 있다. 여기서 스팸성 메일은 피싱, 바이러스 유포, 개인정보 탈취 등 각종 불법 및 사행성 스팸을 의미한다. 동 약관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카카오가 판단했을 때 스팸성 게시물에 해당된다면 이를 삭제하거나 거부를 게시할 수 있다. 하지만, 카카오가 모든 콘텐츠를 검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을 밝히고 있다.

<표 2-33> 카카오 통합서비스 약관에 의한 스팸성 게시물에 대한 처리

제 9 조 (권리의 귀속 및 저작물의 이용) ④회사는 여러분의 콘텐츠가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음란 또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게시물, 차별 갈등을 조장하는 게시물, 도배·광고·홍보· <b>스팸성 게시물</b> , 계정을 양도 또는 거래하는 내용의 게시물, 타인을 사칭하는 게시물 등이라고 <b>판단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게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모든 콘텐츠를 검토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b> 누군가 여러분의 권리를 침해하였다면, 고객센터를 통해 게시중단 요청에 대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 및 이용제한 절차의 내용은 카카오 운영정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출처: 카카오 홈페이지, 카카오 통합서비스약관

다. 아동·청소년 보호

카카오통합서비스 약관 제16조는 청소년보호를 규정하고 있다.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을 돕기 위해 정보통신망법에서 정한 청소년보호정책을 별도로 시행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카카오 청소년보호 정책에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불법적이거나 청소년에 유해한 키워드에 대한 금지어를 일반 검색 포함 각종 서비스에 확대 적용하며, 성인 인증이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이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해당되는 서비스 담당자를 대상으로 법령 및 제재기준, 대처방법, 보고 절차 등에 대해 교육하고 있다.

<표 2-34> 카카오 청소년 보호정책

<p><b>1. 청소년 보호를 위한 목표 및 기본 원칙</b> 청소년이 정신적·신체적으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며,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정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p> <p><b>2. 청소년 보호 장치</b> 청소년이 정신적·신체적으로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받고 유익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며, 안전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보호정책을 명시하고 있습니다.</p> <p><b>3.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b>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구제조치의 지연 및 처리 미숙으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자체적으로 처리가 곤란할 경우 피해 특성별 관련기관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p> <p><b>4. 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접근제한 및 관리조치</b> 불법적이거나 청소년에 유해한 키워드에 대한 금칙어를 일반 검색을 포함한 각종 서비스에 확대 적용하고 있으며, 성인 인증장치가 마련된 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용범위를 제한하게 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p> <p><b>5.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b> 청소년보호담당자 및 각 서비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각종 관련 법령 및 제재기준, 유해정보 발견시 대처방법, 위반사항 처리에 대한 보고절차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p> <p><b>6. 전체 이용자들의 인식제고를 통한 청소년 보호</b> 서비스이용약관 등을 통하여 불건전한 행위를 할 경우 이용제한 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있으며, 신중 유해정보가 발생했을 경우 공지사항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이를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청소년 및 전체 이용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정보건전화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하여 네티켓 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p> <p><b>7.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의 지정</b> 아래와 같이 청소년보호책임자 및 청소년보호담당자를 지정하여 청소년유해정보의 차단 및 관리,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정책을 수립하는 등 청소년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p>
--

출처: 카카오 홈페이지, 청소년 보호정책

한편,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히고 있다. ①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제공하거나 광고·소개하는 행위, ②아동·청소년 성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이용하는 행위, ③아동·청소년이 성착취물의 제작에 이용되도록 돕는 행위, ④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이나 성착취물을 제공하는 행위, ⑤아동·청소년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 ⑥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모의하거나 묘사하는 행위, ⑦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그루밍(grooming, 길들이기) 행위, ⑧아동·청소년의 과도한 성적 대상화, ⑨그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조장하는 행위의 경우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를 적용하며, 필요 시 수사기관의 사법적 대응을 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 제3장 주요국의 정보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 보호 정책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망이 발달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 유형이 다양화되는 한편, 이를 이용한 관련 불법·유해정보 유통 행위, 범죄행위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여러 국가에서는 이러한 행위로부터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각 국가의 규제체계별로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이용자보호 정책을 정립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불법·유해정보, 범죄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형법, 개별법 등 다양한 방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특히 EU는 2020년 12월 15일 디지털 서비스법을 제안하여 온라인 상에서의 이용자 보호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하에서는 EU, 독일, 영국, 미국, 일본 등 각 국가의 정보통신망 상 이용자보호 정책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 제1절 EU 입법안

#### 1. 전자상거래법에 근거한 불법콘텐츠 규제

2018년 3월, 유럽위원회는 온라인사업자가 불법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도록 하는 조치에 관한 권고를 채택했다. ‘전자상거래법(e-Commerce Directive)’에 의거하여 채택된 해당 권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통지와 행동’에 대한 절차 명확화이다. 온라인플랫폼은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에 의한 신속절차를 포함하여 불법콘텐츠를 신고하기 위한 쉽고 투명하도록 규칙을 설정해야 한다. 또한, 합법적인 콘텐츠 삭제방지를 위해 콘텐츠제작자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 더 효과적인 사전 예방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온라인사업자는 테러, 불법아동성착취, 위조 상품 등과 같이 맥락을 고려할 필요없이 불법으로 간주

되는 정보들을 감지하고 제거할 수 있는 사전예방적인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사업자는 사용자를 위한 명확한 알림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셋째,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한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자동화된 도구를 이용하여 콘텐츠 삭제를 결정하는 근거를 검증하는데 있어 온라인 사업자는 사람이 직접 감독하고 검증하는 등의 효과적이고 적절한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 데이터보호규칙 등을 완전하게 존중해야 한다. 넷째, 중소기업에 관한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한다. 업계는 불법콘텐츠를 제고하는 기술을 업계에 공유하여 제한된 재원을 가진 소규모 플랫폼 등을 도와야 한다. 다섯째, 당국과 긴밀히 협력한다. 심각한 범죄증거가 있거나 생명,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의심되는 경우 기업은 즉시 사법기관에 알려야 한다. 회원국은 적절한 의무를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권고를 채택하며 당시 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이 사전조치를 취하는데 충분한 근거를 제공한다고 판단했다.

## 2. 디지털 서비스법<sup>40)</sup> 제안 내에서의 불법콘텐츠 규제

2020년 12월 15일, 유럽위원회는 전자상거래법의 내용을 현 상황에 맞추어 대폭 개정한 ‘디지털서비스법’ 입법 제안을 발표했다. 유럽위원회 측은 전자상거래법은 20여년 전에 채택되었기 때문에 내용개정이나 수정을 넘어선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해당 제안에는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기본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온라인플랫폼사업자들의 운영투명성 및 책임프레임워크 구축, 단일시장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디지털 서비스법은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콘텐츠를 제거하고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온라인 사용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방안 개선안이라고 볼 수 있다. 해당 법은 유럽연합 인구의 10% 이상이 사용하는 온라인 플랫폼은 강력한 감독체계를 구축하도록 명령하고 있다.

---

40) The Digital Services Act package

특히 ‘불법콘텐츠’의 정의에 대해 제품이나 서비스, 활동과 관련된 광의의 개념으로 적용함으로써 그 범위를 넓혔다. 정보나 활동의 불법성이 유럽연합의 법이나 회원국의 법에 기인하는지 여부, 위반법률의 성격, 내용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불법적 활동을 규제범위에 포함시켰다. 즉,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증오표현(혐오표현), 차별 콘텐츠 등과 같이 그 자체가 불법이거나 불법적인 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의미하고, 불법이동성착취 이미지 공유, 개인이미지의 불법적인 비동의 공유, 온라인 스토킹, 위조제품 판매, 저작권 보호자료의 무단사용, 소비자보호법위반 등의 활동도 포함시켰다. 한편, 소셜네트워크 또는 온라인마켓플레이스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은 최종사용자(서비스이용자)가 제공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보를 대중에게 배포하는 호스팅 서비스업체로 정의했다. 여기에서 ‘대중에게 보급(dissemination to the public)’이라는 개념은 잠재적으로 무제한의 사람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추가조치 없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sup>41)</sup>

한편, 온라인사업자의 불법콘텐츠 제한의무와 관련된 조항은 제2장과 제3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제2장은 플랫폼서비스 사업자의 책임면제조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온라인중개서비스 사업자가 정보에 대해 ① 전달자(단순경로제공, Mere conduit)(제3조) ② 캐싱(제4조) ③ 호스팅서비스(제5조) 등의 활동을 행할 때, 전송 및 저장하는 제3자가 생성한 정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된다는 내용이다. 또한, 온라인중개서비스 사업자가 자체 조사 또는 법률을 준수하는 과정에 대한 책임면제(제6조), 제공자에 보호조항(제7조) 등도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온라인 사업자의 유형에 따른 의무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중개서비스 의무(제10조-제13조), 호스팅서비스 의무(제14조-제15조), 그 외 모든 온라인플랫폼 서비스 의무(제16조-제24조), 초대형온라인플랫폼의 의무(제25조-제33조), 기업실사 의무(제34조-제36조)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제2장(제3조-제9조)은 온라인중개사업자의 면책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

41) 이메일 비공개 메시징 서비스는 디지털서비스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제공한 정보가 통신망을 통해 전송하거나, ②정보사회서비스(정보서비스, information society service)에 접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a)정보전송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b)이용자를 선택하지 않았고, (c)전송되는 정보를 선택하거나 수정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는 전송된 정보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sup>42)</sup> 한편, 캐싱의 경우 서비스대상자가 제공한 정보의 전송으로 정보사회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온라인중개사업자는 정보가 자동저장, 중간저장, 임시저장되는 것에 대해 ①사업자가 정보를 수정하지 않고, ②사업자가 정보접근조건을 준수하며, ③업계에서 널리 인식되고 사용되는 방식으로 정보업데이트 규칙을 준수하며, ④사업자가 업계에서 널리 인식되고 사용되는 기술의 합법적인 적용을 저해하지 않으며, ⑤법원이나 행정당국, 사업자가 인지한 불법정보의 접근제한이나 삭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경우 정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호스팅은 서비스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저장으로 정보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중 ①불법콘텐츠에 대한 실제 정보를 알지 못하고,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정보가 없으며, ②그러한 정보를 얻었을 때 접근을 제거하거나 비활성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하는 사업자는 저장된 정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불법콘텐츠에 대한 명령을 보면, 온라인중개사업자는 국가법령 또는 행정당국이 유럽연합법 또는 국내법에 의거하여 특정 불법콘텐츠에 대해 조치할 것을 명령받으면 지체없이 취한 조치와 조치시행시기에 대해 명령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그 경우 명령당국은 정보가 불법콘텐츠인 이유(유럽연합법, 국내법), 불법콘텐츠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추가정보(추가적인 조치를 위함), 구제방안 등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

제3장(제10조-제37조)는 투명하고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위해 유형별 온라인중개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 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모든 온라인중개사업

---

42) 일시적 저장을 포함한다. 단, 정보는 전송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에만 저장되어야 한다.

자에 해당하는 조항이다. 온라인중개사업자는 유럽연합회원국의 당국, 위원회, 이사회 등과 전자적 수단으로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단일 창구를 설정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sup>43)</sup> 이와 함께 법정대리인 지정의무와 권한부여, 알고리즘, 콘텐츠 이용에 대한 내부정책, 절차 등과 같은 서비스이용자와 관련한 정보공개의무, 불만접수 및 처리 관련 연간보고 의무 등도 규정되어 있다. 제14조와 제15조는 온라인 플랫폼을 포함하여 호스팅 사업자에 적용되는 추가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 호스팅 사업자는 개인이나 단체가 불법콘텐츠로 간주하는 특정정보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마련해야 하고, 이 메커니즘에는 신고자가 불법정보로 간주하는 이유, 정확한 식별정보(URL 등), 신고자의 기본정보, 불법성에 대한 진술 등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불만이 접수된 것을 확인한 후 바로 접속을 알리는 회신, 불만처리에 대한 결정과 구제 가능성 정보 제공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호스팅 사업자는 특정 콘텐츠에 대해 접근제한이나 비활성화(삭제)하는 경우 정보수신자에게 이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의무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정에 따른 제한 범주, 결정이 내려진 사실과 상황, 자동시스템을 이용한 경우 그제 대한 정보, 불법정보에 대한 해당 근거, 이용약관 관련 설명, 구제가가능성<sup>44)</sup> 등이다. 해당정보는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정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온라인플랫폼에 적용되는 추가조항은 제16조에서 제24조까지 규정되어 있다. 온라인플랫폼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제거하거나 비활성화(삭제)하기로 한 결정, 서비스제공의 중단 또는 종료 이유, 정보수신자(이용자)의 계정을 정지 또는 해지하기 위한 결정에 관해 최소 6개월 동안 당사자가 불만을 접수할 수 있도록 내부불만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 친화적이고 접근이 쉬워야 한다. 불법이나 약관에 위배되지 않을 경우 지체없이 결정을 취소하며, 불만처리에 대한 결정을 알려야 한다. 이와 함께 관련된 분쟁해결방식을 알려야 한다. 내

---

43) 적어도 1개 이상의 공식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4) 불만처리, 분쟁, 법적 구제 등이 포함된다.



부불만처리시스템에 따라 처벌을 받은 당사자 중 내부불만처리시스템으로 해결되지 않은 분쟁에 해당할 경우 법적 조치 외의 관련 기관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다. 한편, 온라인플랫폼은 메커니즘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가 제출한 불만이 우선적이고 지체없이 처리 및 결정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직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들이 제출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sup>45)</sup> 또한,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형사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정보를 인지한 후에는 이를 즉시 사법 집행 기관에 통지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지역을 특정하지 못할 경우 법적 대리인이 있는 법 집행 기관에 이를 통지하거나 유로폴에 알려야 한다.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는 법원 밖에서 해결된 분쟁 수와 해결 결과, 평균 소요시간, 근거없이 신고된 불만에 대한 정보, 콘텐츠 검토를 위해 사용한 자동시스템의 기능과 지표, 보호 장치에 관한 정보를 최소 6개월에 1회 이상 제공해야 한다(제23조). 또한, 명확한 광고표시, 광고 대행담당자, 광고 수신자를 결정하는데 사용된 주요 정보 등을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제24조).

제25조부터 제33조까지는 초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추가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유럽연합 내에서 4,500만명 이상 사용하는 서비스 제공자<sup>46)</sup>, 담당기관은 6개월마다 이용자 수를 확인하여 초대형플랫폼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초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서비스를 통한 불법콘텐츠 유보, 기본권<sup>47)</sup> 침해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 허위정보를 포함한 서비스의 의도적인 조작으로 공중보건, 미성년자, 시민담론, 선거 및 공공보안 등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

45) 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는 ①불법콘텐츠를 검색하고 식별하며, 고지할 수 있는 특별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②온라인플랫폼에서 독립적으로 설립된 이익집단, ③객관적으로 불만을 제출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단체로서 공식적으로 인증된 기관을 지칭한다.

46) 유럽연합 인구가 5% 이상 변하는 경우 그 숫자를 재조정하여, 백만 단위로 반올림 또는 내림 처리하여 집계한다.

47) 개인 및 가정생활, 표현 및 정보의 자유, 아동권리 등을 의미한다.

부정효과에 대한 문제를 식별하고 분석 및 평가해야 한다. 평가과정에서 초대형은 라인플랫폼사업자는 콘텐츠조정시스템, 추천시스템, 광고 선택과 표시 등에서 불법 콘텐츠 및 서비스 약관을 위배하는 정보 유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제26조). 초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①콘텐츠조정 및 추천시스템, 의사결정 프로세스, 서비스의 요소와 기능, 이용약관 조정, ②광고표시에 대한 조정, ③위험감지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 또는 감독활동 강화, ④신뢰할 수 있는 신고자와의 협력 강화, ⑤다른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 등의 조치로 위험을 완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관련보고서를 1년에 1회 제출하도록 하고, 모범사례를 선정하여 가능한 조치를 권장할 수 있다(제27조). 또한, 초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1년에 1회 이상 자신의 의무수행에 관한 독립적인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제28조). 추천시스템을 제공하는 초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는 명확하고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매개변수에 대한 정보와 이를 조정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한 정보를 서비스 이용자가 언제든지 접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한다(제29조).

## 제2절 독일 이용자 보호 정책

### 1. 개요

독일은 정보통신망 상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단일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개별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불법·유해정보 유형 중 대부분은 형법에서 규율하고 있는데,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아동성적확대, 아동성착취물, 모욕, 명예훼손, 비방, 사이버스토킹, 해킹, 바이러스(위법행위목적의 소프트웨어 제작), 디지털성범죄(카메라 이용, 리벤지포르노 포함) 등이다. 청소년 유해물 표시위반은 청소년미디어 보호법에서, 디지털 성범죄(비동의촬영물 배포)는 예술저작권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비동의광고 노출은 불공정경쟁금지법에서, 개인정보침해는 연방데이터보호법에서, 혐오표현은 네트워크집행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 2. 정보통신망 상 불법·유해정보, 범죄 등 행위의 유형 및 법규제

### 가. 아동성적학대 유형 중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학대

독일에서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아동성적학대는 아동에게 성행위를 노출하거나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경우와 아동성착취물 소유여부로 처벌된다. 전자는 독일형법 제13장 ‘성적자기결정에 관한 위반’에 해당하며, 해당조항에는 피보호자나 아동성적학대, 미성년자 및 청소년에 관한 성적학대 등의 처벌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에 관한 항목 중 제176조의 ‘아동에 대한 성적학대’ 제4항에 따르면, ①아이 앞에서 성행위를 하는 경우, ②제176조 제1항<sup>48)</sup>의 범위내에 해당하지 않지만 성행위에 참여토록 어린이를 지정하는 경우, ③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아동이 가해자 또는 제3자 앞에서 성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가해자 또는 제3자와 성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와 StGB 제184b조 제1항의 3의 내용에 따라 아동성착취물인 것처럼 보이는 포르노를 제작하는 경우(3개월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184b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동성착취물 또는 아동성착취물인 것처럼 보이는 영상을 소유하려고 시도하거나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 ④아동에게 포르노이미지나 영상을 노출시키거나, 음란물 콘텐츠의 음향을 재생시키거나, 정보통신기술 또는 언어를 통해 아동이 포르노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의 배포와 취득, 소유는 StGB의 제184b조에 따라 14세 미만인 경우와 제184c조 14세 이상~18세 미만으로 구분되어 처벌된다. StGB의 제184b조 제1항에 근거 14세 미만 아동과 관련하여 ①아동 앞에서 성행위를 하거나, ②아동의 성별을 부자연

---

48) §176 (1) Wer sexuelle Handlungen an einer Person unter vierzehn Jahren (Kind) vornimmt oder an sich von dem Kind vornehmen läßt, wird mit Freiheitsstrafe von sechs Monaten bis zu zehn Jahren bestraft.(14세 미만의 아동과 성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명하는 경우 최소 6개월~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스럽게 강조하는 자세로 의상을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입지 않은 상태로 촬영된 착취물을 재생산하거나, ③아동의 성기나 엉덩이를 성적으로 자극하는 등의 아동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대중에게 공개하는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또한, 아동을 대상으로 실제 또는 아동성착취물인 것처럼 재현하는 포르노를 제작하는 경우,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조달하며, 배송하는 등으로 상업활동에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성착취물의 경우 모두 압수되는 것이 원칙이다. 한편 제184c조에 의거하여 14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에 관한 성착취물의 배포와 취득, 소유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는 것으로 아동상대의 범죄보다 가볍게 처벌되지만, 만약 성착취물을 재연하는 것처럼 촬영하는 경우엔 아동범죄와 동일하게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형이 적용된다. 그 외에도 대부분의 내용은 제184b조와 동일하지만 개인적인 목적으로 출연자의 동의하게 개인적인 용도로만 제작한 경우엔 처벌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제4항). 최근 독일에서는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물들을 제작하거나 취급하는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수준이 낮다고 판단하여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10월 현재 입법 과정 중에 있는 안에 따르면 현행 최소 3개월에서 최대 5년 형을, 최소 1년에서 최대 15년 형으로 늘렸다.

#### 나. 청소년 유해물 표시위반

청소년 유해물의 기준은 연방정부가 설립한 ‘연방청소년유해매체검사청(Bundesprüfstelle für jugendgefährdende Medien)’을 통해 정해진다.<sup>49)</sup> 평가기준은 ‘청소년보호법(Jugendschutzgesetz, JuSchG)’ 제18조 제1항에 따라 아동 또는 청소년의 발달을 저해하고, 자립적이고 사회적 책임이 있는 개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에 위험

49) 이 기관은 연방 가족·노인·여성 및 청소년부(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에서 임명한 독일 예술계, 문학계, 출판 및 도서계, 텔레미디어 제공업체, 청소년 복지협회, 공공청소년 기관, 전문교수진, 종교계 등 8개의 분야에서 37개의 기관(JuSchG 제20조의 제1항)에서 파견한 콘텐츠 평가자들로 구성된다.

을 빠트릴 수 있는 콘텐츠로서, ①살인이나 도살 그 자체에 대한 폭력행위 묘사, ②가정된 정의를 집행하는 자경단에 관한 내용도 이에 포함된다. 만약 청소년 유해물로 규정된 콘텐츠를 ①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제공하거나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②어린이나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서 전시, 게시, 시연하는 경우, ③기타 판매점, 우편주문 또는 상업대추르 독서클럽에서 대출하는 경우, ④상업적 임대 또는 유사한 상업적 사용허가를 통해 제공되는 경우, ⑤우편주문, ⑥어린이 또는 청소년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개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 또는 통신사나 텔레미디어를 통해 배포하는 경우, ⑦앞의 6가지 경우의 의미로 제작, 조달, 배송 또는 보관, 수입하는 행위 등에서 위반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제27조의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된다.

방송 또는 텔레미디어 업체의 경우 청소년미디어보호주간협약(Jugendmedienschutz Staatsvertrag: JMStV) 제12조에 따라 ‘청소년미디어보호위원회’(Kommission für Jugendmedienschutz)와 주정부들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jugendschutz.net’(제18조), 자율규제기관(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인증된 자율기관들의 감독과 조절에 따라 청소년 유해물 표시에 관한 처벌을 부과한다. JMStV에서 금지하는 항목으로는 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국제사회의 이익을 반하는 선전수단, ②위헌조직의 상징사용, ③일부 국가, 인종, 종교 또는 민족집단에 대한 증오심 조장, 폭력, 악의적 멸시 등으로 인간 존엄성을 공격하는 경우, ④국가사회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공공의 평화를 방해하는 행위, ⑤폭력 행위를 미화하거나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⑥전쟁을 찬양하는 행위, ⑦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노출된 사람에 대한 정당한 이해 없이 묘사하여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 ⑧자연스럽지 않게 어린이 또는 청소년의 성별을 지정하여 묘사하는 행위 또는 이를 묘사한 가상표현, ⑨ 아동과 청소년에 관한 성착취물 등이다(제4조 제1항). 이러한 위반행위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지는데, 만약 고의가 아닌 부주의에 따른 위반일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영업이익의 1일-180일에 해당하는 금액의 벌금이 부과된다(JMStV 제23조).

#### 다.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는 촬영물 비동의 배포, 카메라를 이용한 리벤지 포르노, 업스커팅 등의 세가지가 있으며, 이 중 독일 현행법으로 처벌되는 항목은 촬영물 비동의 배포와 리벤지포르노 두 개다. 독일 예술저작권법은 이미지는 묘사된 사람, 즉, 사진이나 영상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동의가 전제되었을 경우에만 배포, 공개표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22조). 만약 묘사된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후 10년 동안은 그의 친척(배우자, 자녀, 부모)이 동의를 한 경우에만 허가된다. 만약 촬영물에 대해서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배포했을 경우 피해배상청구와 이미지 및 영상 삭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 한편, 리벤지포르노는 독일 형법 제201a조에 의해 처벌된다. 해당조항 제1항에 따르면 ①외부로부터 보호되는 아파트 또는 방에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녹화하거나 전송하여 묘사된 사람의 개인적 삶의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② 다른 사람의 무력함을 보여주거나 허가 없이 제작하고 전송하여 묘사된 사람의 개인적 삶의 영역을 침해하는 경우, ③앞의 ①,②의 이미지를 제3자가 접근하도록 하는 경우, ④고의로 ①,②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즉, 리벤지포르노는 개인의 사생활을 촬영하여 허가없이 개인의 삶에 위해를 끼칠 목적으로 제작하여 전송하는 행위에 근거하여 처벌된다. 만약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고, 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자신 또는 제3자에게 유료로 판매하기 위해 제작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처벌된다. 처벌대상이 된 경우 가해자 또는 제3자의 영상매체 및 영상기록장치는 압수할 수 있으며,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대상 범죄에서는 민법에 따라 삭제조치가 함께 부과된다.

#### 라. 모욕·명예훼손·비방

독일에서는 타인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비방 등은 모두 형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된다. 모욕은 단순한 욕설에 해당되며, 벌금형이나 최대 1년의 징역형이 가능하다(형법 제185조). 만약 모욕과 동시에 침을 뱉는 등의 직접적인 신체의 행위가 가해

졌을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명예훼손은 일반적으로 사실을 증명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한 주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사실이 아닌 경우에 한해 단순한 명예훼손은 벌금형이나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형법 제186조). 하지만 온라인 또는 지역 내 커뮤니티 게시판, 전단지 등과 같이 행위자가 피해자에 관한 명예훼손을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벌금형 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마지막으로 비방은 허위 사실임을 다른 정보에 의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를 공개적으로 전파할 경우 최고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 마. 국가기밀누설

국가기밀누설은 독일 형법 제95조에 따라 공식기관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국가기밀을 허가받지 않은 사람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하거나 공개적으로 알리는 경우, 반역행위(제94조)에 해당하지 않을 때 6개월에서 5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국가기밀누설은 이러한 시도만으로도 처벌대상에 포함되며, 심각한 국가기밀누설은 최소 1년에서 최대 10년까지 징역에 처하게 된다(제94조 제2항의 2).

#### 바. 비동의 광고물 전송

독일은 광고물은 공정경쟁을 위한 장치로 해석되는 경향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불법광고는 불공정경쟁을 유발하는 행위로 분류된다. 부정경쟁방지법(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UWG)에서 불법광고로 규정하는 항목으로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Irreführende geschäftliche Handlungen/Irreführung durch Unterlassen), 비교광고(Vergleichende Werbung), 부당하게 귀찮음을 유발하는 광고(Unzumutbare Belästigungen)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 비동의 광고물은 부당하게 귀찮음을 유발하는 광고에 해당한다. 동법에 근거하여, ①원거리 판매에 적합한 상업적 커뮤니케이션 상황에서 소비자가 이를 원하지 않지만 지속적으로 언급하는 경우, ②동의 또는 추정되는 동의 없이 소비자에게 전화로 광고하는 경우, ③기타 전자기기(자동

호출기, 팩스, 전자메일)로 명시적 동의 없이 광고하는 경우에는 불법광고로 처벌된다. 만약 소비자가 불법광고로 인한 피해를 연방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최대 5만 유로의 벌금이 처해진다(제7조 제2항).

#### 사. 해킹

독일에서 해킹은 형법 제202c조에 근거하여 규율된다.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암호, 기타 보안코드를 훔치지 위한 준비, 이런 행위를 위해 컴퓨터프로그램을 제작, 조달, 판매 또는 타인에게 제공, 양도, 접근 가능하게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 아. 혐오발언

혐오발언은 네트워크 집행법(Netzwerkdurchsetzungsgesetz: NetzDG)에서 처벌된다. 네트워크 집행법은 2017년에 제정되었는데,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는 혐오발언과 가짜뉴스 및 기타 유해콘텐츠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모욕이나 명예훼손, 비방 및 범죄행위에 대한 공개선동과 증오선동, 폭력 및 위협이 포함된 콘텐츠를 사업자가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NetzDG의 제1조에 따라 독일 내 사용자가 2백만명 이상인 인터넷사업자는 불법콘텐츠에 관한 불만처리를 할 수 있도록 내부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민원의 내용에 따라 불법콘텐츠의 처리시간은 다르게 적용되지만, 최대 7일을 기준으로 하여 삭제하거나 차단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소셜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자율규제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데, 그 기관은 연방정부의 인증을 받아 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접수된 사안이 연간 100개가 초과하는 사업자는 6개월마다 플랫폼의 불법콘텐츠 불만처리 경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제2조 보고의무에 명시된 항목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불법콘텐츠 처리나 보고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최대 5백만 유로까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데, 이때 벌금의 수준은 연방법무부와 연방소비자보호부의 산정에 따르게 된다. 재량권행사는 연방내무부와 연방경제에너지부, 연방교통 및 디지털 인프라부와 합의를 한 후 법적으로 행사하게 된다.



<표 3-1> 독일의 불법·유해정보 규제 체계

불법정보유형 (법규정)	대상 사업자*	행위 상대방**	사전규제 기술적조치	제재절차	제재
이동성적학대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학대) ※형법(StGB) (제176조 제4항)	-	14세 미만 아동	-	-	징역 3개월~5년 (2020년 10월 기준 1~15년으로 강화를 위한 입법 중)
이동성착취물 ※형법(StGB) (제184b조)	-	14세 미만 아동	-	-	징역 3개월~5년, (조직범죄/범죄재현) 징역 6개월~10년, (소유자) 최대 3년 (2020년 10월 기준 1~15년으로 강화를 위한 입법 중)
모욕 ※형법(StGB) (제185조)	-	모든 국민	-	소송/재판	징역 최대 1년/벌금
명예훼손 ※형법(StGB) (제186조)	-	모든 국민	-	소송/재판	(사실이 아닌 정보에 대한 유포)징역 최대 1년/벌금, (공개적으로 게시)징역 최대 2년/벌금
비방 ※형법(StGB) (제187조)	-	모든 국민	-	소송/재판	징역 최대 2년/벌금, (공개적으로 게시) 징역 최대 5년/벌금
스토킹/사이 버 스톱킹 ※형법(StGB)	-	모든 국민	-	특별공익목 적인 경우 직권개입,	징역 3년 이하/벌금,

(제238조)				그 외는 소송/재판	
해킹 ※형법(StGB) (제202c조)	-	모든 국민	-	소송/재판	최대 징역 2년/벌금
바이러스 (위법행위목 적의 소프트웨어 제작) ※형법(StGB) (제263a조 제3항)	-	모든 국민	-	소송/재판	최대 징역 3년/벌금
청소년 유해물 표시위반- 저장매체 ※청소년보 호법(JuSchG)	(제15조) )서비스 제공자, 판매자, 게시자	18세 미만	(제17조)연 방청소년유해 매체검사청, (제20조)자 율규제기관	행정처벌	최대 징역 6개월/사업이나 영업이익의 180일에 해당하는 벌금
청소년 유해물 표시위반- 방송과 텔레미디어 ※청소년미 디어보호법 (JMStV)	(제2조 의 제1항) 방송, 텔레미 디어 사업자	18세 미만	(제4조제1항) 청소년미디어 보호위원회, (제18조) jugendschu tz.net, (제19조) 자율규제기 관	소송/재판, 행정처벌	(청소년유해 콘텐츠를 유포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벌금, 가해자의 과실일 경우 최대 징역 6개월/사업이나 영업이익의 180일에 해당하는 벌금, (행정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최대 50만 유로 벌금
국가기밀 누설 ※형법(StGB)		모든 국민	-	소송/재판	징역 6개월~최대 5년, (심각한 위법의

(제95조)					경우) 징역 1년~최대 10년.
디지털 성범죄 (비동의촬영 물 배포) ※예술저작 권법(KunstUr hG) (제22조)	배포자	모든 국민		형사고소	피해보상청구 (민법 제823조 제1항), 모욕/명예훼손 규정 적용 가능(형법 제185조, 제86조)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이용, 리벤지포르 노 포함) ※형법(StGB) (제201a조)	배포자	모든 국민			2년 이하징역/벌금
디지털 성범죄 (업스커팅) ※형법(StGB) (제184k) 입법예정		모든 국민			징역 2년/벌금
비동의 광고 노출 ※불공정경 쟁금지법 (UWG) (제7조)	사업자	모든 국민		피해보상	벌금
개인정보침해 ※연방데이 터보호법 (BDGR) (제83조, 제84조)	공공기 관/비공 공기관	모든 국민	유럽일반개 인정보보호 법, 독일연 방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보 처리자(콘트 롤러, 프로	소송/재판	손해보상/ 벌금 (연방데이터보호법 제 84조)

			세서)의 활동 감시		
협오발언 ※네트워크 집행법 (NetDG)	소셜네트워크 사업자	모든 국민	(제3조)불법 콘텐츠에 관한 불만 처리 (제3조 제2 항의 1) 불 만 사항에 대한 기록 과 검토 (제3조 제2 항의 2) 7일 이 내 삭제 또는 접근 제거 (제3조 제6항) 불만접수를 위한 사무 소 개설	소송/재판 (제4조 제5항)	최대 500만 유로 벌금 부과 (제4조)

\* 대상사업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공자중 일부

\*\* 상대방 : 모든 국민/ 아동 청소년에 한정

### 제3절 영국 이용자 보호 정책

#### 1. 개요

영국은 정보통신망 상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단일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개별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극단적음란물과 아동성착취물, 사생활촬영물 비동의 유포, 사이버협오는 형사사법에서, 음란물출판은 음란물출판법에서, 청소년 유해물 표시위반은 디지털 경제법에서, 사이버스토킹은 커뮤니케이션법에서, 불법개인정보취득과 이용은 데이터보호법에서, 불법촬영은 관음법에서 각각 규율하고 있다.

## 2. 정보통신망 상 불법·유해정보, 범죄 등 행위의 유형 및 법규제

영국은 방송법을 기본으로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여 인터넷 환경에 적용하는 추세이다. 인터넷 내용과 관련하여 입법자들, 학부모들의 가장 큰 관심사항은 어린이를 소재로 한 음란물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78년 어린이 보호법을 제정했다. 정부의 규제기구로는 방송통신 규제기구인 커뮤니케이션국이 있으며, 여기서 사용자 자율의 내용등급제 실시를 기본으로 하여 규제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영국정부와 경찰의 후원으로 인터넷서비스제공자협회, 런던 인터넷 상거래협회의 주관하에 소위 인터넷 감시재단이 설립되어 자율규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영국 역시 인터넷상의 아동포르노, 인종차별적인 정보를 중심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포르노는 단순 소지만 할 경우에도 성범죄법에 의해 처벌받는다. 인종차별 정보의 유통은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다.

### 가. 음란물

영국 음란물출판에 관해서는 ‘1954년의 음란물출판법’(Obscene Publications Act 1959), 제작과 소유, 배포는 ‘2008년 형법과 이민에 관한 규정(Criminal Justice and Immigration Act 2008)’의 제5장의 포르노그래피(제63조~제71조)와 부속서(Schedule) 제14에 따라 정의되고 처벌받는다. 음란물출판법은 사람들이 읽거나 보는 표현, 음향·소리기록(녹취) 또는 사진이나 동영상 등과 같은 기타기록을 지칭하는 ‘기사(Article)’ 중 ‘음란(obscenity)’한 내용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배포를 제한하는 규정이다(제1조 제1항, 제2항). 위반은 음란물을 배포, 유통, 판매, 제공 또는 대여하거나 위반에 해당하는 기사기록을 재생하거나 전자적인 형태인 경우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를 말한다. 음란물출판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나 타인의 이익을 위해 음란물을 발행한 경우에는 행위의 수준에 따라 100파운드 이하의 벌금형 또는 6개월 이하의 약식판결 또는 벌금형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또는 둘 다) 판결을 받게 된다. 하지만 영화의 표현자유와 관련하여 16mm이상의 동영상필름으로 제작된 경우나 영상출판물에 관한 규정을 준수한 경우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공소장을 통

한 조사를 거쳐서만 판결이 가능하다.

영국의 경우, 포르노 전체를 두고 불법·합법을 판단하는 것은 어렵고, 다만 특정한 음란물에 대한 불만사항이나 합법성을 판결하기 위해서 규제기관이나 사법기관에서 검토한다. 하지만 형법과 이민에 관한 규정 제63조는 극단적인 포르노(extreme pornography)에 해당하는 경우엔 소지에서부터 범법행위로 규정한다. 극단적인 포르노는 오로지 성적 또는 성적흥분을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콘텐츠 이미지 자체 또는 일련의 이미지에서 추론되는 맥락을 고려하여 판단된다. 성적인 장면이 일련의 이미지로 구성된 콘텐츠인 경우 맥락에 따라 작품으로 인정될 순 있지만, 만약 맥락이 제거되고 그 장면만 사용하는 경우엔 위반대상으로 판단될 수도 있다. 영연방에 속한 잉글랜드와 웨일즈, 북아일랜드 모두에서 극단적인 이미지에 해당하는 내용은 심하게 모욕적이거나 혐오감을 주거나 기타 외설적인 인물묘사가 포함되어 있는 사례를 처벌대상에 포함한다. 공통기준은 ①사람을 위협하는 행위, ②개인의 향문이나 가슴, 생식기에 심각한 부상을 입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행위, ③시간 행위, ④생사여부와 상관없는 수간 행위를 하거나 성적 행위의 대상이 동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과 행하는 성행위를 포함하는 포르노이다. 또한 동의 없는 성행위나 이처럼 보일 가능성이 존재하는 장면이 포함된 포르노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극단적포르노 소지에 적발되면 다른 행위의 유무와 관련 없이 처벌대상으로 포함되어 ①가벼운 구금이나 벌금형이 처해지는 약식유죄판결, ②기소에 관한 유죄판결로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 또는 둘 다로 처벌된다(제67조). 이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업체에도 적용되는데, 그 기준은 부속서 제14에 따라 영국 내에 설립된 사업자이거나 EEA구역으로 합의된 지역 내 사업자로 제한된다.

#### 나. 아동성학대착취물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하여 영국에선 아동성학대착취물(Indecent and Prohibited Images of Children, 외설적이고 금지된 아동이미지)과 아동과의 성적인 의사소통(Sexual communication with a child)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아동성학대착취물은 ‘1978년의 아동보호법(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의 제1조와 ‘1988년의 형법(Criminal Justice Act 1988)’을 통해서 법적 제재를 받는다. 이 두 개의 법에서 적용하는 공통기준은 어린이와 관련된 음란물과 어린이처럼 보이도록 하는 유사음란물에 대한 내용으로서, 판례에 따라 사진을 촬영한 촬영자의 동기는 고려하지 않고 아동의 사진이 성적으로 외설적이거나 음란하게 표현되었는가에 대한 기준이다. 여기서 아동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전문가의 도움으로 연령을 측정하거나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아동의 피해시기를 기준으로 적용된다(CPS, 2018).

한편, 아동보호법에서는 ①아동이나 아동으로 보도록 한 사람들을 촬영 또는 촬영토록 한 행위, ②이러한 음란 사진을 배포한 행위, ③자신 또는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해 소유한 행위, ④이와 같은 내용을 알리는 것으로 보이거나 이해되는 광고를 게시하는 경우 위반행위로 간주된다. 판례에 따라 촬영의 범주는 광의로 해석되어 이미지가 포함된 이메일에서 첨부파일을 열거나, 웹사이트에서 컴퓨터로 다운로드 하는 경우, 이미지가 저장되는 경우 및 자동팝업으로 관련 광고를 내세워 포르노 사이트로 유도하는 경우 등으로 해석된다. 배포는 행위의 결과와는 상관없이 이러한 불법착취물에 대한 주문을 행동으로 했을 때부터 그 위법행위 여부가 적용되며, 소유행위와 광고행위에 관하여서는 고의적 행위에 따른 결과임을 입증해야 한다. 아동보호법 위반으로 적발될 시 약식판결 대상은 6개월 이하 또는 1,000파운드 이하의 범칙금에 처해지며, 기소유죄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 부과된다.

형법 제160조는 ‘아동의 음란한 사진소지(Possession of indecent photograph of child)’와 관련한 법적 제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우선 아동의 음란한 사진(또는 아동으로 묘사한 사진, 의사사진)을 소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하지만, 기소된 사람이 사진을 소유한 합법적인 이유가 있었거나, 이를 보지 않았거나, 음란한 것인지 몰랐거나, 음란표현임을 의심할 이유가 없었거나 등의 증명이 가능하거나, 본인의 동의 의사 없이 전자통신기기에 전송되어 보관하게 된 경우에 대해 합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아동의 음란한 사진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또는 둘 다의 처벌이 가능하며, 약식유죄로 판결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급 이하의 벌금(5천 파운드)이 부과된다. 형법 제160조를 적용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유(Possession)’에 대한 개념범위이다. 소유에 대한 개념 범위는 법에서는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의 판례를 통해 범주가 정의되고 있다. 2018년 정리된 판례에 의하면 소유의 개념은 첫째, 이미지를 관리하거나 통제가 가능한 것, 둘째, 기기에 이미지나 영상을 보유하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 등의 두가지로 정리된다. 즉, 피의자가 이미지에 접근할 수 있거나 검색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이미지에 대한 내용과는 무관하게 영상을 갖고 있는가를 알고 있을 경우 광의의 소유개념을 적용하는 것이다(CPS, 2018). 한편, 아동성학대착취물과 관련하여서는 검시관 및 사법(Coroners and Justice Act 2009)의 부속서 제13에 따라 영국내뿐만 아니라 EEA협약지역까지 관련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아동성착취와 관련하여 새롭게 부각되는 개념으로는 라이브스트리밍 방송이다. 라이브스트리밍은 비디오를 시청한 이후 해당 자료가 비디오를 시청하는데 사용된 장치에 흔적이 남지 않고, 이를 본 사람들도 장치에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영국법의 판례에선 장치를 이용하여 불법이미지를 기기에 표시하는 것 자체를 ‘촬영’한 것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여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불법서비스로는 해외의 유료방송(Pay-per-View), 아동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의 유통 등이 존재하는데, 그 수준에 따라서 처벌행위를 결정하게 된다. 고려되는 조항은 중범죄법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범죄행위의 조장, 성 범죄법 제47조~제50조 항목에서의 아동성착취행위 처벌, 제51조의 ‘스트리밍 또는 전송’된 매체를 이용한 범죄행위 등이 있다. 처벌은 범죄수준에 따라 결정되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급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동종범죄전과자의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과의 성적인 의사소통은 2015년 제정되어 2017년 4월 3일에 발효된 중범죄법 제67조에 의거하여 처벌대상이 된다. 위법행위는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와 ①성적 만족을 얻기 위해 의도적으로 미성년자와 의사소통을 한 행위, ②의사소통의 내용



이 성적이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성적인 의사소통을 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 ③의사소통 대상이 16세 미만이고, 피의자 역시 성적의사소통의 대상이 16세 또는 그 이상이 아니라고 믿는 경우에 발생하는 성적대화의 경우 등이 해당된다. 여기서 성적행위에 관한 의사소통은 의사소통의 내용의 일부가 성행위와 관련되거나, 합리적인 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성적인 내용으로 간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과의 성적 의사소통은 약식기소의 경우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또는 둘 다), 기소에 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 다. 사생활촬영물 비동의유포

출연자의 고통유발목적으로 리벤지포르노로 불리는 사생활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엔 ‘2015년의 형법 및 법원법(the 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2015)’ 제33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을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의 고통을 유발할 목적으로 이를 공개하는 것은 금지하지만, 만약 이 이미지나 영상에 등장한 인물에게 이를 보여주는 것은 위법행위가 아니다. 피의자가 합리적으로 해당 촬영물을 공개한 목적을 설명하고, 공익을 위한 목적이거나 언론 자유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처벌은 기소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에 해당하는 벌금(또는 둘 다)형에 처해지고, 약식유죄판결은 12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또는 둘 다)의 형으로 정해진다. 형법 및 법원법 부속서 제14조에 따르면 사생활촬영물을 비동의 유포하는데 사용된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특별 의무조항을 별도로 적용되게 된다.

#### 라. 불법촬영(업스커팅)

영국은 2019년 ‘2003년의 성범죄법(The Sexual Offences Act 2003)’에 제67A조를 추가하여 불법촬영물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했다. 내용에 따르면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만족을 충족시키거나 또는 피해자를 굴욕적으로 만들거나 괴롭게 만들기 위해서 타인의 옷 아래에서 장비를 이용해 촬영한 행위, 타인의 옷 아래에서 다른 사람이 장비를 작동하여 제3자가 피해자의 성기 또는 엉덩이(노출 또는 속옷을 입고

있는 경우)나 속옷이 보이지 않는 피해자의 성기 또는 엉덩이를 덮는 속옷을 촬영하는 행위를 위법으로 규정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전제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촬영자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단된다. 불법촬영은 사진촬영뿐만 아니라 동영상촬영까지 적용되며, 약식기소의 경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이나 벌금형(또는 둘 다), 기소에 의한 유죄 판결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된다.

#### 마. 청소년 유해물 표시위반

영국에선 온라인 포르노서비스들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기 위해 ‘디지털경제법(Digital Economy Act 2017)’ 제3부를 개정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업자들의 역할과 연령분류 시스템을 강화했다. 골자는 포르노물로 분류되는 콘텐츠들에 대해 규제기관의 검증과 연령검증 시스템으로 미성년자의 접근을 제한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위반에 대해서는 규제기관이 25만 파운드까지 사업자에게 벌금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허용되는 포르노의 범주는 넓지만 극단적인 포르노물의 경우 불법 콘텐츠로 분류된다.

#### 바. 사이버스토킹과 허위사실유포

2003년의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s Act 2003)은 공공전자통신망의 부적절한 사용에 관한 규제로서 허위사실유포, 모욕이나 외설행위, 불안유발 등의 행위에 관한 규제내용을 담고 있다. 사이버스토킹행위는 공공전자통신네트워크를 통해 모욕적이거나, 외설적이거나, 위협적인 성격의 메시지 또는 기타방식을 전송하거나 이러한 메시지 또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긴 것들을 전송되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허위사실유포 또는 모욕은 공공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밝혀진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 전송되도록 하는 행위 또는 공공전자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행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사는 위법행위를 저지른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검사가 소송에 필요한 중대한 증거가 발견된 후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된다. 사이버스토킹이나 허위사실유포,

모욕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약식기소일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급 이하의 벌금(5,000파운드)이 부과된다.

<표 3-2> 영국의 불법·유해정보 규제 체계

불법정보유형	대상사업자*	행위상대방**	사전규제기술적조치	제재절차(통신심의절차)	제재(과징금/벌칙)
극단적 음란물 ※형사사법과 이민법(the 2008 Act) (제63조~제67조)	소유자 (제63조)	모든 국민	-	-	(위반수준에 따라 결정, 제67조) 2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음란물 출판 ※ 음란물출판법 Obscene Publications Act 1959)	발행인	모든 국민	-	영장집행/소송	(형사사법과 이민법 제71조) 최대 5년
아동성착취물 ※ 검시관 및 사법법(Coroners and Justice Act 2009) (부칙 제13) ※ 형사사법법(Criminal Justice Act 1988) (제160조)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 (영국 내, EEA 내)	모든 국민	-	기소/소송	단순서비스제공/인지하지 못한 활동에 따른 통신서비스사업자의 책임제한(부칙 제13조 제3항~제5항) (제160조)
	제작자/소유자	모든 국민 (온라인 상 접근자)	아동학대이미지(Child Abuse Image Database)데이터베이스	약식판결, 소송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급 이하의 벌금 (동종범죄전과자의

			운영 비영리 기관 영국영상분 류위원회 (British Board of Film Classification) 에서의 연령분류 절차, 연령검증시 스템(The age-verific ation regulator) 을 통한 18세 이하 연령확인 및 인증서발행		경우 기증처벌)
청소년 유해물 표시위반 ※ 디지털경제법 (Digital Economy Act 2017) (제3부)	제작자, 유통업자	모든 국민		민사소 송/행정 위반	-
사생활촬 영물 비동의 유포 ※ 형사사법 및 법원법 2015(the Criminal Justice and Courts Act 2015) (제33조)	유포자	모든 국민	-	기소/약 식판결	(제33조 제9항의 (a)) 기소유죄판결 2년 이하의 징역/벌금(또는 둘 다) (제33조 제9항의 (b)) 약식유죄판결 12개월 이하의 징역/벌금(또는 둘 다)

사이버스 토킹 ※ 커뮤니케이션 법 2003(Comm unications Act 2003) (제127조)	가해자	모든 국민	-	형사/민 사재판	(제127조 제3항) 약식유죄판결 6개월 이하 징역/벌금(또는 둘 다)
사이버협 오 ※ 형사사법법(C riminal Justice Act 2003) (제145조, 146조)	가해자	모든 국민	-	재판	피해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법도 다름. <u>일반범죄에</u> <u>비해 형량이</u> <u>높게</u> <u>책정하기로</u> <u>결정</u> (인종/종교적 스토킹) (범죄/장애법 부속서 제9)징역 2년 6개월 징역형, (인종중오선동) (공공질서법 제17~29조)징역 7년, (종교적중오) (공공질서법 제29B~제29) 징역 7년.
불법개인	정보통신	모든	정보컨트롤러,	불만접	벌금(GDPR과

정보취득 과 이용 ※ 데이터보호법 (제170조)	사업자	국민	프로세서의 역할감시. 정보위원회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의 조사	수 후 정보위 원회의 내부/피 해자 조사. (DPA 제115조 제116조)	동일한 수준 1,700만 파운드 또는 전세계매출 4%)
총포 등 불법제조 ※ 무기법(Offen sive Weapons Bill)	-	모든 국민	-	-	* 공격용 무기의 불법 제조 및 소지에 관한 내용만 포함. 불법행위는 형사범죄로 처벌
국가기밀 누설 ※ 국가비밀법 1989 (제5조, 제6조)	제공자	모든 국민	-	기소(제 9조)/ 체포, 수색, 재판(제 11조)	(기소 유죄판결) 2년 이하의 징역/벌금(또는 둘 다) (약식유죄판결) 6개월 이하의 징역/벌금(또는 벌금) (왕실/공무원 관련 문서) 3개월 이하의 징역/벌금(또는 둘 다)
불법촬영 ※ 관음법(Voyeu	행위자	모든 국민	-	-	(성범죄법 2003년) (Sexual

rism (Offences) Act 2019)					Offences Act 2003) (약식유죄판결) 12개월 이하 (기소유죄판결) 2년 이하
---------------------------------	--	--	--	--	---

\* 대상사업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공자중 일부  
 \*\* 상대방 : 모든 국민/ 아동 청소년에 한정

## 제4절 미국 이용자 보호 정책

### 1. 개요

미국은 미국법 체계에 따라 연방법, 주법에서 관련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우선 음란물, 미성년자를 묘사한 음란물, 미성년자 음란물 보호, 아동성착취물 전송, 해외 제작 아동성착취물 유통, 사이버스토킹, 상업용메시지의 표시기준과 동의, 불법도박은 연방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연방법과 주법이 함께 규율하고 있는 행위는 사생활 영상 비동의 유포와 해킹 행위이다. 리벤지포르노의 경우 연방법이 부재하여 주법(캘리포니아 주,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명예훼손의 경우도 연방법이 부재하여 주법(버지니아주)으로 규율하고 있다.

### 2. 정보통신망 상 불법·유해정보, 범죄 등 행위의 유형 및 법규제

#### 가. 사생활동영상 비동의 유포

미국연방정부는 2004년 12월, 동의없이 개인의 사적영역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내용을 담은 ‘비디오관음방지법(Video Voyeurism Prevention Act of 2004)’을 통과시켰다. 통과된 내용은 연방법전(United States Code) 제88장 ‘프라이버시’(Privacy)

의 제1801조 ‘비디오관음’(Video voyeurism)에 수록되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관찰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동의없이 개인의 사적인 부분을 촬영할 의도가 있거나, 개인이 사생활 보호를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상황 내에서 의도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10만달러의 벌금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징역과 벌금형이 모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서 이미지와 관련하여 ‘촬영’(Capture)이라는 행위가 의미하는 바는 비디오테이프, 사진, 영상 등 어떤 방식이든지 ‘녹화’(record) 또는 ‘방송’(broadcast)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방송’의 의미는 ‘개인(또는 사람)’이 영상 이미지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지칭하며, ‘개인의 사적인 부분(a private area of the individual)’은 개인의 알몸이나 성기를 가린 속옷부위, 음모, 엉덩이 또는 여성의 가슴(가슴의 중간 아랫부분)을 가리킨다. ‘사생활 보호를 합리적으로 기대하는 상황(under circumstances in which that individual has a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은 합리적인 사람이 개인의 사적인 부분에 대한 이미지가 타인에게 포착되는 것을 염려하지 않고 사생활에서 옷을 벗을 수 있다고 믿는 상황이나 개인의 사적인 부분이 공공장소나 사적인 장소에 있는 것과 관계없이 일반인에게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 믿을 수 있는 상황으로써 개인사유지나 숙박시설에서 대역 받은 공간, 공공샤워시설, 탈의실 등 지칭한다.

미국 연방정부의 헌법이 광의의 의미에서 비디오관음을 정의한다면, 다른 주 정부들의 법은 조금 더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플로리다 주의 법령(Florida Statutes)은 810.145 ‘비디오관음(Video voyeurism)’에서 범법행위의 수준을 ①‘비디오관음(Video Voyeurism)’, ②‘비디오관음 전파(Video Voyeurism Dissemination)’, ③‘상업목적의 비디오관음 전파(Commercial Video Voyeurism Dissemination)’ 등의 세 가지로 분류한다. 비디오 관음은 자신의 희락, 오락, 성적 각성 또는 성적만족, 이익 또는 타인을 비하하거나 학대를 목적으로 영상장치를 통해 그 사람(피해자)의 인지도 동의없이 사생활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장소에서 옷을 입거나, 벗어 개인적으로 신체를 노출하는 것을 방송하거나 녹화하는 행위로 정의된다(810.145의 (2)). 비디오관음 전파는 비디오 관음과는 다르게 비디오관



음 행위로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그런 행위를 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영상을 희락, 오락, 성적 각성 또는 성적만족, 이익 또는 타인을 비하하거나 학대를 목적으로 유포, 배포, 양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비디오관음은 타인이나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 목적이 아니라, 순전히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범법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고, 비디오관음전파는 제작된 이미지나 영상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위에 대한 규제이다(810.145의 (3)). 한편, 상업적 목적의 비디오관음 전파는 비디오관음 행위로 이미지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그런 행위를 했다고 믿을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해당 이미지를 판매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제작된 이미지를 생성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배포, 전달, 전송하는 행위이다. 플로리다 주에서는 비디오관음의 혐의를 하나가 아닌 여러 가지로 구분함으로써 개인의 위법수준에 따라 처벌을 다양하게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플로리다 주법에 따라 비디오관음은 1급 경범죄, 3급 중범죄, 2급 중범죄 등으로 구분<sup>50)</sup>이 가능하다. 범죄기준은 연령과 동종전과의 유무에 따라 결정되는데 19세 미만의 경우 비디오관음에 따른 처벌은 1급 경범죄로 구분되나, 19세 이상은 3급 중범죄에 해당된다. 만약 이미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2급 중범죄로 기소된다. 또한 18세 이상 가해자 중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복지를 책임지는 사람이나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령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와 관계없이 2급 중범죄로 기소되며, 24세 이상의 성인이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게 비디오관음행위를 한 경우에도 2급 중범죄로서 처벌된다.

#### 나. 리벤지포르노

디지털성범죄의 유형 중 리벤지포르노 처벌은 미국 연방차원에서 채택된 바는 없

---

50) 1급 경범죄는 최대 1년의 징역, 최대 1천 달러의 벌금형, 3급 중범죄는 최대 5년의 징역, 5년의 보호관찰, 최대 5천 달러의 벌금형, 2급 중범죄는 최대 15년의 징역, 15년의 보호관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다.

다. 다만, 2013년 이후 지금까지 와이오밍, 미시시피, 사우스캐롤라이나, 매사추세츠 등 4개 주를 제외하고 46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규제하고 있다.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처벌수준은 주마다 다르게 적용되는데 17개 주는 경범죄로서 최대 1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11개 주는 중범죄로 처벌하여 1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는 등 주마다 차이가 있다. 경범죄로서 처벌하는 대표적인 지역은 캘리포니아주를 꼽을 수 있다. 2013년 리벤지포르노에 관한 처벌내용을 형법 제647조 제(j)항, 제(4)절에 포함시킨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주중에서 처음으로 이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캘리포니아의 리벤지포르노 규제는 2013년 제정 당시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이미지나 영상일 경우 불법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14년 개정을 통해 어떤 행위자가 촬영을 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리벤지포르노는 일종의 ‘문란행위(Disorderly conduct)’로 규정하여, 법적 처벌의 근거를 마련했는데, 자신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비공개로 유지된다는데 동의했거나 그러한 상황이라고 이해한 상황에서 촬영된 은밀한 신체부위 또는 사람을 식별가능한 일부의 신체이미지나 성행위, 남색, 구강성교, 성적행위 또는 자위행위, (영상이나 이미지로) 묘사된 사람이 (성)행위에 참여하는 이미지를 고의로 배포하는 경우 묘사된 사람에게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초래할 것으로 인지해야 하거나 알아야만 하기 때문으로 기술하고 있다. 불법행위를 보도하거나 법적 절차를 위한 소환장, 합법적인 공개절차를 밟은 경우, 더 큰 범죄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의 은밀한 부위(성기, 여성 가슴부분 등)를 촬영한 영상을 개인적으로 배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배포를 위해 준비하거나, 구체적 또는 의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해당 이미지를 배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에는 리벤지포르노를 배포한 것으로서 처벌된다. 만약 초범일 경우에는 경범죄로 다루어져 6개월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 달러 이하의 벌금(또는 징역형과 벌금 같이 가능), 집행유예가 부과된다.

리벤지포르노를 중범죄로 규정하는 주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이다. 2015년 주 형법(Criminal Law) 14장 제190조 제5항의 A를 통해 (a)실제 또는 시뮬레이션, 성행위의 방식이나 유형에 구애받지 않고 자위행위나 성기노출 등에 관한 (b)사진·영화·비디

오테이프·녹음·실시간전송·디지털 또는 컴퓨터저장이나 전자·기계식 수단을 이용한 복제를 이용하여 (c)등장인물이나 타인에게 강압·괴롭힘·협박·비하·모욕 또는 재정적 손실을 초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d)묘사된 인물이 식별가능하며 (e)묘사된 인물의 은밀한 신체부위가 노출되거나 성행위를 하고 있고 (f)묘사된 인물의 동의 없이 (b)에 해당하는 이미지를 배포하며 (g)묘사된 인물이 (b)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비공개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거나 알고 있었을 경우 이를 양도, 게시하거나 배포, 복제하는 것을 리벤지포르노의 방식으로 정의한다. 리벤지포르노의 범법행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피해사례가 위의 (c)~(g)까지의 항목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한편, 공공 또는 상업적 환경에서 이루어진 자발적인 노출이 포함된 이미지나 사법집행 또는 치료나 과학적 목적, 교육적 활동 등에 해당하는 경우, 성인대상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 제공업체 등은 법 위반에 포함되지 않는다.

처벌은 18세 이상의 경우 H급 중범죄로 4~25개월 징역형 처해지고, 18세 미만은 1급 경범죄로 최대 120일의 징역형이나 이에 상응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만약 18세 미만의 범죄자가 동종전과를 갖고 있을 경우 위반은 H급 중범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법에선 리벤지포르노에 대한 형법상 처벌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자구제 장치도 마련하고 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공개된 이미지의 파기를 가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실제손해금액(위반이 발생한 날부터 하루에 1천 달러~1만 달러 중 높은 손해로 추정)의 배상과 변호사비용 및 기타 소송비용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다.

<표 3-3> 미국 리벤지포르노 처벌법 운영 주와 법령

주	법령	주	법령
앨라배마	SB301. Code of Alabama 1975 Secs 15-20A-4 to 15-20A-43 amended.	알래스카	Alaska Stat. § 11.61.120.
애리조나	Arizona Revised Statutes, 13-1425	알칸사	Arkansas Code 5-26-314 [

나		스	
캘리포니아	California Penal Code 647(j)(4)	콜로라도	Colorado Revised Statutes 18-7-107 and 18-7-108.
코네티컷	Conn. Gen. Stat. § 53a-189c.	델라웨어	§ 1335, Title 11, Delaware Code.
콜롬비아 자치구	D.C. Law 20-275.	플로리다	Florida Statute 784.049.
조지아	Georgia Code Title 16 Chapter 11 Article 3 Part 1 16-11-90.	괌	Public Law No. 33-171.
하와이	Hawaii Revised Statutes, § 711-1110.9.	아이다호	§ 18-6609, Idaho Code.
일리노이	§ 11-23.5, Illinois Criminal Code.	인디애나	Senate Bill 192 and Senate Bill 243.
아이오와	Section 708.7, Code 2017.	캔자스	Kan. Stat. § 21-6101(a)(8).
켄터키	KRS 531.120	루이지애나	R.S. 14:283.2.
메인	Sec. 1. 17-A MRSA 511-A.	메릴랜드	809, Maryland Code.
미시건	Sec. 145e. Sec. 145f	미네소타	Minn. Stat. § 617.261.
미주리	Mo. Rev. Stat. § 573.110 & 573.112	몬타나	House Bill 192 related to § 45-8-213
네브래스카	LB 630	네바다	NRS, Chapter 200, §2-6.
뉴햄프셔	N.H. Rev. Stat. § 644:9-a.	뉴저지	§ 2C:14-9, New Jersey Code.
뉴멕시코	New Mexico Criminal Code.	뉴욕	NY State Senate Bill S1719C
노스캐롤라이나	General Statutes Section 14-190.5A.	노스다코타	North Dakota Century Code.
오하이오	HB 497	오클라호마	Section 1040.13b of Title 21.
오리건	ORS 161.005.	펜실베이니아	Title 18 Pennsylvania Consolidated Statutes § 3131.
로드	Chapter 11-64-3 of the General	사우스	Section 4 of Chapter 22-21.

아일랜드	Laws	다코타	
테네시	Tenn. Pub. Act ch. 872.	텍사스	Texas Penal Code 21.16
유타	§ 76-5b-203, Utah Code.	버몬트	Sec. 2. 13 V.S.A. § 2606.
버지니아	§ 18.2-386.2, Code of Virginia.	워싱턴	Title 9A RCW.
웨스트 버지니아	§61-8-28a, Code of West Virginia.	위스콘신	§ 942.09, Code of Wisconsin.

출처: Cyber civil Rights Initiative 홈페이지.<sup>51)</sup>

#### 다. 스토킹/사이버스토킹

사이버스토킹은 미국 연방법전 제2261A조의 ‘스토킹(Stalking)’ 조항에 따라 스토킹이 발생하는 형태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처벌대상으로 분류된다. 연방법전에 따르면 스토킹은 미국 관할지역을 이동하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협박하려는 의도로 감시하고, 그 사람의 직계가족이나 배우자, 파트너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신체적인 상해를 가하는 것 혹은 그에 상응하는 두려움에 처하게 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와 이에 상응하는 의도를 가지고 감시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여기에 포함되는 활동으로는 우편이나 대화형컴퓨터 서비스, 주나 해외의 상거래 시설을 이용한 것으로서 상대방에게 상당한 정서적·신체적 피해를 끼쳤을 때 범죄행위로 정의된다.

스토킹과 사이버스토킹에 관한 처벌은 피해자의 피해수준에 따라 적용된다. 만약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종신형 또는 무기징역이며, 영구적으로 외형이나 생명을 위협하는 신체적 상해가 발생했을 때는 20년 이하의 징역형이 선고된다. 피해자에게 심각한 신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위험한 무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 그 외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형(또는 징역형과 벌금형 같이 가능)이 부과된다. 연방법전에 따른 스토킹범죄의 처벌은 실제스토킹이나 사이버상에서

51) <https://www.cybercivilrights.org/revenge-porn-laws/>

발생한 스토킹 모두를 처벌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하나의 주를 넘어서는 피해자나 그의 지인들을 위협하여 상해를 입혔을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는 연방법 제223조 제1항에서 보완이 가능하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신원을 밝히지 않고 학대·위협 또는 괴롭히려는 의도로 전화를 걸거나 통신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희롱을 목적으로 반복 또는 지속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하는 경우, 특정인을 괴롭히기 위해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통신장치를 통해 반복적으로 접근하는 행위 등을 처벌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처벌수준은 경범죄로 분류되어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받는다.

#### 라. 온라인 명예훼손

미국 연방법치원에서 명예훼손과 관련한 처벌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나 23개 주는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규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아이오와 주에서는 성문법이 아닌 판례법으로 명예훼손을 형사범죄의 일환으로서 다루고 있다. 명예훼손은 특히 온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사례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므로, 일반명예훼손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보인다. 미네소타 주법 609.765에 따르면 명예훼손의 정의는 개인이나 집단, 계급 또는 단체가 사회의 증오나 경멸, 조롱, 비난, 불명예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침해에 노출되는 것으로서, 명예훼손을 가한 사람은 1년 이상 또는 3천 달러 이하의 벌금(또는 징역형과 벌금형 같이 가능)형에 처해진다. 버지니아 주에서는 버지니아법전 18.2-417을 근거로 비방이나 비방목적으로 허위를 말하거나 쓰고, 게시하는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3급 경범죄(최대 250달러)의 처벌이 가능하다. 미네소타 주법과 버지니아 주법의 차이점은 미네소타 주는 명예훼손을 자연인이 아닌 단체도 포함한다는 점이고, 버지니아 주는 글을 쓰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는 점이다. 즉, 미네소타 주법이 명예훼손 노출여부를 근거로 피해를 추정한다면, 버지니아 주법의 경우 행위의 기록을 근거로 유무죄를 판단한다. 한편,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일반법령 14-47을 통해 비방내용을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 발행

자, 관리자 등에게 전달하고 출판이 되는 경우 2급 경범죄(최대 60일의 징역형, 1천 유로의 벌금형)로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마. 비동의 광고노출(스팸)

미국 연방에서 2004년부터 시행된 요청하지 않은 ‘포르노그래피 및 마케팅 공격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the Controlling the Assault of Non-Solicited Pornography and Marketing Act of 2003: 이하 CAN-SPAM Act)’은 수신자가 원하지 않는 상업성 전자 메일을 보내는 업체와 사람들에 대한 의무가 포함된 법이다. 기본적으로 허위 또는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는 메일 제목 사용을 금지하고, 전자메일을 광고로 식별하도록 하여 수신자에게 이를 거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가 성적인 광고내용이 포함된 전자메일의 규제하기 위한 내용도 해당 법에 포함되어 있다. 연방법 제103장의 제7701조~제7713조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7702조 제2항에 정의된 내용에 따라 CAN-SPAM Act의 적용대상은 상업적인 제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 또는 홍보를 주목적으로 발송되는 전자메일로서, ‘상업용 메시지(commercial electronic mail message)’를 표시할 때 거래 또는 수신자와 발신자와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상업용 전자메일은 제7704조의 내용에 따라 허위·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나 허위로 표시된 전자메일주소 사용, 메시지의 출처를 위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소나 발신정보를 가리는 방식 등을 사용하지 못하며 수신자를 기만하는 제목을 사용한 메일전송도 금지된다. 또한 회신메일주소를 포함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메일 발송 후 30일 이내 계정이 삭제되는 전자메일주소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상업용 전자메일의 수신자가 특정유형의 전자메일을 선택할 수 있는 목록이나 메뉴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에 전자메일 수신자가 상업용 전자메일에 포함된 기능을 사용하여 전자메일을 수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10일 이내에 요청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CAN-SPAM Act에서 상업용 전자메일에 광고 또는 추천과 같은 메시지가 눈에 띄게

식별되지 않거나 수신거부 기능이 제공되지 않고, 발송인의 실제 전자메일주소가 허위일 경우엔 상업용 전자메일을 발송한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된다. 또한, 상업용 전자메일을 발송하기 위해 수신자의 전자메일 주소를 타사의 서비스나 자동수집방식 또는 자동생성방식을 이용하여 발송하는 방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연방거래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CAN-SPAM Act의 위반은 대량 전자메일뿐만 아니라 B2B와 같은 특정고객을 대상으로 발송되는 전자메일도 포함된다. 즉, 주요 목적에 따라 메일의 내용을 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진다는 것이다. 위반에 따른 처벌은 2020년 1월 기준 불법전자메일 1건 당 최대 43,280달러로 고지되고 있다.

<표 3-4> 미국의 불법·유해정보 규제 체계

불법정보유형	대상사업자*	행위상대방**	사전규제기술적조치	제재절차(통신심의절차)	제재(과징금/벌칙)
음란물 ※ 연방법전(US Code) (제1465조)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 사업자	모든 국민	-	-	5년 이하의 징역/벌금
미성년자를 묘사한 음란물 ※ 연방법전(US Code) (제1466A조)	제작자, 배포자, 수신자(a)	-	-	-	최소 5년~최대 20년의 징역/벌금
미성년자 음란물 보호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미성년자	오해소지가 있는 도메인 사용금지	-	(오해의 소지가 있는 도메인 사용) 2년 이하 징역/벌금,



연방법전(US Code) (제2252B조 제2252C조 제223(d)조 제1호의 (b), 제d항, 제231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도메인으로 미성년자 유해물에 접속하도록 하는 경우) 10년 이상 징역/벌금
			의도적인 소스코드 사용금지	-	(의도적으로 단어나 디지털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 10년 이하/벌금 (기만적 행위를 통한 미성년자 유도행위) 20년 이상 징역형
	18세 미만	-	-	-	2년 이하의 징역/벌금
	17세 미만	-	재판/민사 소송	-	(성적표현을 포함한 상업적 목적의 표현) 6개월 이하의 징역/ 5만 유로 이하의 벌금, (고의적 위반일 경우) 위반 사례 별 5만 유로 이하의 벌금 추가. (민사처벌) 위반에 대한 5만 유로 이하의 벌금

아동성착취물 전송 ※ 연방법전(US Code) (제223(d)조 제a항, 제2252조)	배포자	모든 국민	-	-	2년 이하의 징역/벌금
	배포자	모든 국민	-	재판	(아동성착취물 제작, 수령, 판매 등) 15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 (아동성착취물 관련 행위 공모) 20년 이하 징역형/ 벌금, (성적학대가 포함된 아동성착취물 제작, 소지, 배포) 10년 이상 징역/ 벌금
해외제작 아동성착취물 유통 ※ 연방법전(US Code) (제2251)	유통업자	모든 국민	-	재판	최소 15년~최대 30년 징역형
사생활동영상 비동의 유포 ※ 연방법전(US Code) (제1801조)	유포자	모든 국민	-	재판	1년 이하의 징역/10만 달러 이하의 벌금
주범-사생활동영상	유포자	모든 국민	-	-	1급 경범죄(최대 1년의 징역, 최대 1천 달러의

비동의 유포 ※ 플로리다 주 법령(Florida Statutes) (제810.145조)						벌금형), 3급 중범죄(최대 5년의 징역, 5년의 보호 관찰, 최대 5천 달러의 벌금형), 2급 중범죄(최대 15년의 징역, 15년의 보호관찰, 최대 1만 달러의 벌금형)
리 벤 지 포 르 노 (연 방 법 부 재, 주 법 으 로 처 벌)	※ 캘리포 니아 주 형법(Ca lifornia Penal Code) (제647 조)	유포자	모든 국민	-	-	(초범) 6개월 이하의 징역형/1천 달러 미만의 벌금, (동종전과자) 1년 미만의 징역/2천 달러 미만의 벌금
	※노스 캐롤라 이나 주 형법(Cri minal Law 제190.5 A조)	유포자	모든 국민	-	형법/민사 소송	(18세 이상)H급 중범죄 4~25개월 징역형, (18세 미만) 1급 최대 120일의 징역형, (민사소송) 실제손해금산정( 하루 기준 1천 달러~1만달러)
명예훼손 (연방법 부재, 주법으로		-	모든 국민	-	경범죄처 벌	(출판 시)최대 250달러 벌금

처벌) ※ 버지니아법전 (제18.2-417)					
사이버스 토킹 ※ 연방법전(US Code) (제223조 제1항)	-	모든 국민	-	경범죄처 벌	2년 이하의 징역형/벌금
상업용메 시지의 표시기준 과 동의 ※ 연방법전 중(CAN-SPA M Act) (제7701조-제 7703조)	상업적 인 제품 또는 서비스 에 관한 홍보목 적의 메일 발신자	모든 국민	연방거래 위원회의 지침 준수	-	불법전자메일 1건 당 최대 43,280달러(연 간 인플레이션 적용으로 매년 변화됨)
해킹 ※ 컴퓨터 사기 및 남용법(Provisi ons of the Computer Fraud & Abuse Act) (연방법전 제1030조)	-	국가안보 ((a)의 (1))	-	-	초범 10년 역/재범 20년 역
		개인컴퓨터 침입((a) 의 (2))	-	-	초범 1~5년 역/재범 10년 역
		정부컴퓨터 침입((a) 의 (3))	-	-	초범 1년 역/재범 10년 역
		사기/이 의 목적의 컴퓨터침	-	-	초범 5년 역/재범 10년 역

	입((a)의 (4))			
	전송방해 /훼손((a) 의 (5)의 (A))	-	-	초범 1년 역/재범 20년 역
	의도적인 피해유발 ((a)의 (5)의 (B))	-	-	1~5년 역/재범 20년 역
	고의적 접근에 따른 부주의한 손상유발 ((a)의 (5)의 (C))	-	-	1년 이하 징역/재범 10년 이하 징역
	비밀번호 해킹 ((a)의 (6))	-	-	1년 이하 징역/재범 10년 이하 징역
	컴퓨터 관련 갈취행위 ((a)의 (7))	-	-	5년 이하 징역/재범 10년 이하 징역
	위의 범죄를 저지르려 고 하는 시도와	-	-	10년 역

		음모((b))			
불법도박 (6호) ※ 연방법전(U.S. Code) (제5361조-53 67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모든 국민	-	민사구제, 형사처벌	벌금(계좌동결, 신용계좌동결), 5년 이하의 징역, 사행업장 영구출입금지 가능

\* 대상사업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공자중 일부

\*\* 상대방 : 모든 국민/ 아동 청소년에 한정

## 제5절 일본 이용자 보호 정책

### 1. 개요

일본은 정보통신망 상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단일법으로 규제하지 않고, 개별법에서 규제하고 있다. 명예훼손, 모욕, 협박, 신용훼손·업무방해는 형법에서, 아동포르노 소지, 제공, 제조, 운반, 수출입, 지열은 아동포르노금지법에서, 아동성매매유인정보는 만남주선사이트제한법에서, 스톡킹은 스톡키규제법 등에서 각각 규율하고 있다.

### 2. 정보통신망 상 불법·유해정보, 범죄 등 행위의 유형 및 법규제

일본은 2005년부터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다. 당시 고교생이 웹사이트에서 얻은 폭탄을 제조하거나 온라인에서 만나 흉악범죄를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07년에는 법을 통한 규제가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불법정보는 크게 특정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정보로 나뉘볼 수 있는데, 권리침해정보에는 명예훼손정보, 프라이버시정보,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정보 등이

있다. 사회적 법익침해에는 아동포르노 공연진열죄(公然陳列罪, 아동매춘 아동포르노행위 처벌 및 아동보호법 제7조제4항), 음란물 공연진열죄, 마약특례법 위반, 각성제단속법(제20조의2, 각성제 광고금지) 위반 등의 약물관련법과 관련된 정보, 매춘방지법 위반 광고,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규제법 위반(인터넷 이성소개사업의 아동유인행위규제법, 제6조, 이성교제 등의 유인행위) 등이 있다. 또한, 청소년인터넷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한 ‘인터넷을 이용해 공중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범죄 또는 형법법령에 저촉되는 행위가 되는 정보’도 사회적 법익침해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가. 명예훼손·프라이버시 침해 정보

일본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은 명예훼손을 금지하고 있다(제230조<sup>52)</sup>). 민사상으로도 명예훼손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제709조<sup>53)</sup>). 그러나 명예훼손을 통한 권리침해는 명백성을 증명해야 한다. 즉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는 객관적 사실 이외에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실일 것, 목적이 전적으로 공익을 이루기 위한 것일 것, 적시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 사실일 것 또는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할 것, 의견 또는 논평으로 인한 명예훼손의 경우 의견이나 논평의 기초가 된 사실의 중요한 부분이 사실 혹은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존재할 것 등이 요구된다. 프라이버시침해를 인정한 판례는 사생활과 관련해 사실 혹은 이와 같이 받아들일 우려가 있는 정보일 것,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당사자 개인의 입장에 선 경우에 타인에게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는 정보일 것,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정보일 것

---

52) 형법 제230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그 사실의 유무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을 통한 경우가 아니면 처벌하지 않는다.

53) 민법 제709조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보호된 이익을 침해한 자는 이를 통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등으로 정리한다.

나. 음란물 전자적 기록매체 공연 진열

형법은 음란물 전자적 기록과 관련된 기록매체 공연진열(公然陳列)을 규정하고 있다(제175조제1항54). 판단 기준에서 음란성이 명확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성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성기부분에 모자이크를 처리했지만, 이를 쉽게 제거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인 경우이다. 그러나 성기로 확인되더라도 학술이나 의학적인 목적 등 선정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예외이다.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전자게시판, 웹사이트 등에 정보를 게재한 경우에는 공연진열로 판단할 수 있다.

다. 아동포르노 공연 진열

아동포르노규제법은 아동포르노의 제조 및 제공행위가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아동의 권리뿐만 아니라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다. 아동포르노 공연 진열에 해당하는 행위는 사진이나 영상에서 묘사된 대상자의 의견을 통해 분명하게 18세 이하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사진이나 영상에서 묘사된 대상자의 의견과 함께 부수적인 정보, 대상정보가 게재되어 있는 웹사이트나 전자게시판에 게재된 기타 정보 등으로 18세 미만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를 충족해야 한다. 아동 포르노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동의 성교, 성교 유사행위가 묘사된 사진이나 영상, 타인이 아동의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나 아동이 타인의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를 묘사한 사진이나 영상으로 성욕을 일으키거나 자극하는 것, 의복의 전부 혹은 일부를 입지 않은 아동의 자태가 묘사된 사진이나 영상으로 특히 아동

---

54) 형법 제175조제1항

1. 음란한 문서, 그림, 전자적 기록과 관련된 기록매체 등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진열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엔 이하의 징역 혹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전기통신의 송신을 통해 음란한 전자적 기록 기타 기록을 배포한 자도 이와 같다.



의 성적인 부위가 노출되거나 강조된 것으로 성욕을 일으키거나 자극하는 것이다. 공연 진열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특정 혹은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전자게시판, 웹사이트 등에 정보를 게재하면 공연 진열이라고 판단한다.

아동포르노를 불특정 혹은 다수에게 제공하거나 공연히 진열할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행 부과한다. 이때 전자통신회선을 통해 아동의 자태를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묘사한 정보를 기록한 전자적 기록, 기타 기록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제공하는 자도 같은 처벌을 부과한다(아동포르노규제법 제7조).

#### 라.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규제법 위반

온라인 데이팅서비스 규제법에서는 이성교제 등의 유인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법은 온라인 데이팅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하는 아동매춘 등에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3년에 제정 및 시행되었다. 온라인 데이팅서비스로 인한 범죄가 늘기 시작하자 2008년에 개정하여 온라인 데이팅서비스 사업자는 공안위원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sup>55)</sup>

온라인 데이팅서비스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는 다섯가지인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첫째, 아동을 성교 등의 상대로 유인하는 행위, 둘째, 사람을 아동과의 성교상대로 유인하는 행위, 셋째, 대가를 제공한다며 아동을 이성교제 상대로 유인하는 행위, 넷째, 대가를 제공한다며 사람을 아동과의 이성교제 상대로 유인하는 행위, 다섯째, 아동을 이성교제 상대로 유인하거나 사람을 아동과의 이성교제 상대로 유인하는 행위 등이다.

인터넷 이성교제사업에 대한 판단요건은 공동으로 면식이 없는 이성과의 교제를 원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성교제에 관한 정보를 전자게시판에 게재하고, 정보를 열람한 이성교제 희망자가 정보를 게재한 이성교제 희망자와 전자메일 등을 통해 1

---

55) 이러한 신고제가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는다는 합법판결이 2014년 최고재판소에서 선고되었다.

대 1로 연락할 수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 규제법에서 금지한 유인행위에 해당된다. 즉, 성교 등의 유인의 경우, 18세 미만이나 여자중학생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아동을 의미하는 표현을 기재하고, 성교 또는 성행위 유사행위를 요구하는 표현을 기재한 경우이다. 이성교제 유인에 해당하는 것은 18세 미만이나 여자중학생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아동을 의미하는 표현을 기재하고, 함께 놀자는 등 교제를 요구하는 표현이 기재되어 있으며, 금액이나 원조교제, 용돈 등의 대가를 공여하거나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 기재된 경우이다.

#### 다. 스팸메일 규제

무차별·대량으로 짧은 시간에 광고 등의 스팸메일을 보내는 행위나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를 규제하기 위한 특정전자메일송신적정화법이 2002년부터 시행됐다. 이후 2005년에 스팸메일에 대한 벌칙이 규정되었으며, 2008년에는 Opt-out에서 Opt-in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실효성을 강화했다.

특정전자메일송신적정화법에 따르면 송신자는 전자메일의 송수신을 위해 이용되는 정보 가운데 송신자에 관한 것으로서, ①해당 전자메일의 송신에 이용한 전자메일주소, ②해당 전자메일의 송신에 이용한 전기통신설비를 식별하기 위한 문자, 번호, 기호 기타 부호를 가장해 특정전자메일을 송신해서는 안된다(제5조). 또한 송신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영업을 위해 다수의 전자메일을 송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공의 전자메일주소를 받는 사람으로 하는 전자메일을 송신해서는 안된다. 만약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 바. 청소년 보호 관련 규제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청소년 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소년인터넷규제법이 2008년 제정되었다. 이후 스마트폰의 보급에 발맞춰 2017년 개정되었는데, 필터링 대상을 스마트폰으로 확대했다. 보호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필터링에 관한 설명을 의무화했다. 이동통신사업

자에 대해 계약자나 단말기 사용자가 청소년(18세 미만)인 경우, 필터링 서비스 이용을 조건으로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 의무화되었다.

한편, 2002년에 시행된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은 프로바이더가 권리침해정보를 삭제하지 않거나 삭제했을 경우에 손해배상책임 면책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프로바이더가 보유한 발신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규정하고 있다. ISP가 권리침해정보의 유통을 방치한 경우에는 부작위로 인한 책임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반대로 권리침해라고 판단해 정보를 삭제한 경우에는 불법행위로서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에서는 ISP의 손해배상책임을 일정 정도 제한해 자율적으로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권리침해정보가 익명인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프로바이더에게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발신자 정보공개 청구권이라고 한다. 총무성은 시행령을 통해 발신자 정보공개 대상이 되는 정보를 열거하고 있다. 정보는 발신자 이름 또는 명칭, 발신자 주소, 발신자 메일주소, 침해정보 관련 IP주소, 휴대전화단말 등의 이용자식별부호, SIM카드 식별번호, 타임스탬프(침해정보가 송신된 연월일 및 시각) 등 7가지 이다.

<표 3-5> 일본의 불법·유해정보 규제 체계

불법정보유형	대상사업자*	행위상대방**	사전규제기술적조치	제재절차	제재
국가기밀누설 (특정기밀보호법)		모든 국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 벌금
불법약세스 (부정약세스금지법)		모든 국민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
명예훼손 (형법제230조)		모든 국민		소송/재판	3년 이하 징역 혹은 금고, 50만엔 이하

모욕 (형법제231조)		모든 국민		소송/재판	벌금 구류, 과태료(科料)
협박죄 (형법제222 조제1항)		모든 국민		소송/재 판	2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 벌금
신용훼손· 업무방해 (형법제233조)		모든 국민		소송/재 판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
아동포르노: 소지, 제공, 제조, 운반, 수출입, 진열 (아동포르노 금지법)		18세 미만 미성년		소송/재판	소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징역 제공: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 징역 제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 징역 운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 징역 수출입: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 징역 진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엔 이하 징역
아동 성매매 유인 정보 (만남주선사 이트제한법)	인터넷 이성 소개사 업자	18세 미만 미성년			사업자: 폐지 명령 이용자: 100만엔 이하 벌금
성추행		모든		소송/재판	6개월 이하

영상 공개		국민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 벌금
스토킹 (스토커규 제법)				소송/재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
청소년 유해물 표시위반, 저장매체	프로바 이더		필터링 차단		
리벤지 포르노 공표, 제공	프로바 이더		삭제요청	소송/재판	공표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 제공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만엔 이하 벌금
저작권 침해 (저작권법 제119조제 1항)		모든 국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 벌금
마약·위 험약물 광고, 진열(전송) (의약품의 료기기법)		모든 국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엔 이하 벌금

\* 대상사업자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제공자중 일부

\*\* 상대방 : 모든 국민/ 아동 청소년에 한정

## 제6절 시사점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국내 정보통신망법처럼 단일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국가는 찾기 어렵다. 실제 국내 정보통신망법도 온라인 상의 모든 불법·유해 콘텐츠를 규율하고 있지 않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해외 주요국들은 국가들마다의 고유법체계로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불법행위들을 규율하고 있다.

EU는 전자상거래법<sup>56)</sup>에 근거하여 불법콘텐츠를 규제해 왔는데, 올해 12월 15일, 디지털 서비스법 입법 제안을 발표하며, 그 기초를 달리하고 있다. 디지털서비스법은 기존의 온라인상 불법콘텐츠 규제보다 더 강력한 감독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기존의 불법콘텐츠 정의에 제품, 서비스, 활동과 관련된 광의의 개념을 적용하여 그 범위를 넓혔다. 즉, 정보의 활동의 불법성이 유럽연합의 법, 회원국에 법에 기인하는지 여부, 위반법률의 성격 및 내용 등에 제한하지 않고 모든 불법적 활동을 규제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다. 또한, 온라인플랫폼에 적용되는 규제를 추가했으며, 초대형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조항을 새로 규정하고 있다. 6개월마다 이용자수를 확인하여 초대형플랫폼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해제하는 것, 초대형플랫폼사업자의 새로운 의무 등 기존의 규제보다 강력한 규제를 추가한 것이다. 이는 국내 플랫폼사업자의 규제방향에 대해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온라인 상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규제를 대부분 형법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 중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카메라 이용, 리벤지포르노, 업스커팅의 유형은 형법에서 규율하지만, 비동의촬영물 배포는 예술저작권법에서 규율한다. 즉, 동일한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에 따라 규율 법률이 다른 것이다. 한편, 독일은 혐오표현에 대해 규제하고 있다. 네트워크집행법은 소셜네트워크사업자를 대상으로 불법콘텐츠에 관한 불만처리, 불만사항에 대한 기록과 검토,

---

56) 2018년 3월, 유럽위원회는 온라인사업자가 불법콘텐츠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도록 하는 조치에 관한 권고를 채택했다.

7일 이내 삭제 또는 접근 제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사항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혐오표현에 대한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입법의지가 엿보이고 있다. 독일의 네트워크집행법이 국내 입법과정에서 시사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은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학대, 아동성착취물 유통에 대한 제재 방안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 중에 있다. 이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또한 최근 EU 디지털서비스법 제안이 채택되고 논의되고 있는만큼 EU 회원국인 독일은 그 규제를 따라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입법방향에 대해 주시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온라인 상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규제를 개별법에서 하고 있다. 형사사법, 디지털경제법, 커뮤니케이션법 등 다양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사이버혐오에 대해 일반범죄에 비해 형량을 높게 책정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도 혐오표현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영국의 사이버혐오 사례가 시사점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온라인 불법 및 범죄 행위에 따라 연방차원의 규제와 주차원의 규제가 나뉘어있다. 연방법에서만 규율하는 행위가 있고, 연방법이 부재하여 주법에서만 규율하는 행위가 있으며, 연방법 및 주법이 둘다 규정하고 있는 행위도 있다. 국내법 체계와 상이하여 법체계 자체를 참고할 수는 없겠지만, 행위에 대한 규제 수준 및 강도는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은 온라인 불법·유해정보를 막기 위해 프로바이더책임제한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별적인 불법유해정보는 사업자단체와 프로바이더의 자율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일본 총무성은 온라인의 가짜뉴스와 허위정보에 대해 대응하기 시작했다. 2018년 10월에 ‘플랫폼서비스연구회’를 설치하였으며 2020년에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에서도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만큼 일본의 해당 사례가 시사점이 될 수 있다.

## 제 4장 정보통신망법 정비방향

### 제 1절 정보통신망법령 정비 필요성

2001년 전면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서비스 품질 개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규제 강화, 인터넷상 음란·폭력물에 의한 청소년 보호 등 현행 제도의 개선·보완을 목적으로 하였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던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영역으로 이관됨에 따라 많은 조문들이 삭제되었다.

그동안 정보통신망을 둘러싼 입법적 논의는 항상 다양하게 제기되어왔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역시 새로운 내용을 담거나<sup>57)</sup> 삭제하는<sup>58)</sup> 정비작업을 반복하여왔다. 하지만 이번 개인정보 조문들의 이전 및 삭제로 인해 전체 136개 조문에서 89개만 존재하고 있으며, 57개는 삭제된 채로 법에서 유지하고 있는 형국이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주요 영역을 크게 구분지어 보면 ①정보통신 이용 촉진, ②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③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④통신과금 서비스 규율로 볼 수 있다. 기존에는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가 하나의 커다란 영역이었으나 이 영역이 빠짐으로 인해 규율 영역이 4개로 축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4개의 영역은 각기 목적을 별도로 갖고 규제 내용별 규제기관을 달리 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내용과 그 소관, 별도의 분리가 가능한지 여부는 다음 표와 같다.

---

57) 제7장 통신과금서비스, 제8장 국제협력은 2007년 추가되었다.

58) 인터넷주소 관련 조문이 관련 법 신설로 삭제(2004년), 실효성을 이유로 전자문서 중계자 관련 조문 삭제(2015년) 등이다.



<표 4-1> 현행 정보통신망법 규율 내용/소관/분리가능성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정보통신망 기술개발 정보통신망 인증 정보내용물 개발지원 정보통신망 응용서비스개발촉진 정보공동활용체제 인터넷 이용 확산 및 품질개선	⇒ 진흥법, 과기부 소관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 등	청소년 보호 프라이버시 보호 등 이용자의 권리 불법정보 유통금지 아동금지 불법촬영물유통책임자 명예훼손분쟁조정부	⇒ 규제법, 방통위 소관 이용자보호에 관한 신법으로 분리 가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등	사전점검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시설보호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정보보호관리등급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중요정보 국외유출제한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보호 진흥 및 규제, 과기부 소관(KISA가 주로 업무)  정보보호에 관한 신법으로 분리 가능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전송 광고 프로그램설치 소프트웨어보급 광고성정보게시제한	⇒온라인 광고에 관한 규제, 방통위원회 소관 이용자보호에 관한 신법 내지 온라인 광고에 관한 신법으로 분리가능
통신과금서비스	등록제도 약관신고 통신과금서비스 안정성확보 및 이용자권리 분쟁조정 손해배상 이용제한	⇒ 부가통신사업자 규제, 과기부 소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 가능
국제협력	국제협력	
보칙	자료제출 / 청문 / 투명성보고서/ 권한의 위임위탁 / 비밀유지 / 공무원의제	
벌칙	벌칙 / 몰수·추징 /과태료	

## 제2절 정보통신망법 정비 방향

### 1. 정보통신망법 개정

먼저 현재 정보통신망법을 유지한 채 개정하는 방식의 정비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에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부분이 빠지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통신망 이용자보호, 정보통신망 정보보호(보안), 통신과금 서비스에 관한 내용들과 보칙과 별칙이 남아있다. 기존에 망법에서 삭제되었던 많은 규정들(인터넷 주소나 전자문서중개인)과 달리 최근 삭제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들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그 중요성이 매우 컸다.

정보통신망법은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될 때 까지 민간영역의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에 관하여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왔으며<sup>59)</sup>, 개인정보 보호에 한 장(제4장)을 할애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이나 이용과 관리·파기에 대해 의무와 동의권 및 동의철회권, 열람·제공·정정요구권 등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었다. 또한 이를 집행하기 위한 행정제재 규정과 벌칙 규정을 두었고, 개인정보 관리체계의 인증제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제한, 전자우편주소 무단수집 금지 등 정보통신망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두었다. 상당한 조문을 담고 있었던 만큼 삭제로 인해 제거된 조문의 숫자 역시 상당하다.

기존의 삭제조문과 가지조문을 정비하고, 새로운 정보통신망의 규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망법의 전부 개정과 폐지·제정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의 경우 기존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다른 개념들이 남아 있으므로 전부 개정의 방식으로 조문을 재정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재정비 작업과 함께 정보통신망법의 새로운 이념을 담는 것도 고려할 수 있으며 기존에 미흡했던 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

59) 오병철, 2017.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정보통신망 기본법」 등으로 법제명을 변경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조문의 정비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삭제 조항이 전부 없어지고, 가지조문의 정비가 이루어져 법조항들의 체계적인 정비가 가능하게 되고 현행 정보통신망법의 복잡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 2. 이용자 보호 관련 신법 신설

다른 방식으로 현재의 정보통신망법을 전면 해체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앞서 살핀 것과 같이 현재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과 관련한 다양한 이슈를 담고 있는 법률이다. 또한 각 분야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하는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 따라서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이용촉진의 진흥법으로 남겨놓거나, 현재 법제명과 같이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보호에 관한 내용만 남기고 나머지 부분은 새로운 법으로 만들거나 타법으로 이관하여 법제정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혹은 영역별로 모두 법을 해체하여 관련 법으로 이관하고 필요한 경우 신법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앞의 표<4-1>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현재 정보통신망법의 규율 부문을 보면 크게 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② 정보통신망 이용자보호, ③ 정보보호, ④ 통신과금서비스의 4개 부분이 큰 축을 이루고 있다. 특히 소관부처별로 살펴보면 정보통신망 이용자보호 부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을 기준으로 개별법에서 규율가능성을 살펴보면 이용촉진에 관한 부분은 전기통신기본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분은 전기통신의 기본이 되는 네트워크에 관한 이용촉진에 관한 규정이므로 해당 내용이 전기통신기본법이나 사업법으로 용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통신과금에 관련된 내용 역시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율이 가능할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한 요금규제를 두고 있으며,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망법에 의해 규제를 받는다.<sup>60)</sup> 규율대상의 통일성 측면을 고려할 때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이에 대한 규율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정보보호 관련 부분 역시 정보통신망법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은 민간부문에 있어 정보보호 관련 기본법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정보보호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고 현재 정보통신망법의 제명을 고려할 때 정보보호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현재 법에 남겨놓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할 수 있다. 다만 정보의 가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고 기존과 달리 복잡하고 다변화되어 있는 정보침해에 대해서 대응 거버넌스를 갖출 필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을 통괄하는 거버넌스 체계를 갖춘 입법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는 정보보호 부분을 해체하여 별도의 정보보호에 관한 기본법과 같은 신법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 할 것이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해외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그 중요성이 매

---

60) 제53조(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각호 생략)

-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상법」 제170조에 따른 회사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으로서 자본금·출자총액 또는 기본재산이 5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전기통신사업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사항의 변경,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 사업의 승계, 사업의 휴업·폐업·해산 등에 준용한다. 이 경우 “별정통신사업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로 보고, “별정통신사업”은 “통신과금서비스제공업”으로 본다.
- ⑤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세부요건,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 커지고 있다. 최근 유럽의 디지털서비스법안에서 볼 수 있듯이 불법정보 등에 대해서는 정부의 노력도 노력이지만 플랫폼 사업자를 비롯한 온라인 디지털 사업자들의 역할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 성범죄와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국가는 그 규제권한을 강화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기존의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과 함께 다른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규정들의 도입을 통해 신법을 만드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새롭게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을 만든다면 그 방향에 대해 우선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용자 보호와 관련한 신법을 그 입법 방향별로 생각해보면 ① 현재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유해정보등의 내용규제를 담는 법, ② 정보통신망을 둘러싼 이용자 보호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법(혐오표현이나 허위조작정보 등이 포함되고 인터넷 광고 문제 등도 포함할 수 있음), ③ 망사업자에 대한 규율을 담는 법(AI알고리즘 공개 등 망사업자의 다양한 의무를 포함할 수 있음)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①에서 ③으로 컨셉을 넓히면 넓힐수록 담을 수 있는 범위도 커질 수 있다. 다만 정보통신망에서의 이용자 보호의 범위를 어디까지 결정하여서 이를 법으로 규율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인 판단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제 5장 결론

### 제1절 정보통신망법 체계 정비에 대한 제언

ICT생태계는 이용자 중심으로 진화(CPND+U)하고 있으며, 5G 등 이동통신 기반 서비스가 고도화되면서 정보통신망 체계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환경이 급변하고, 지능정보사회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정보통신망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규범 설정과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보통신망의 발전으로 인해 이를 이용한 관련 서비스의 범위가 다양해지고, 제공되는 품질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용자 편익이 증대하고 있다. 또한, 관련 산업이 등장하면서 고용창출의 효과도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

문제는 진화하고 있는 정보통신망 서비스에 대응해야 하는 관련 법률이 발전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의 미비로 인해 서비스가 발달하는 만큼 규제 공백을 만들고 이를 이용한 불법적인 행위가 횡행하면서 이에 대한 피해는 이용자가 감당하고 있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적인 행위는 점점 지능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스팸, 신종 디지털 성범죄, 허위조작정보, 혐오표현 등은 이용자에게 정신적 피해 뿐만 아니라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인터넷에서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는 이용자의 정보 습득을 방해하고, 더 나아가 특정한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마련이 시급하다. 혐오표현의 경우 유튜브, 카카오 등의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자 약관에 언급함으로써 개선의 여지를 마련하고 있지만, 확실한 규제 방안이 없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이슈들은 모두 전 세계적인

로 문제가 되고 있으며, 해외 각국에서도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해당 이슈들을 검토하여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신기술 확산에 따른 새로운 이용자 관련 이슈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이용자의 정보판별력을 제고하고, 이용자의 인터넷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사이버 폭력, 사이버 범죄 등에 대한 가해 및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이용자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법적 공백에서 오는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체계를 재정비하고자 할 때에는 법체계 및 현행 이용자보호 이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보통신망 서비스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용자 보호 이슈를 법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따라서 2절부터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어 규제 움직임을 보이는 정보통신망 서비스 관련 행위들을 이용자보호 관점에서 논의해 본다.

## 제2절 추가이슈 1\_허위조작정보

### 1. 허위조작정보 현황 및 규제의 필요성

허위정보는 단순히 '잘못된 정보'라는 뜻이며, 허위조작정보는 '잘못된 정보'이며, 정보의 수용자를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는 정보를 의미한다. 국내에서는 2017년 대선을 거치면서 허위조작정보로서 '가짜뉴스'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는 허위조작정보와 가짜뉴스는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허위조작정보는 지난 몇 년간 미국, 유럽권을 비롯한 세계 전역에서 선거지형을 왜곡하고 사회적 혼란과 분열을 조장해 왔다. 그 예로는 프랑스의 대선, 유럽연합 탈퇴 여부를 결정해야 했던 영국의 브렉시트(Brexit) 투표 등이 있다. 최근에는 2020년 미국 대선에서 낙선한 후보가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서 개표 부정 에 관한 허위조작정보가 확산되었다(연합뉴스, 2020.11). 이러한 확산에는 후보의 측

근 고위관료와 당에서도 동조하여 미국 대선 갈등을 더욱 심화하였다.

허위조작정보는 국내에서는 미디어의 영향이 기존 방송 등 레거시 미디어에서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 서비스로 변화되면서 방송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를 받고 있던 인터넷 플랫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한국언론진흥재단, 2020). 특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허위조작정보가 유통됨에 따라 사회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관련 콘텐츠를 심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의결을 하고, 경찰청은 관련 정보 유통자를 처벌하는 등 허위조작정보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sup>61)</sup>하였고, 2020년에는 그 대책 중 하나로 팩트체크 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이 주도하는 팩트체크 센터 설립 지원 방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국민 참여형 팩트체크 플랫폼<sup>62)</sup>을 만들 계획을 공개하였다. 또한 팩트체크 시민 교육을 확대하고 각 분야 전문가가 전문 팩트체커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심화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는 허위조작정보를 미디어교육을 통해 예방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2020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방통위원장 대국민 담화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사업자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포털사업자에게도 정확한 코로나19 대응 요령을 홍보하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방통위가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방안 도출은 어려운 실정이며, 허위조작정보의 위협성에 비해 구체적인 방안과 법령은 부재인

---

61)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는 1) 팩트체크 활성화 2) 미디어 리터러시 도입 3) 혐오·차별 표현 금지 4) 역사 왜곡 금지 5) 플랫폼 공적규제 강화 6) 언론사 정정보도 위치 합리화 7)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8) 딥 페이크 성범죄 처벌 신설 등 8개 항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62) 국민 참여형 팩트체크 플랫폼이란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에 직접 참여해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관여하며 SNS나 유튜브 등의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교육 등을 시행하는 것이다.



상황이다.

허위조작정보는 현행 법률에 적용되는 허위조작정보와 현행법에 규제받지 않는 공백의 일반적인 허위조작정보로 구분이 가능하다. 현행 법률에 적용되는 허위조작 정보가 언론보도인 경우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선거의 허위사실 공표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불법 및 유해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70조,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규제가 가능하다. 이를 근거로 현행법상 규제가 가능하기에 허위조작정보는 추가적인 규제가 불필요하며, 법률 규제는 결국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황성기, 2017). 하지만 법률상 공백에 위치하는 일반적인 허위조작정보는 규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허위조작정보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또는 특정인의 사생활 침해나 명예가 훼손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기 어려운 경우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도 분명 중요하지만 선거 및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특정 이슈가 있을 때,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법익을 침해하고 위기상황을 야기할 수 있으며(김중현, 2019)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겨냥한 조작된 정보나 검증되지 않고 불안을 가중시키는 감염병 관련 정보가 인터넷 및 SNS 등을 통해 빠르게 유포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되지 못하여 국가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어느 정도의 허위조작정보의 규제는 필요하다.

## 2. 국내 허위조작정보 입법안 논의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국내 입법안의 주요 개정 방향은 ‘허위조작정보’란 개념의 구체화를 시도하며 허위조작정보 해결 방안으로 미디어 교육을 규정하는 의안이 주를 이룬다.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의안은 현재 (2020.12.10.)기준 정필모 의원의 ‘허위조작정보 정의 및 삭제 의무규정 신설(정필모 의원 외, '20. 6. 22, 안 제2조

제1항제14호, 제44조의2제7항 신설 및 제76조제1항제6호의2)'이 있다.<sup>63)</sup> 본 발의안에서는 허위조작정보가 현재의 정보통신망법으로는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허위조작정보를 명확하게 정의하고 포털사이트와 SNS사업자가 허위조작정보를 지체없이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허위조작정보의 정의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정보를 매개로 타자를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성을 가진 행위로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 또는 사실검증이라는 저널리즘의 기능이 배제된 가운데 검증된 사실로 포장하는 행위'로 하고, 이를 정보통신망법 제2조제1항 제14호에 신설하는 안이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허위조작정보가 게재되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 책무를 부여하고(제44조의2에제7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항(제44조의2제7항)을 신설하는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본 법안은 규제대상인 허위조작정보를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타자를 속이려는 기만적 의도성', '허구임을 오인', '검증된 사실로 포장'등과 같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언론보도의 양식을 띤 정보'라는 표현도 '언론'이나 '보도'활동이 사실 전달, 논평 등 일반적인 표현 행위들과 명백히 구분되는 활동이 아니라는 점에서 규제 대상 정보를 명백히 정의할 수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규제 대상에 대한 불명확한 정의 규정은 표현주체인 국민, 감시 및 삭제의무를 이행해야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업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과 과태료를 부과해야하는 국가기관에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함에 따라 헌법

---

63) 국회입법조사처(2020)의 '제20대 국회의 허위조작정보 관련 입법 현황 및 쟁점 NARS 현안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서 논의된 허위조작정보 관련 법률안은 약 43건에 달하며,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미디어 선거 성폭력 범죄 국가 정보화 교육 등과 여러 분야와 연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발의된 법안 중 2건이 통과됐으며, 이 중 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한 법안은 1건이 통과됐으며 나머지 법안은 임기만으로 폐기됐다.

상의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대상 정보를 명백히 구분할 수 없다. 어떤 사실이 허위이고 진실인지에 대한 판별, 어떤 정보가 상업적 또는 정치적으로 타자를 속이려는 기만한 의도성을 지녔는지 수용자가 허구임을 오인하도록 의도한 것인지, 사실검증을 거쳤는지 등에 대해 표현주체의 의도 및 사정까지 참작하여 허위조작정보를 분류하고 삭제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의무를 부과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에 대한 일반적 감시(모니터링) 및 삭제의무를 부과하는 형식의 규율은 이들에게 과차단, 과검열을 부추길 수 있으며, 합법적 표현물까지 차단되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위험성이 높아 정보매개자책임에 관한 국제원칙인 마닐라원칙(Manila Principles on Intermediary Liability)<sup>64</sup>에 반할 수 있다.

이처럼 허위조작정보는 법률적 의미가 무엇인지 그 개념을 설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규제 대상 정보를 특정하기 어려우며, 한정된 정보와 제한된 권한으로 판단 주체가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허위조작정보 판단에 있어 판단 주체의 주관적 평가 잣대가 개입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피규제자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위해서는 허위조작정보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정의 조항 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며, 그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

64) 2015년 3월 인권과 기술에 대한 국제 NGO 회의에서 발표한 마닐라원칙은 인터넷 상 정보 규제 시 지켜야 할 원칙을 정립함으로써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을 보호하고자 하며, 크게 다음 6가지의 대원칙 및 33개의 세부원칙을 제시했다. 1. 정보매개자들은 제3자의 정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2. 정보 차단은 사법기관의 명령 없이 의무화되어서는 안 된다. 3. 정보 차단 요청은 명백하고, 분명하고, 적법절차를 따라야 한다. 4. 정보 차단 요청 및 실무 및 관련법은 필요성과 비례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5. 정보 차단 법, 정책 및 실무는 적법절차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6. 정보 차단 법, 정책 및 실무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포함해야 한다.

한다. 이를 통해 소관법률 및 감독과 관련하여 혼란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해치지 않을 수 있는 수준의 의무부과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예방과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시행 방안도 법률 내에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3. 허위조작정보 소관 법률에 대한 논의

허위조작정보를 규제한다면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야 할지 아니면 기존의 법률을 개정해야 할지, 법률을 제정한다면 어떤 법률이 가장 적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허위조작정보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상 체계를 활용하여 임시조치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정보는 ‘허위조작정보’와는 다른 개념으로, 불법정보 규제는 ‘허위조작정보’의 규제에 대한 아무런 실효를 기대할 수 없으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불법정보는 이미 규제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는 형법 등 개별 법률을 위반한 정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현행법에 적용되지 않는 허위조작정보는 규제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허위라는 가치관의 문제인 사항을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예외적인 부분으로, 허위조작정보를 불법정보로 보고 삭제를 하거나 유통을 금지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음으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가 아닌 새로운 장으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규제와 절차 등을 규제하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정보통신망법의 입법취지에는 적합할지라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수범주체로 하는 정보통신망법의 특성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만 허위조작정보 규제 의무를 부여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sup>65)</sup> 또한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의 내용이 이용자보호, 통신과금서비

스, 이용자의 안전한 환경 조성이라는 장의 체계의 정합성에 맞지 않아 정보통신망 법상의 구성을 전면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허위조작정보의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해외 입법 사례를 반영하여, 이용자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개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있다. 새로운 법률을 제정을 위해 우선적으로 허위조작정보의 구체적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앞으로의 불법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정보 침해가 늘어날 가능성, 허위조작정보 등 이용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의 필요성 증가 등을 고려하여 새로운 법에 허위조작정보를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제3절 추가이슈 2\_ 혐오표현

#### 1. 혐오표현 현황 및 규제의 필요성

전세계적으로 혐오표현의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9년 UN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위협하는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미국 시카고 대학은 ‘차별금지선언(Non-discrimination Statement)’를 마련, 영국 옥스퍼드 대학은 ‘평등 정책(Equality Policy)’을 채택하였다. 더 나아가 독일은 개별법으로 혐오표현을 규제하고 있다.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각국 사이에서도 규제의 방식이나 실태는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각국은 역사적인 배경과 사회적인 경험을 기초로 특정한 혐오표현에 대해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제의 실현 역시 사회의 분위기에 많이 좌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혐오표현의 규제보다 표현의 자유 보장을 강조하고 있으며,

---

65) 대부분의 허위조작정보의 입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조치 등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혐오표현의 규제에 보다 적극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미국과 나치 독일 반유대주의 정책에 따른 비극을 경험한 유럽국가들의 역사적 배경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국회 입법조사처, 2017)

국내에서도 2013년 이후 혐오표현은 새로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왔으며, 표적 집단에 대한 해악성이 심각하게 드러났다. 2017년에는 남성과 여성 혐오 논쟁을 원인으로 한 유튜버가 발언을 한 유튜버를 살인하겠다고 하며 실제로 해당 유튜버의 주소로 짐작되는 곳으로 향하는 사건이 일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최근에는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sup>66)</sup>에서의 악플로 대학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렇듯 혐오표현의 폐해는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방통위의 권고 조치 외에 구체적 방안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가<sup>67)</sup>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입법례에서 살펴봤듯이 우리나라도 현재 사회적 분위기와 역사적 맥락에 맞는 혐오의 개념 설정 및 이에 대한 입법적 규제를 검토할 필요성이 증가한다.

혐오표현은 감정이 담긴 개념으로 국제인권법상 통일된 정의가 부재하며, 국제 및 지연인권기구들은 혐오표현을 정의하고 제한하는데 있어 <표 5-1 >와 같이 서로 다른 기준을 시사하고 있다. 국내 문헌에 따르면 공통적으로 개인 또는 집단을 나타내는 대상과 그 대상의 특징, 대상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포함되는 표현행위로 정의되고 있다. 현행 법률상 혐오에 대해 명문으로 규제하는 법령은 없으며, 다만 혐오 표현에 대응할 수 있는 형사법적 규제로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존재한다. 또한 특별법상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괴롭힘의 하나로 비하 등의 표현을 사용하는 것 금지하고 있다. 인터넷 상 욕 또는 욕설은 혐오표현

---

66) 온라인 대학생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이용자의 79.1%가 비방, 소수자 혐오, 사이버 불링 등으로 인한 불쾌감을 경험하였으며, 이용자의 50.4%는 ‘에브리타임’측의 이용규칙과 제재 강화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응답(20. 11. 청년참여연대)

67) 19세 이상 성인 1만 3천여명을 대상으로 인권 의식을 조사 결과 10명 중 8명(77%)은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응답 (2020. 국가인권위원회)

중 가장 많은 유형 중의 하나이며 욕설과 악성 댓글 등은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제310조)나 모욕죄(제311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표 5-1> 혐오표현 정의

구분	출처	혐오표현 정의
연구	이준일 (2014)	특정 대상에 대한 내면의 혐오감을 외부로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소속된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적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행위
	박용숙 (2014)	(인종·민족·종교·성별)등의 이유로 증오등을 표명하는 표현
	심경수 (2007)	사전적인 의미는 (특정 인종·성·종교)에 대한 편파·경멸적 발언
	이주영 (2015)	(인종, 성별, 장애, 성적지향) 등의 속성을 이유로 특정 개인(들)에게 언어를 통해 수치심 등 정신적고통을 주는 행위
단체	유럽인권재판소	(인종적 혐오, 외국인혐오, 반유대주의, 또는 공격적인 국가주의나 자민족중심주의, 소수자·이주민·이주민 출신 사람)을 향한 차별과 적대감 등으로 표현되는 불관용을 포함한 그 밖의 다른 불관용을 바탕으로 혐오를 확산, 선동, 고취, 또는 이를 정당화하는 모든 형태의 표현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 (CERD)	인간존엄성과 평등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원칙을 거부하고,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지위를 훼손하려 하는, 타인을 향한 표현의 형태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ATRIC LE 19)	혐오표현'과 관련한 규정이 최대한 넓은 범주의 보호특성을 포함하며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선주민 출신 혹은 정체성, 장애, 이주민이나 난민지위, 성적지향, 성별 정체성 또는 간성상태를 포함하는 것을 일컫는다.
사업자	유튜브	(인종이나 출신민족, 종교, 장애, 성별, 나이, 군복무 여부, 성적지향이 나 성별정체성)등 일정한 특성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폭력이나 혐오를 고취하는 콘텐츠

출처: 미디어미래연구소(2020)

온라인에서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안 되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

1항), 이에 따라 혐오표현이 명예훼손의 행위로 판단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 법의 규제대상이 된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혐오표현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대상이 될 수 있고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욕설 등을 동반한 혐오표현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다. 판례는 ‘듣보잡’이라는 표현에 대해 모욕죄를 인정하기도 하였다.<sup>68)</sup>

하지만 특정 개인의 활동에 대해 가해지는 온라인상의 각종 비방 및 혐오 표현들로 인하여 당사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고 나아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현행법상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에 따라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 2. 혐오표현 관련 입법안 논의

혐오표현 관련 법안은 단순히 혐오표현 사용자에게 대한 처벌, 혐오표현 관련 게시물을 삭제 외 혐오표현의 정의와 해악을 설명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혐오표현에 대한 의안은 현재(2020.12.10.) 기준, 이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에 비방 및 혐오표현 등 유통 방지(2020. 9. 17, 안 제44조의 2, 제44조의3, 제44조의7 및 제76조)’와 전용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상의 혐오·차별표현 등 모욕 규제(2020. 8. 7, 안 제44조의2, 제44조의7 및 제70조)’가 있다. ‘정보통신망에 비방 및 혐오 표현 등 유통 방지’안은 비방 및 혐오표현 등이 포함되어 있는 불법정보로 인해 피해를 입는 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불법정보를 삭제하여 정보통신망에 비방 및 혐오표현 등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 법안은 비방 및 혐오표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

68)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내리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체의 요청을 판단하는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특히 비방 및 혐오표현에 대한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자칫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도 있다.

‘온라인상의 혐오·차별표현 등 모욕 규제’발의안은 온라인상의 혐오·차별표현 등 모욕에 대한 죄를 신설 및 그로 인해 발생한 자살방조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하며 친고죄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피해자의 보호법익을 강화하는 한편, 상기 내용에 대한 삭제 요구권을 보장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극단적 선택을 하게 하거나 이를 결의하게끔 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상 자살방조죄와 같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다. 본 법안에서도 혐오와 차별표현에 대한 정의가 명백하지 않으며, 정의와 기준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혐오, 차별 등의 개념으로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모욕행위로 인한 자살이라는 인과관계를 확정짓기 어려우며,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과잉 입법의 문제가 있다.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 찬반의 논란이 많다.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찬성은 혐오표현의 파급력이 광범위하며, 혐오표현에서 시작되는 차별행위 및 인권 침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혐오표현 규제를 반대하는 입장은 혐오표현 범위 자체가 명확하지 않고, 표현의 대상이 된 소수자 집단 전체가 해악을 입었다는 것은 지나치게 막연하다고 지적한다.

혐오표현 규제 반대론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혐오표현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이와 함께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해당 표현행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이다. 기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를 합헌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한 전제이며 규제가 가능하다면 그에 따른 쟁점들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혐오표현의 개념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혐오표현 예방 및 대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이다. 어떤 행위가 혐

오표현 개념에 적절히 포섭되지 못할 경우, 피해자에게 해악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로 특정 형태의 표현이 혐오표현 개념에서 배제되면 그 표현을 정당화하고 승인하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가 발생하며 혐오표현 발화자는 더욱 고무되어 혐오표현을 확산시키고 피해자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외국 입법례와 다르게 사회적, 역사적 합의된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가 없어 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에 의한 헌법적 보호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혐오표현의 개념 설정과 함께 이에 대한 입법적 규제 모색이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의 미디어 환경의 변화 및 언어의 변화, 평등에 대한 이해의 변화, 기술발전 반영 등의 시대적 흐름에 따라 생성되는 신조어에 대한 적용이 가능한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특히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위해서는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을 확인할 수 있는 보호되어야 할 특성을 구성하는 요인, 혐오표현이 노출되거나 유통되는 형태나 특징, 발화자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혐오표현을 이용했는지에 대한 논의와 증오, 비판, 반감, 혐오, 조롱, 모욕, 욕의 발설, 금지 또는 제한 등의 표현, 행위의 범위, 초래된 사회적 해악에 부여하는 중요성 정도 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온라인 생태계의 자율규제에 모든 문제 해결을 맡기기 어렵다는 점에 따라 최소한의 부작용을 금지 하기 위해서는 혐오표현의 범위를 구체적인 해악 발생이 임박한 경우로 한정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형사범죄화와 같은 규제수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 3. 혐오표현 소관 법률에 대한 논의

현행 혐오표현은 개별법상에서 규제할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괴롭힘등의 금지)에서는 장애인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제1항), 장애를 이유로 집단따돌림, 모욕감이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 금지(제3항)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그 외에

성별, 성적 지향에 근거한 혐오표현 중 성희롱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표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은 여성, 장애인으로 한정되어 있고 개인의 구제나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혐오표현 규제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혐오표현에 대한 기본법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특정 개인을 향한 명예훼손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인 포털이나 게시판 관리자가 해당 표현을 삭제 혹은 차단하여 온라인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으로 유통을 금지할 수 있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표현은 혐오표현 일부에 해당할 뿐이며, 그 보호법익에 비추어 혐오표현을 포섭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불법정보상 혐오표현 일부는 사이버스토킹과 음란 표현 규정에 포섭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이러한 표현들 일부만이 혐오표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온라인상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불법정보의 유형에 명시, 혐오표현 범위 구체화 등의 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혐오표현을 규제 한다면 새로운 법률 제정과 기존 법률의 개정 중 어떤 것이 적합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우선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혐오표현을 포함해 규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체계를 활용하여 혐오표현에 대한 임시조치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로 하여금 그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를 형벌 등 타법률을 위반한 정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혐오표현의 법익 침해가 구체화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그 근거가 되는 구체적 법률을 개정 또는 제정하여야 한다는 절차적 번거로움이 있다.

또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혐오표현을 규정하는 방안이 있다. 차별금지법은 기본법적, 포괄적 규정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개별 사안을 구체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최근 두 가지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하나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116,

2020. 6. 29.)이고, 다른 하나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에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기 위하여 2020년 6월 30일에 제시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이다. 그러나 두 법안 역시 고용, 서비스 등의 일부 영역에서만 혐오표현을 규율한다는 한계가 존재한다(홍성수, 2020). 따라서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는 맥락에서 기본법적 위치의 차별금지법을 두고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체화 된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도 병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사법정책연구원, 2020). 또한 혐오표현에 관하여 모두를 규율하는 하나의 혐오표현규제법 제정 방안도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표현의 자유를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고 있으며, 해외와 달리 혐오표현의 역사가 깊지 않은 국내의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개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새로 제정된 법률에 혐오표현을 규율 하기 위해서는 혐오표현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혐오표현으로 인한 침해 가능성과 혐오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 보호에 대한 체제 개편 등을 통해 혐오표현을 규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이용자 보호 중심 개별법 취지에 맞게 혐오표현에 대한 형사처벌 뿐 아니라 자율규제나 행정규제, 인식 개선 교육 및 활동을 위한 국가 정책 등을 규정하는 법률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69)

## 제4절 추가이슈 3\_ 디지털성범죄

### 1. 디지털성범죄 현황 및 규제 필요성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불법촬영으로 인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피해자들은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피해의

---

69) 같은 견해로 박용숙,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방법의 모색을 위한 시론적 연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제38권제2호 (2018. 5.), 57.

정도가 매우 극심한 상황이다. 디지털성범죄는 현실 공간에서의 물리적 접촉 없이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가한다. 제2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성범죄는 다양한 명칭과 개념으로 이용되어 아직 합의된 개념을 도출하고 있지는 않으나 디지털 기기나 디지털 이미지를 악용하여 성적 착취 내지 성적 학대를 비롯한 성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성폭력범죄의 내용을 형법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상 해당 범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2조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에 해당되는 범죄유형은 종래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 ‘악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까지 모두 포함된다. 디지털범죄의 유형은 정보통신망과 컴퓨터를 침해하는 범죄와 정보통신망과 컴퓨터를 악용하는 범죄, 정보통신망과 컴퓨터를 이용한 유해물 범죄로 구분된다. 이 중 디지털성범죄는 컴퓨터 이용 유해물 범죄에 해당된다. 현행 법제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 영리목적 도촬물 정보통신망 유포 행위, 정보통신망이용 음란물범죄(사이버음란), 정보통신망이용 스토킹범죄(사이버스토킹), 컴퓨터 등 통신매체이용 아동청소년음란물 범죄를 디지털성범죄로 규정한다. ‘성폭력범죄’에 해당되는 디지털성범죄는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이며,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의 디지털성범죄는 현행 범죄통계상 강력(흉악) 범죄로 분류된다(김한균, 2017).

현행법상 정보통신망 이용 디지털성범죄로 사이버스토킹, 사이버음란 등을 범죄 규정으로 보기에 그 규제범위가 제한적이고, 정보통신망을 악용하여 음란물의 유통 측면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정보통신망법 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규제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타법률과의 관계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2. 디지털성범죄 관련 입법안 논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규제는 21대 국회에서는 아직 발의된 법안이 없다. 대부분의 디지털성범죄 관련 발의안은 여성가족부와 교육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정보통신방법 개정을 통한 디지털성범죄 규제안으로는 20대 국회에서 권미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18.12. 7. 안 제44조의3제2항)이 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강제성이 없으며 위반 시 별도의 처벌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이 유통되는 경우 임시조치를 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모든 촬영물에 대한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기준이 항상 명확한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 규정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분담할 책임의 범위를 설정함에 있어 과잉금지원칙 또는 비례의 원칙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특정한 불법 촬영물 정보에 대한 신고 또는 삭제요청 시에 해당 불법촬영물의 존재와 위치를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본 개정안은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경우’에 임시조치 의무를 발생시키고 위반시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고의, 과실 여부와 무관하게 불법촬영물이 서비스 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것만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는 규정으로 판단될 수 있다. 그리고 현행 임시조치 규정은 적어도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 의무가 발생하는데 반해 본 안은 사실상 서비스 내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모든 이용자들이 교환하는 정보의 내용을 검열하도록 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서비스를 통해 자유롭게 정보를 교환할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처럼 정보통신망법 내 디지털성범죄 규정은 정보통신망을 악용하여 음란물을 유포함으로써 사회적 성도덕과 건전한 정보통신망 이용에 대한 위협과 피해를 막기 위해 제재한다는 취지가 앞선 측면이 있다. 따라서 정보통신망법 내 디지털성범죄 법률 마련을 위해서는 디지털성범죄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에 따른 명확한 범개념을 도출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디지털성범죄의 경우 신증범죄 등 다양한 개념과 형태가 등장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정의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가해행위의 내용과 특성 뿐만 아니라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자의 공포감 또는 불안감, 성적수치심에 대한 구체적 규정과 피해자보호 및 피해방지와 관련한 법률 마련도 필요하다. 또한 디지털성범죄는 사이버공간을 개설하여 영리를 취하는 범죄와 결합될 수 있다. 따라서 영리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할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마련과 사이버 공간에 유통되는 불법음란물에 접속하여 이용하고 보관하는 행위의 범죄화도 검토해야 한다.

### 3. 디지털성범죄 소관 법률에 대한 논의

정보통신망법에는 불법촬영물에 관하여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 대화형 정보통신서비스에서의 아동보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즉, 불법촬영물 유통에 관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의무에 대해 집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다 보니 실무에서는 영리목적으로 불법촬영물을 인터넷에 유포한 경우, 피해자를 특정하고 특정 부위를 채증하는 증거확보가 어려운 경우 7년 이하 징역의 성폭력처벌법으로 처벌하지 못하고 1년 이하 징역인 정보통신망법상 처벌로 규율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합의된 성적 촬영물이지만 동의 없이 유포된 이후, 이를 제3자가 재유포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할 뿐 성폭력범죄로서 가중처벌이 불가능한 점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성폭력처벌법」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최진웅, 2018). 구체적으로 피해자

자신이 촬영한 영상물 등을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상에서 유포하는 자에 대해 「성폭력처벌법」에 근거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동법 제14조의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동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음란물 유포죄나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법 개정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동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도 처벌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구성요건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디지털성범죄의 양형시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촬영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면 감형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이강진, 2020). 이러한 대안으로 음란물 유포죄를 강화하는 방안과 불법촬영물에 관한 사업자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디지털성범죄에서 피해자 구제 측면은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은 정부의 대책에는 피해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고 주장한다(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 주장에 따르면 현재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안이 분산돼 있어 현행법을 피해자 구제 방안과 가해자 양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입법 과정과 개정이 필요하며 그 과정이 복잡하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이유로 통합적인 관점으로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포괄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법을 제정을 필요성을 주장한다(여성신문, 2020. 12.20). 현재 ‘n번방 사건’ 이후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구제를 중요시하는 법감정이 증가하는 측면에서는 특별법 제정은 타당하다. 다만 현재 성폭력특별법상에 디지털성범죄 관련 규정이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성범죄만을 대상으로 새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또 다른 법적 안정성 침해나 법 체계에 대한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오히려 피해자 구제 체계나 통합적인 위원회 구성, 삭제 조치 등을 새로운 이용자 보호 법률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라는 입법취지와 정보를 토대로 규제하는 내용규제 측면에서 타당하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디지털성범죄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불법정보 등에 관한 이용자 보호 규율을 담은 개별법을 규정하여 이에 포함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 [참고 1] 정보통신망법령 정비방향 관련 전문가 의견

정보통신망법령 정비 방향성에 대한 자문을 얻기 위해 법학 교수, 변호사 등 4명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 1. 이용자 보호에 대한 세부적 가이드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좁은 의미의 내용규제 측면에서 현행 정보통신망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불법·유해정보와 혐오표현, 허위조작정보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이용자 관점에서 내용 규제를 포함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보통신망법에 규율되어 있는 불법·유해정보와 추가적으로 혐오표현, 허위조작정보 정도가 가능할 듯 하다” (전문가 A)

“ 인터넷 광고, 협찬 등 불법·유해정보보다 조금 더 넓은 범위의 내용규제 포함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문가 B)

한편 내용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포함하여 망사업자를 규율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 내용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포함하여 망사업자를 규율하게 되면 개인방송, 마이데이터, 알고리즘 규제, 망 사업자 규율 등이 모두 포함 가능하다” (전문가 A)

“ 범죄 중에서도 내용규제 범죄 외에 그렇지 않은 범죄까지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 이 가능하다” (전문가 C)

“ 만약 사업자에 관한 규율까지 포함해서 이용자보호 컨셉을 넓히게 되면 범죄가 전

반적으로 다 포함될 수 있다” (전문가 D)

## 2. 특별법 제정시 포함 가능한 이슈

이용자보호와 관련하여 특별법을 제정할 시에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포함시킬 수 있는 이슈에 대해 전문가들은 ‘사망한 자의 디지털 정보 규율’, ‘인터넷 광고’, ‘전기통신사업법 상의 이용자보호 규정’, ‘혐오표현, 허위조작정보, 보이스피싱’ 등이 추가될 수 있다는 의견을 주었다.

‘사망한 자의 디지털 정보 규율’과 관련하여서는 디지털 사회에서 사망 이후에도 정보가 유통되고 있으므로 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 디지털 사회에서 사망한 자의 디지털 정보 규율이야 말로 이용자보호를 위한 내용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이다. 상속법은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이 주 목적인데 반해, 해당 쟁점은 삭제하거나 보전하는 정책의 문제로서 처분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사항이 아니다. 즉, 사망한 사람이 남긴 정보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삭제, 보존, 다운로드 받는 세가지 형태만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법하의 경계선을 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또한 기존 논의에서 개정 조문들이 어느정도 있어 큰 어려움 없을 듯하다” (전문가 C)

또한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최근 1인 미디어와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뒷광고’에 대해서도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뒷광고와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 포함이 가능하다. 이는 인터넷 광고의 구독자, 즉,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당연히 포함이 가능하며, 인터넷 광고를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이 이용자보호 범주에 들어갈 수 있다면 예외적으로 일부분이 포함이 가능하다. 다만, 당장 레퍼런스로 볼 수 있는 기존 논의가 존재하지 않아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전문가 B)

한편 이용자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타법에 있는 이용자보호 규정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용자 보호 특별법이 단순히 망 이용자는 아닌 서비스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을 만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전기통신법상의 이용자보호에 관한 규정도 가지고 오는 것도 방법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A)

또한 현재 정보통신망법의 불법정보로 열거되어 있는 정보 외에 혐오표현, 허위조작 정보, 보이스피싱 등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더불어 규율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구분하여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자체가 불법정보가 아니고, 일종의 허위정보이기 때문에 음란정보처럼 그 자체가 불법성을 띠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전화,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통해 범죄에 사용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D)

“허위조작정보와 관련된 팩트체커 서비스 제공 등 명확한 허위에 대한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기능들을 제공하는 부분들을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 B)

“법제상으로 검토했을 때, 혐오표현과 허위조작정보를 규율한다면 이를 포함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와 규율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아닌지의 문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C)

### 3. 허위조작정보가 포함될 경우 규제의 강도

허위조작정보가 정보통신망법 또는 특별법에 포함될 경우 규제 및 규제의 강도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허위조작정보는 행위자를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명예훼손과 관련된 임시조치 의무 정보까지 부담시킬 수 있다는 의견, 규제의 필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했다.

“ 허위조작정보와 혐오표현은 원칙적으로 봤을 때 행위자를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만약 규율이 필요하다면 김관영 위원이 제안한 안이 적절하다<sup>70)</sup> ” (전문가 C)

“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사실 취재 의무 부담, 위법성 조각사유 적용 불가 등 언론사에 준하는 정도까지 부담을 지우기 어려울 것이지만, 명예훼손과 관련된 임시조치 의무 정도까지는 부담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 B)

“ 일단 섰다운 시킨 후 콘텐츠 창작자의 소명(팩트 여부)을 들은 후, 근거가 있다고 생각되면 다시 게시하는 정도로 한다면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도 제한되면서 가짜뉴스 유포와 관련해서 브레이크를 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문가 D)

허위조작정보를 규제는 허위조작정보가 표현의 자유에 따른 보호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일 뿐이지 이것을 불법정보로 보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허위라는 것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것인데,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고 하여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일이다. 형법에서도 모든 허위를 다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에 의한 업무집행, 허위 공문서 작성 죄 등 특별한 경우에만 처벌한다”(전문가 C)

“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제한을 받는 것일 뿐이지 이것을 불법정보로 보기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전문가 A)

“ 망법 제44조의7에 있는 것이 불법정보라고 규정을 해서 불법정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거나, 별도의 법에서 불법이라고 규정을 해야 망법에서 불법정보에 포함할 수 있다”(전문가 D)

“ 가치관의 문제인 사항을 법 영역으로 포섭하려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불법정보로 보고 삭제하거나 유통을 금지시키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다. 허위조작 정보의 경우 예외적으로 처벌이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포함하여 법 또는 형사처벌이 되는지 여부부터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 A)

추가적으로 특별법 제정 이후 남은 정보통신망법 조문이 기본법으로서의 기능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주었다.

“ 이용자 보호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이 남게 되는데, 정보통신망의 기본법이라기 보다는 정보통신망 상에서의 형사처벌법의 형사특별법 정도로 범위가 축소될 뿐, 기본법으로 역할을 하긴 어려울 듯하다” (전문가 C)

또한 현행 임시조치는 페이스북, 구글 등 해외 사업자 등에게는 효율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주었다.

“ 미국의 경우 사법기관이 개입해서 사법기관의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국내에서 서비스를 하는 해외 사업자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행정기관이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따라서 현재처럼 방심위가 시정권고를 한 후, 방통위가 시정명령을 하는 체계는 해외 사업자들에게는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가처분을 이용해서 법원에서 임시조치하는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 (전문가 A)

---

70) '17년 발의된 김관영 의원안은 ‘가짜뉴스 방지 및 처벌 관련 법안’중 하나로 김관

## [참고 2] 중국 정보통신망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 □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互聯网信息服務管理辦法》

- 국무원에서 제정한 방법으로서 행정법규에 해당하며 법적 구속력이 있음
- 15조, 16조에 불법정보에 대한 규정 및 제재 조항 있음

#### 《互聯网信息服務管理辦法》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互聯网信息服務管理辦法》已經 2 0 0 0 年 9 月 2 0 日國務院第 3 1 次常務會議通過，現予公布施行。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방법"이 2000년 9월 20일 국무원 제31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되어 이에 공포 시행한다.

第一條 爲了規範互聯网信息服務活動，促進互聯网信息服務健康有序發展，制定本辦法。

제1조 인터넷 정보서비스 활동을 규범화하고 인터넷 정보서비스의 건강하고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본 방법을 제정한다.

第二條 在中華人民共和國境內從事互聯网信息服務活動，必須遵守本辦法。本辦法所稱互聯网信息服務，是指通過互聯网向上网用戶提供信息的服務活動。

제2조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인터넷 정보서비스 활동에 종사하는 경우, 반드시 본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방법에서 인터넷 정보 서비스라 함은 인터넷을 통하여 인터넷 사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第三條 互聯网信息服務分爲經營性和非經營性兩類。經營性互聯网信息服務，是指通過互聯网向上网用戶有償提供信息或者網頁制作等服務活動。非經營性互聯网信息服務，是指通過互聯网向上网用戶無償提供具有公開性、共享性信息的服務活動。

제3조 인터넷 정보서비스는 경영성과 비경영성의 두 종류로 나뉜다. 경영성 인터넷 정보

영 의원은 '통신망 서비스 사업자의 거짓 정보 유통 금지'를 위해 가짜뉴스가 유통되는 통신망 서비스 사업자들이 거짓 정보 유통을 못하게 하고, 발견 시 삭제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하여 인터넷 사용자에게 유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홈페이지 제작 등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하여 인터넷 사용자에게 공개성, 공유성 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활동을 말한다.

第四條 國家對經營性互聯網信息服務實行許可制度；對非經營性互聯網信息服務實行備案制度。未取得許可或者未履行備案手續的，不得從事互聯網信息服務。

제4조 국가는 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대한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대하여 비안 제도를 실시한다. 허가를 취득하지 않았거나 비안 수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다.

第五條 從事新聞、出版、教育、醫療保健、藥品和醫療器械等互聯網信息服務，依照法律、行政法規以及國家有關規定須經有關主管部門審核同意的，在申請經營許可或者履行備案手續前，應當依法經有關主管部門審核同意。

제5조 신문, 출판, 교육, 의료보건, 약품과 의료기계 등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종사할 때 법률, 행정법규 및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반드시 관련 주관부서의 심사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경영허가를 신청하거나 비안수속을 이행하기 전에 법에 따라 관련 주관부서의 심사 동의를 거쳐야 한다.

第六條 從事經營性互聯網信息服務，除應當符合《中華人民共和國電信條例》規定的要求外，還應當具備下列條件：

제6조 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전기통신조례"에서 규정된 요구에 부합해야 하는 외에 다음의 조건을 구비해야 한다.

(一) 有業務發展計劃及相關技術方案；

(1) 업무발전계획 및 관련 기술방안이 있어야 한다;

(二) 有健全的網絡與信息安全保障措施，包括網站安全保障措施、信息安全保密管理制度、用戶信息安全管理制；

(2) 웹사이트 안전보장조치, 정보안전 비밀관리제도, 사용자 정보안전관리제도를 포함한 건전한 네트워크와 정보안전보장조치가 있어야 한다;

(三) 服務項目屬於本辦法第五條規定範圍的，已取得有關主管部門同意的文件。

(3) 서비스 항목이 본 방법 제5조 규정 범위에 속하는 경우, 이미 유관 주관부문의 동의 서류를 취득하여야 한다.

第七條 從事經營性互聯網信息服務，應當向省、自治區、直轄市電信管理机构或者國務院信息產業主管部門申請辦理互聯網信息服務增值電信業務經營許可証

(以下簡稱經營許可証)。省、自治區、直轄市電信管理机构或者國務院信息產業主管部門應當自收到申請之日起60日內審查完畢，作出批准或者不予批准的

決定。予以批准的，頒發經營許可証；不予批准的，應當書面通知申請人并說明理由。申請人取得經營許可証后，應當持經營許可証向企業登記機關辦理登記手續。

제7조 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종사하려면 성, 자치구, 직할시 전기통신관리기구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에 인터넷 정보서비스 부가가치 전기통신업무 경영허가증(이하 '경영허가증')의 수속을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전기통신관리기구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심사를 완료하고 비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비준할 경우 경영허가증을 발급한다; 비준하지 않을 경우,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신청인은 경영허가증을 취득한 후 경영허가증을 지참하고 기업등기기관에서 등기수속을 밟아야 한다.

第八條 從事非經營性互聯網信息服務，應當向省、自治區、直轄市電信管理机构或者國務院信息產業主管部門辦理備案手續。辦理備案時，應當提交下列材料：

제8조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종사하려면 성, 자치구, 직할시 전기통신관리기구 또는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에서 비안수속을 밟아야 한다. 비안 수속 시, 하기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一) 主辦單位和网站負責人的基本情況；

(1) 주최단위와 사이트 책임자의 기본 상황;

(二) 网站网址和服務項目；

(2) 웹사이트 주소와 서비스 항목;

(三) 服務項目屬於本辦法第五條規定範圍的，已取得有關主管部門的同意文件。

(3) 서비스 항목이 본 방법 제5조 규정 범위에 속하는 경우, 이미 유관 주관부문의 동의 문건을 취득하여야 한다.

省、自治區、直轄市電信管理机构對備案材料齊全的，應當予以備案并編号。

성, 자치구, 직할시 전기통신관리기구는 비안 자료가 완비된 경우, 비안하고 번호를 매겨야 한다.

第九條 從事互聯網信息服務，擬開辦電子公告服務的，應當在申請經營性互聯網信息服務許可或者辦理非經營性互聯網信息服務備案時，按照國家有關規定提出專項申請或者專項備案。

제9조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종사하고 전자공고서비스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허가 신청 또는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비안 수속을 할 때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신청 또는 특별비안을 제출해야 한다.

第十條 省、自治區、直轄市電信机构和國務院信息產業主管部門應當公布取得經營許可証或者已履行備案手續的互聯網信息服務提供者名單。

제10조 성, 자치구, 직할시 전기통신관리기구와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는 마땅히 경영



허가증을 취득하였거나 이미 비안수속을 이행한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명단을 공포하여야 한다.

第十一條 互聯網信息服務提供者應當按照經許可或者備案的項目提供服務，不得超出經許可或者備案的項目提供服務。

제11조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허가 또는 비안한 항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허가 또는 비안한 항목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非經營性互聯網信息服務提供者不得從事有償服務。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유상서비스에 종사할 수 없다.

互聯網信息服務提供者變更服務項目、網站網址等事項的，應當提前30日向原審核、發證或者備案機關辦理變更手續。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가 서비스 항목, 사이트 주소 등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0일 전에 원 심사확인, 증서발급 또는 비안기관에서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第十二條 互聯網信息服務提供者應當在其網站主頁的顯著位置標明其經營許可證編號或者備案編號。

제12조 인터넷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웹사이트 홈페이지의 눈에 띄는 위치에 그 경영허가증 번호 또는 비안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第十三條 互聯網信息服務提供者應當向上網用戶提供良好的服務，並保證所提供的信息內容合法。

제13조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사용자에게 양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아울러 제공한 정보내용의 합법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第十四條 從事新聞、出版以及電子公告等服務項目的互聯網信息服務提供者，應當記錄提供的信息內容及其發布時間、互聯網地址或者域名；互聯網接入服務提供者應當記錄上網用戶的上網時間、用戶帳號、互聯網地址或者域名、主叫電話號碼等信息。

제14조 신문, 출판 및 전자공고 등 서비스항목에 종사하는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는 제공한 정보내용 및 그 발표시간, 인터넷주소 또는 도메인네임을 기록해야 한다; 인터넷 접속서비스 제공자는 인터넷 사용자의 인터넷 접속시간, 사용자 계좌번호, 인터넷 주소 또는 도메인네임, 메인 전화번호 등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互聯網信息服務提供者和互聯網接入服務提供者的記錄備份應當保存60日，並在國家有關機關依法查詢時，予以提供。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와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자의 기록 백업은 60일간 보관해야 하며 국가 관련 기관이 법에 따라 조회할 때 제공해야 한다.

第十五條 互聯網信息服務提供者不得制作、复制、發布、傳播含有下列內容的

信息：

제15조 인터넷정보서비스제공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정보를 제작, 복제, 발포, 전파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 反對憲法所確定的基本原則的；

(1) 헌법이 확정한 기본원칙에 반대하는 경우

(二) 危害國家安全，洩露國家秘密，顛覆國家政權，破壞國家統一的；

(2) 국가안전을 해치고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국가정권을 전복하고 국가통일을 파괴하는 경우;

(三) 損害國家榮譽和利益的；

(3) 국가의 명예와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四) 煽動民族仇恨、民族歧視，破壞民族團結的；

(4) 민족 증오, 민족 차별을 선동하고 민족 단결을 파괴하는 경우;

(五) 破壞國家宗教政策，宣揚邪教和封建迷信的；

(5) 국가의 종교정책을 파괴하고 사교와 봉건미신을 선양한 경우;

(六) 散布謠言，擾亂社會秩序，破壞社會穩定的；

(6)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사회질서를 교란하고 사회안정을 파괴하는 경우;

(七) 散布淫穢、色情、賭博、暴力、凶殺、恐怖或者教唆犯罪的；

(7) 음란, 색정, 도박, 폭력, 살인, 공포를 유포하거나 범죄를 교사하는 경우;

(八) 侮辱或者誹謗他人，侵害他人合法權益的；

(8) 타인을 모욕하거나 비방하여 타인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한 경우;

(九) 含有法律、行政法規禁止的其他內容的。

(9) 법률, 행정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내용을 포함한다.

第十六條 互聯網信息服務提供者發現其網站傳輸的信息明顯屬於本辦法第十五條所列內容之一的，應當立即停止傳輸，保存有關記錄，并向國家有關機關報告。

제16조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는 그 사이트가 전송한 정보가 본 방법 제15조에서 열거한 내용 중 하나에 속함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전송을 중지하고 관련 기록을 보존하며 아울러 국가 유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第十七條 經營性互聯網信息服務提供者申請在境內境外上市或者同外商合資、合作，應當事先經國務院信息產業主管部門審查同意；其中，外商投資的比例應當符合有關法律、行政法規的規定。

제17조 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가 경내 경외 상장 또는 외상과의 합자, 합작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의 심사 동의를 거쳐야 한다; 그 중, 외상투자자의 비율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되어야 한다.

第十八條 國務院信息產業主管部門和省、自治區、直轄市電信管理机构，依法對互聯網信息服務實施監督管理。

제18조 국무원 정보산업 주관부서와 성, 자치구, 직할시 전기통신관리기구는 법에 따라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新聞、出版、教育、衛生、藥品監督管理、工商行政管理和公安、國家安全等有關主管部門，在各自職責範圍內依法對互聯網信息內容實施監督管理。

신문, 출판, 교육, 위생, 약품감독관리, 공상행정관리와公安, 국가안전 등 관련 주관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법에 따라 인터넷 정보내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第十九條 違反本辦法的規定，未取得經營許可証，擅自從事經營性互聯網信息服務，或者超出許可的項目提供服務的，由省、自治區、直轄市電信管理机构責令限期改正，有違法所得的，沒收違法所得，處違法所得3倍以上5倍以下的罰款；沒有違法所得或者違法所得不足5萬元的，處10萬元以上100萬元以下的罰款；情節嚴重的，責令關閉網站。

제19조 이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경영허가증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자의로 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종사하거나 허가를 초과한 프로젝트에서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전기통신관리기구는 기한부 시정을 명하고 위법소득이 있는 경우 위법소득을 몰수하며 위법소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법소득이 없거나 위법소득이 5만 위안 미만인 경우 10만 위안 이상 100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위가 엄중한 경우, 사이트 폐쇄를 명령한다.

違反本辦法的規定，未履行備案手續，擅自從事非經營性互聯網信息服務，或者超出備案的項目提供服務的，由省、自治區、直轄市電信管理机构責令限期改正；拒不改正的，責令關閉網站。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비안 수속을 이행하지 않고 자의로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에 종사하거나 비안한 항목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전기통신관리기구는 기한부 시정을 명한다.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사이트 폐쇄를 명령한다.

第二十條 制作、复制、發布、傳播本辦法第十五條所列內容之一的信息，構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責任；尚不構成犯罪的，由公安機關、國家安全機關依照《中華人民共和國治安管理条例》、《計算机信息网络國際聯網安全保護管理辦法》等有關法律、行政法規的規定予以處罰；對經營性互聯網信息服務提供者，并由發証機關責令停業整頓直至吊銷經營許可証，通知企業登記機關；對非經營性互聯網信息服務提供者，并由備案機關責令暫時關閉網站直至關閉網站。

제20조 본 방법 제15조에 열거한 내용 중 하나의 정보를 제작, 복제, 발표, 전파하여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公安기관, 국가안전기관이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 "컴퓨터정보네트워크 국제네트워크 안전보호 관리방법"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는 증서발급기관이 영업정지정비를 명하고 나아가서는 경영허가증을 말소하고 기업등기기관에 통지한다;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비

안기관은 사이트 임시 폐쇄 내지 폐쇄 명령을 내린다.

第二十一條 未履行本辦法第十四條規定的義務的，由省、自治區、直轄市電信管理机构責令改正；情節嚴重的，責令停業整頓或者暫時關閉網站。

제21조 본 방법 제14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전기통신관리기구는 시정을 명한다; 경위가 엄중한 경우, 휴업정돈을 명령하거나 사이트를 임시 폐쇄한다.

第二十二條 違反本辦法的規定，未在其網站主頁上標明其經營許可証編號或者備案編號的，由省、自治區、直轄市電信管理机构責令改正，處5 0 0 0元以上5萬元以下的罰款。

제22조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고 그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그 경영허가증 번호 또는 비안번호를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전기통신관리기구는 시정을 명하고 5,000위안 이상, 5만 위안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第二十三條 違反本辦法第十六條規定的義務的，由省、自治區、直轄市電信管理机构責令改正；情節嚴重的，對經營性互聯網信息服務提供者，并由發証機關吊銷經營許可証，對非經營性互聯網信息服務提供者，并由備案機關責令關閉網站。

제23조 이 방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전기통신관리기구는 시정을 명한다; 경위가 엄중한 경우, 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허가증 발급기관이 경영허가증을 회수하여 취소하고, 비경영성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에 대하여 비안기관이 사이트 폐쇄를 명한다.

第二十四條 互聯網信息服務提供者在其業務活動中，違反其他法律、法規的，由新聞、出版、教育、衛生、藥品監督管理和工商行政管理等有關主管部門依照有關法律、法規的規定處罰。

제24조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가 그 업무활동 중에 기타 법률,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신문, 출판, 교육, 위생, 약품감독관리와 공상행정관리 등 관련 주관부서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第二十五條 電信管理机构和其他有關主管部門及其工作人員，玩忽職守、濫用職權、徇私舞弊，疏于對互聯網信息服務的監督管理，造成嚴重后果，構成犯罪的，依法追究刑事責任；尚不構成犯罪的，對直接負責的主管人員和其他直接責任人員依法給予降級、撤職直至開除的行政處分。

제25조 전기통신관리기구나 기타 관련 주관부서 및 그 업무인원이 직무유기, 직권남용, 부정행위, 인터넷정보서비스에 대한 감독관리를 소홀히 하여 엄중한 결과를 초래하고 범죄를 구성한 경우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하여 법에 따라 강등, 해직 내지 해고의 행정처

분을 내린다.

第二十六條 在本辦法公布前從事互聯網信息服務的，應當自本辦法公布之日起 60 日內依照本辦法的有關規定補辦有關手續。

제26조 이 방법을 공포하기 전에 인터넷 정보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우, 이 방법을 공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이 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수속을 보충 처리하여야 한다.

第二十七條 本辦法自公布之日起施行。

제27조 이 방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 인터넷 스테이션에서 음란, 색정 등 불량정보의 전파를 금지하는 자율 규범 《互聯網站禁止傳播淫穢、色情等不良信息自律規範》

○ 중국 인터넷 협회가 국무원 내부의 부처가 아니기 때문에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내부 매뉴얼로 판단

**《互聯網站禁止傳播淫穢、色情等不良信息自律規範》  
인터넷 스테이션에서 음란, 색정 등 불량정보의 전파를 금지하는 자율 규범**

互聯網站禁止傳播淫穢、色情等不良信息自律規範 (2004年6月10日)

인터넷 스테이션의 음란, 색정 등 불량정보 전파금지 자율규범 (2004년 6월 10일)

第一條 爲促進互聯網信息服務提供商加強自律，遏制淫穢、色情等不良信息通過互聯網傳播，推動互聯網行業的持續健康發展，特制訂本規範。

제1조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업체의 자율 강화를 촉진하고 음란, 색정 등 불량정보의 인터넷 전파를 억제하며 인터넷 업계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하여 본 규범을 특별히 제정한다.

第二條 互聯網站不得登載和傳播淫穢、色情等中華人民共和國法律、法規禁止的不良信息內容。

제2조 인터넷사이트는 음란, 색정 등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법규가 금지하는 불량정보 내용을 게재하거나 전파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三條 淫穢信息是指在整体上宣揚淫穢行爲，具有下列內容之一，挑動人們性欲，導致普通人腐化、墮落，而又沒有藝術或科學价值的文字、圖片、音頻、視頻等信息內容，包括：

제3조 음란정보란 전반적으로 음란행위를 선양하는 것으로 다음의 내용 중 하나가 있고 사람들의 성욕을 부추겨 일반인의 부화, 타락을 초래하며 예술적 또는 과학적 가치가 없는 문자, 그림, 오디오, 비디오 등 정보내용을 포함한다.

1. 淫褻性地具体描寫性行爲、性交及其心理感受；
1. 음란하고 외설적으로 성행위, 성교 및 그 심리적 느낌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2. 宣揚色情淫蕩形象；
2. 색정적이고 음탕한 이미지를 선양;
3. 淫褻性地描述或者傳授性技巧；
3. 성적 기교를 음란하게 묘사하거나 가르친다;
4. 具体描寫亂倫、強姦及其他性犯罪的手段、過程或者細節，可能誘發犯罪的；
4. 근친상간, 강간 기타 성범죄의 수단, 과정 또는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具体描寫少年儿童的性行爲；
5. 유소년들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6. 淫褻性地具体描寫同性戀的性行爲或者其他性變態行爲，以及具体描寫與性變態有關的暴力、虐待、侮辱行爲；
6. 동성애적 성행위 또는 기타 성도착적 행위를 음행적으로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성도착과 관련된 폭력, 학대, 모욕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경우;
7. 其他令普通人不能容忍的對性行爲淫褻性描寫。
7. 일반 사람들이 용납할 수 없는 그 밖의 성행위에 대한 음란한 묘사

第四條 色情信息是指在整体上不是淫穢的，但其中一部分有第三條中1至7的內容，對普通人特別是未成年人的身心健康有毒害，缺乏藝術价值或者科學价值的文字、圖片、音頻、視頻等信息內容。

제4조 에로티시즘이란 전체적으로는 음란하지 않으나 그중 일부에 제3조에서 7까지의 내용이 있고 일반인, 특히 미성년자의 심신건강에 해악을 끼치고 예술적 가치나 과학적 가치가 결여된 문자, 그림, 오디오, 동영상 등의 정보내용을 말한다.

第五條 互聯网站從事登載新聞信息、電子公告服務以及移動電信增值服務等業務，應當依照有關法律法規的規定，履行審批或備案手續，取得合法資格；新聞信息應来源于具有向互聯网站提供新聞信息資質的媒体或其他合法的內容提供商。

제5조 인터넷사이트가 뉴스정보 게재, 전자공고서비스 및 이동통신 부가가치 서비스 등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마땅히 관련 법률법규의 규정에 따라 심사비준 또는 비안수속을 이행하고 합법적인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뉴스 정보는 인터넷 사이트에 뉴스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언론이나 기타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자로부터 얻어야 한다.

第六條 不渲染、不集中展現關於性暴力、性犯罪、性緋聞等新聞信息；此類內容須嚴格控制數量，并不得在多個頻道或欄目同時登載。登載這類新聞信息，

應有利于弘揚社會正气和維護社會公德，確保導向正确。

제6조 성폭력, 성범죄, 성스캔들 등에 대한 뉴스 정보를 노출하거나 집중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은 반드시 수량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며, 여러 채널이나 코너에 동시에 게재해서는 안 된다. 이런 종류의 뉴스 정보를 게재하는 것은 사회 정기를 고양하고 사회 공중도덕을 수호하는 데 유리해야 하며, 올바른 방향의 선도를 확보해야 한다.

第七條 登載有關醫學醫療、生理衛生、婚姻家庭、人體藝術和与此相關的自然、社會科學信息內容，應建立信息內容的審核制度，做到內容健康、科學，來源合法、可靠。

제7조 의학의료, 생리위생, 혼인가정, 인체예술과 이와 관련된 자연, 사회과학 정보내용을 게재하는데 정보내용의 심사제도를 수립하여 내용이 건강하고 과학적이며 출처가 합법적이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

第八條 不開設或變相開設為不道德性行爲和性交易提供便利的頻道或專欄；開設交友類專題頻道或欄目，應明確說明該欄目的目的、网友行爲規範和公布有關法律警示；非注册用戶不得在該類頻道或欄目張貼信息，對注册用戶上傳的信息實行先審后發。

제8조 부도덕한 성행위 및 성매매를 용이하게 하는 채널이나 칼럼을 개설하거나 변칙적으로 개설하지 아니한다. 친교류 전문 채널 또는 코너를 개설할 경우, 해당 코너의 목적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며, 네티즌 행위 규범과 관련 법률 경고를 공포해야 한다; 비등록 사용자는 해당 채널이나 코너에 정보를 게시할 수 없으며, 등록 사용자가 올린 정보에 대하여 선심사후발송을 실시한다.

第九條 對利用互聯網電子公告服務系統，短信息服務系統傳播淫穢、色情等不良信息的用戶，應將其IP地址列入“黑名單”，對涉嫌犯罪的，應主動向公安機關舉報。

제9조 인터넷 전자공고서비스 시스템, 메시지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하여 음란, 선정 등 불량정보를 전파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반드시 그 IP주소를 "블랙리스트"에 포함시켜야 하며,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주동적으로公安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第十條 不与非法网站建立任何性質的合作關係；不与其他网站或企業建立違背政府有關部門規定的聯盟或協作關係。

제10조 불법사이트와 어떠한 성격의 협력관계도 맺지 아니한다. 정부 관련 기관의 규정에 위배되는 다른 웹사이트나 기업과 제휴나 협력 관계를 맺지 않는다.

第十一條 不以任何形式登載和傳播含有淫穢、色情等不良信息內容的廣告；不為含有淫穢、色情等不良信息內容的网站或網頁提供任何形式的宣傳和鏈接。

제11조 음란, 선정 등 불량한 정보를 포함하는 광고를 어떠한 형식으로도 게재하거나 전파하지 아니한다. 음란물, 음란물 등 나쁜 정보를 담고 있는 웹사이트나 웹페이지에 어떠한

한 형태의 홍보나 링크도 제공하지 않는다.

第十二條 違反本自律規範的互聯網站，應及時糾正違規行爲；經勸說、警告无效的，互聯網新聞信息服務工作委員會有義務向政府有關部門建議，取消其提供相關信息服務的資質。

제12조 본 자율규범을 위반한 인터넷 사이트는 마땅히 적시에 규정위반 행위를 시정하여야 한다; 권유를 거쳐 경고가 무효인 경우,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업무 위원회는 정부 관련 부문에 건의하여 관련 정보 서비스 제공 자격을 취소할 의무가 있다.

第十三條 互聯網信息服務提供商和從業人員均有自覺維護中華人民共和國法律法規、社會主義道德規範的責任和義務，自覺接受政府的管理。

제13조 인터넷 정보 서비스 제공자와 종업원은 모두 자발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법규, 사회주의 도덕 규범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자발적으로 정부의 관리를 받는다.

第十四條 加入《互聯網站信息服務自律公約》的成員單位應遵守本自律規範。

제14조 "인터넷 사이트 정보 서비스 자율 협약"에 가입한 구성원 단위는 본 자율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第十五條 《互聯網站禁止傳播淫穢、色情等不良信息自律規範》由互聯網新聞信息服務工作委員會負責監督執行。

제15조 "인터넷사이트의 음란, 색정 등 불량정보 전파금지 자율규범"은 인터넷뉴스정보서비스 업무위원회가 감독집행을 책임진다.

第十六條 本規範從發布之日起執行。

제16조 본 규범은 발표일로부터 집행한다.

中國互聯網協會

중국인터넷협회

互聯網新聞信息服務工作委員會

인터넷 뉴스 정보 서비스 업무 위원회

2004年6月10日

2004년 6월 10일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전파하는 라디오, 영화, TV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통고 《關於加強通過信息網絡向公衆傳播廣播電影電視類節目管理的通告》



- o 제정주체가 공무원 소속 부처가 맞기 때문에 제정당시에는 법률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제정된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어 타법에 의해 폐지된 것인지 확인이 필요

**《關於加強通過信息網絡向公眾傳播廣播電影電視類節目管理的通告》  
인터넷 스테이션에서 음란, 선정 등 불량정보의 전파를 금지하는 자율 규범**

關於加強通過信息網絡向公眾傳播廣播電影電視類節目管理的通告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대중에게 전파하는 라디오, 영화, TV 프로그램 관리 강화에 관한 통고

隨着信息網絡的快速發展，網上傳播廣播電影電視類節目的活動越來越普遍，境內有一些單位和個人，利用包括國際互聯網絡在內的各种信息網絡，陸續開辦了傳播廣播電影電視類節目的服務。根據國家有關規定通告如下：

정보네트워크의 빠른 발전에 따라 인터넷에서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류 프로그램을 전파하는 활동이 점점 더 보편화되어 국내의 일부 단위와 개인은 국제인터넷망을 포함한 각종 정보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류 프로그램을 전파하는 서비스를 속속 개설하였다.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통고한다:

一、 在境內通過包括國際互聯網絡在內的各种信息網絡傳播廣播電影電視類節目，須報國家廣播電影電視總局批准。

1. 경내에서 국제인터넷망을 포함한 각종 정보망을 통하여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류 프로그램을 전파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라디오, 영화, 텔레비전총국의 기준을 받아야 한다.

二、 在境內通過信息網絡傳播廣播電影電視類節目，不得擅自使用“網絡廣播電台”、“網絡中心”、“網絡電視”等稱謂。

2. 경내에서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라디오, 영화, TV류 프로그램을 전파하는 경우, "네트워크 라디오 방송국", "네트워크 센터", "네트워크 TV" 등 명칭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

三、 經批准通過信息網絡傳播的廣播電視新聞類節目（包括新聞和新聞類專題），必須是境內廣播電台、電視台制作、播放的節目。

3. 기준을 거쳐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전파하는 라디오, TV 뉴스 프로그램(뉴스와 뉴스 관련 특집 포함)은 반드시 경내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이 제작, 방송하는 프로그램이어야 한다.

四、 經批准通過信息網絡傳播的廣播電影電視類節目禁止以下內容：

4. 기준을 거쳐 정보네트워크를 통해 전파하는 라디오, 영화, TV류 프로그램은 다음의 내

용을 금지한다:

- (一) 危害國家統一、主權和領土完整的；
- (1) 국가의 통일, 주권, 영토의 보전을 해치는 것;
- (二) 危害國家安全、榮譽和利益的；
- (2) 국가안전, 명예와 이익을 해치는 경우;
- (三) 煽動民族分裂，破壞民族團結的；
- (3) 민족분열을 선동하고 민족단결을 파괴하는 경우;
- (四) 洩漏國家秘密的；
- (4) 국가기밀을 누설한 경우;
- (五) 誹謗、侮辱他人的
- (5)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한 경우
- (六) 宣揚淫穢、迷信或者渲染暴力的；
- (6) 음란, 미신을 선양하거나 폭력을 과장하는 경우;
- (七) 虛假的信息；
- (7) 허위 정보
- (八) 未經國家廣播電影電視總局認定的影視劇；
- (8) 국가라디오, 영화, 텔레비전총국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영화·텔레비전, 드라마;
- (九) 從網絡或境外電視上收錄下來的境外節目；
- (9) 인터넷 또는 경외 텔레비전에 수록된 경외 프로그램;
- (十) 法律、法規規定禁止的其它內容。
- (10) 법률, 법규가 금지하는 기타 내용

五、凡申請在境內通過信息網絡傳播廣播電影電視類節目的單位或個人，應向國家廣播電影電視總局提交包括下列內容的書面申報材料：

5. 境內에서 정보네트워크를 통한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류 프로그램 전파를 신청하는 단위 또는 개인은 국가라디오, 영화, 텔레비전총국에 하기 내용을 포함한 서면 신고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1. 節目的內容、類別；
- 1. 프로그램 내용, 카테고리,
- 2. 通過信息網絡傳播廣播電影電視類節目的服務方式；
- 2.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라디오, 영화, TV류 프로그램을 전파하는 서비스방식;
- 3. 本單位法定代表人、網址、域名、所鏈接網站名、電子郵件地址等。
- 3. 본 단위 법정 대표인, 웹사이트 주소, 도메인 네임, 링크된 웹사이트 이름, 이메일 주소 등.

六、已經在境內通過信息網絡傳播廣播電影電視類節目的單位和個人，應于1999年12月1日之前向國家廣播電影電視總局辦理申報手續。

6. 이미 境內에서 정보네트워크를 통하여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류 프로그램을 전파하는 단위와 개인은 1999년 12월 1일 이전에 국가라디오, 영화, 텔레비전총국에 신고수속을 밟아야 한다.

國家廣播電影電視總局  
국가라디오영화텔레비전총국  
一九九九年十月  
1999년 10월

#### □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互聯网络信息服务管理辦法》

○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해석으로서, 20년 9월 6일부터 시행

- 다만, 제정주체가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없고, 해석지침 정도로 해석이 가능할 듯

※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인터넷 안전 수호에 관한 결정"의 규정에 근거

#### 《互聯网络信息服务管理辦法》 인터넷 정보서비스 관리방법

(2004년 9월 1일最高人民法院審判委員會第1323次會議、2004년 9월 2일最高人民檢察院第十屆檢察委員會第26次會議通過)

2004년 9월 1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323차 회의, 2004년 9월 2일 최고인민검찰원 제10기 검찰위원회 제26차 회의 통과)

(法釋 [ 2 0 0 4 ] 1 1 号)

(법석(2004) 11호)

中華人民共和國最高人民法院公告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공고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檢察院關於辦理利用互聯网络、移動通訊終端、聲訊台制作、复制、出版、販賣、傳播 淫穢電子信息刑事案件具体應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已于 2 0 0 4 年 9 月 1 日由最高人民法院審判委員會第 1 3 2 3 次會議、2 0 0 4 年 9 月 2 日由最高人民檢察院第十屆檢察委員會第 2 6 次會議通過，現予公布，自 2 0 0 4 年 9 月 6 日起施行。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인민검찰원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이동통신 단말기, 카피 데스크 제작, 음란 전자정보의 복제, 출판, 판매, 유포 형사사건의 구체적인 법률 응용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은 2004년 9월 1일 최고인민법원 재판위원회 제1323차 회의, 2004년 9월 2일 최고인민검찰원 제10기 검찰위원회 제26차 회의에서 통과되었다. 현재 공포하며, 20년 9월 6일부터 시행한다.

二〇〇四年九月三日

2014년 9월 3일

爲依法懲治利用互聯網、移動通訊終端制作、复制、出版、販賣、傳播淫穢電子信息、通過聲訊台傳播淫穢語音 信息等犯罪活動，維護公共網絡、通訊的正常秩序，保障公衆的合法權益，根据《中華人民共和國刑法》、《全國人民代表大會常務委員會關於維護互聯網安全的決定》的規定，現對辦理該類刑事案件具体應用法律的若干問題解釋如下：

인터넷,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음란 전자정보를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전파하고 음란 음성정보를 음란 데스크를 통해 전파하는 등의 범죄활동을 법에 따라 처벌하기 위하여, 공공네트워크, 통신의 정상질서를 수호하고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인터넷 안전 수호에 관한 결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현재 해당 형사사건 처리에 법률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第一條以牟利爲目的，利用互聯網、移動通訊終端制作、复制、出版、販賣、傳播淫穢電子信息，具有下列情形 之一的，依照刑法第三百六十三條第一款的規定，以制作、复制、出版、販賣、傳播淫穢物品牟利罪定罪處罰：

제1조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인터넷,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음란 전자정보를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전파한 경우 다음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음란 물품을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전파하여 이익을 도모한 죄로 처벌한다.

(一) 制作、复制、出版、販賣、傳播淫穢電影、表演、動畫等視頻文件二十个以上的；

(1) 음란영화, 연기, 애니메이션 등 동영상 파일을 20개 이상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전파한 경우;

(二) 制作、复制、出版、販賣、傳播淫穢音頻文件一百个以上的；

(2) 음란 음성파일을 100개 이상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유포한 경우;

(三) 制作、复制、出版、販賣、傳播淫穢電子刊物、圖片、文章、短信息等二百件以上的；

(3) 음란 전자간행물, 그림, 글, 메시지 등 200건 이상을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유포한 경우;

(四) 制作、复制、出版、販賣、傳播的淫穢電子信息，實際被點擊數達到一萬次以上的；

(4)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유포된 음란전자정보가 실제 조회수가 1만회 이상인 경우;

(五) 以會員制方式出版、販賣、傳播淫穢電子信息，注冊會員達二百人以上的；

(5) 회원제 방식으로 음란 전자정보를 출판, 판매, 전파하고 등록회원이 200명 이상인 경우;

(六) 利用淫穢電子信息收取廣告費、會員注冊費或者其他費用，違法所得一萬元以上的；

(6) 음란 전자정보를 이용하여 광고비, 회원 등록비 또는 기타 비용을 수취하였으며 위법소득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七) 數量或者數額雖未達到第(一)項至第(六)項規定標準，但分別達到其中兩項以上標準一半以上的；

(7) 수량 또는 액수가 제 (1) 항부터 제 (6) 항에서 규정한 표준에 미달하지만 각각 그 중 2항 이상 표준의 절반 이상에 달한 경우;

(八) 造成嚴重后果的。

(8)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利用聊天室、論壇、即時通信軟件、電子郵件等方式，實施第一款規定行爲的，依照刑法第三百六十三條第一款 的規定，以制作、复制、出版、販賣、傳播淫穢物品牟利罪定罪處罰。

채팅방, 토론방, 메신저, 전자우편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행위를 한 자는 형법 제36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음란물을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유포하여 이익을 도모한 죄로 처벌한다.

第二條實施第一條規定的行爲，數量或者數額達到第一條第一款第(一)項至第(六)項規定標準五倍以上的，應當認定爲刑法第三百六十三條第一款規定的“情節嚴重”；達到規定標準二十五倍以上的，應當認定爲“情節特別嚴重”。

제2조 제1조에서 규정한 행위의 수량 또는 액수가 제1조 제1관 제(1)항부터 제(6)항에서 규정한 기준의 5배 이상에 달할 경우, 형법 제363조 제1관에서 규정한 "상황이 엄중"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규정 기준의 25배 이상에 도달하면 "상황이 특별히 엄중하다"로 인정한다.

第三條不以牟利爲目的，利用互聯網或者移動通訊終端傳播淫穢電子信息，具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刑法第三百六十四條第一款的規定，以傳播淫穢物品罪定罪處罰：

제3조 이익을 도모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인터넷 또는 이동통신 단말기를 이용하여 음란 전자정보를 전파한 경우 다음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형법 제3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음란 물품 전파죄로 처벌한다.

(一) 數量達到第一條第一款第(一)項至第(五)項規定標準二倍以上的；

(1) 수량이 제1조 제1관 제(1)항부터 제(5)항에서 규정한 기준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경우;

(二) 數量分別達到第一條第一款第(一)項至第(五)項兩項以上標準的；

(2) 수량이 각각 제1조 제1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2항 이상의 표준에 도달한 경우;

(三) 造成嚴重后果的。

(3)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利用聊天室、論壇、即時通信軟件、電子郵件等方式，實施第一款規定行爲的，依照刑法第三百六十四條第一款的規定，以傳播淫穢物品罪定罪處罰。

채팅방, 토론방, 메신저, 전자우편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제1항에서 규정한 행위를 한 자는 형법 제3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한다.

第四條明知是淫穢電子信息而在自己所有、管理或者使用的网站或者網頁上提供直接鏈接的，其數量標準根據所鏈接的淫穢電子信息的種類計算。

제4조 음란전자정보임을 알면서도 자신이 소유, 관리 또는 사용하는 웹사이트 또는 웹페이지에 직접 링크를 제공하는 경우, 그 수량기준은 링크된 음란전자정보의 종류에 따라 계산한다.

第五條以牟利爲目的，通過聲訊台傳播淫穢語音信息，具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刑法第三百六十三條第一款的規定，對直接負責的主管人員和其他直接責任人員以傳播淫穢物品牟利罪定罪處罰：

제5조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성신대를 통하여 음란 음성정보를 전파한 경우 다음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형법 제363조 제1관의 규정에 따라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하여 음란물을 전파하여 이익을 도모한 죄로 처벌한다.

- (一) 向一百人次以上傳播的；
- (1) 연인원 100명 이상에게 전파한 경우;
- (二) 違法所得一萬元以上的；
- (2) 위법소득이 1만 위안 이상인 경우;
- (三) 造成嚴重後果的。

(3)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實施前款規定行爲，數量或者數額達到前款第（一）項至第（二）項規定標準五倍以上的，應當認定爲刑法第三百六十三條第一款規定的“情節嚴重”；達到規定標準二十五倍以上的，應當認定爲“情節特別嚴重”。

전항에서 규정한 행위의 수량 또는 액수가 전항 제(1)항에서 제(2)항에서 규정한 기준의 5배 이상에 달할 경우, 형법 제363조 제1항에서 규정한 "상황이 엄중"하다고 인정하여야 한다. 규정 기준의 25배 이상에 도달하면 "상황이 특별히 엄중하다"로 인정한다.

第六條實施本解釋前五條規定的犯罪，具有下列情形之一的，依照刑法第三百六十三條第一款、第三百六十四條第一款的規定從重處罰：

제6조 본 해석을 실시하기 전 5조에서 규정한 범죄가 다음의 정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형법 제363조 제1관, 제364조 제1관의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한다.

- (一) 制作、复制、出版、販賣、傳播具体描繪不滿十八周歲未成年人性行爲的淫穢電子信息的；

(1)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음란 전자정보를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전파한 경우;

(二) 明知是具体描繪不滿十八周歲的未成人人性行為的淫穢電子信息而在自己所有、管理或者使用的网站或者 網頁上提供直接鏈接的；

(2)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한 음란전자정보임을 알면서도 자신이 소유, 관리 또는 사용하는 웹사이트 또는 웹페이지에 직접 링크를 제공한 경우;

(三) 向不滿十八周歲的未成人販賣、傳播淫穢電子信息和語音信息的；

(3)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음란 전자정보와 음성정보를 판매, 전파한 경우;

(四) 通過使用破坏性程序、惡意代碼修改用戶計算机設置等方法，強制用戶訪問、下載淫穢電子信息的。

(4) 파괴적인 프로그램, 악성코드로 사용자의 컴퓨터 설정을 수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의 접속을 강제하고 음란전자정보를 다운로드하는 경우.

第七條明知他人實施制作、复制、出版、販賣、傳播淫穢電子信息犯罪，爲其提供互聯网接入、服務器托管、网 絡存儲空間、通訊傳輸通道、費用結算等幫助的，對直接負責的主管人員和其他直接責任人員，以共同犯罪論處。

제7조 타인이 음란전자정보의 제작, 복제, 출판, 판매, 전파 범죄를 실행한 것을 알면서 그에게 인터넷 접속, 서버 호스팅, 네트워크 저장공간, 통신 전송통로, 비용 결산 등의 도움을 제공한 경우, 직접 책임을 지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 책임인원에 대하여 공동 범죄로 처벌한다.

第八條利用互聯网、移動通訊終端、聲訊台販賣、傳播淫穢書刊、影片、录像帶、录音帶等以實物爲載體的淫穢 物品的，依照《最高人民法院關於審理非法出版物刑事案件具体應用法律若干問題的解釋》的有關規定定罪處罰。

제8조 인터넷, 이동통신 단말기, 성신대를 이용하여 음란 간행물, 영화, 비디오테이프, 녹음테이프 등 실물을 담체로 하는 음란물을 판매, 전파한 경우 "최고인민법원의 불법출판물 형사사건 심리에 법률을 구체적으로 응용하는 약간의 문제에 관한 해석"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第九條刑法第三百六十七條第一款規定的“其他淫穢物品”，包括具体描繪性行爲或者露骨宣揚色情的誨淫性的 視頻文件、音頻文件、電子刊物、圖片、文章、短信息等互聯网、移動通訊終端電子信息和聲訊台語音信息。

제9조 형법 제367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타 음란물"은 성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노골적으로 음란한 교란성을 선양하는 영상파일, 음성파일, 전자간행물, 그림, 문장, 짧은 메시지 등 인터넷, 이동통신 단말기의 전자정보와 성대음성정보를 포함한다.

有關人體生理、醫學知識的電子信息和聲訊台語音信息不是淫穢物品。包含色情內容的有藝術價值的電子文學、藝術作品不視爲淫穢物品。

인체 생리, 의학 지식에 관한 전자 정보와 성대에서의 음성 정보는 음란물이 아니다. 음란물이 포함된 예술적 가치가 있는 전자 문학, 예술 작품은 음란물로 간주되지 않는다.

## 참 고 문 헌

### 국내 문헌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17). GDPR 발효에 따른 주요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입법동향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8). 유럽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국내 데이터 제도 개선 방안. STEPI Insight, 227권.
- 미디어미래연구소(2020), 개정 데이터 3법의 기회와 도전, M-REPORT, 2020-Vol.02
- 박현일 (2015). 유럽회의 108호 협약의 의의와 우리나라 가입의 필요성. 경희법학, 제50권, 4호, 175~204.
-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2020). 우리기업을 위한 EU일반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북. [url]  
[https://gdpr.kisa.or.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768&fileSn=0](https://gdpr.kisa.or.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01768&fileSn=0)
- 오병철(2017), 적법하게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경희법학 52. 4 (2017): 165-202.; 경희법학연구소
- 함인선 (2014) 유럽정보보호법. 광주: 전남대학교 출판부

### 해외 문헌

- Gesetz betreffend das Urheberrecht an Werken der bildenden Künste und der Photographie (KunstUrhG). [url] <https://www.gesetze-im-internet.de/kunsturhg/>
- 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UWG). [url] [https://www.gesetze-im-internet.de/uwg\\_2004/index.html#BJNR141400004BJNE000704360](https://www.gesetze-im-internet.de/uwg_2004/index.html#BJNR141400004BJNE000704360)
- 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 (Netzwerkdurchsetzungsgesetz - NetzDG). [url]  
<https://www.gesetze-im-internet.de/netzdg/BJNR335210017.html>
- Jugendmedienschutz-Staatsvertrag (JMStV). [url]  
<https://www.gesetze-bayern.de/Content/Document/JMStV>
- Jugendschutzgesetz (JuSchG). [url]  
<https://www.gesetze-im-internet.de/juschg/BJNR273000002.html#BJNR273000002BJNG000600000>
- Strafgesetzbuch (StGB). [url]  
<https://www.gesetze-im-internet.de/stgb/index.html#BJNR001270871BJNE064804360>
- The 2020 Florida Statutes. 810.145 Video voyeurism. [url]  
[http://www.leg.state.fl.us/Statutes/index.cfm?App\\_mode=Display\\_Statute&URL=0800-0899/0810/Sections/0810.145.html](http://www.leg.state.fl.us/Statutes/index.cfm?App_mode=Display_Statute&URL=0800-0899/0810/Sections/0810.145.html)
- the Controlling the Assault of Non-Solicited Pornography and Marketing Act of 2003.  
 [ u r l ]  
<https://uscode.house.gov/view.xhtml?req=granuleid%3AUSC-prelim-title15-chapter103&edition=prelim>
- 鈴木絢子(2020). デジタル・プラットフォームと競争政策. <調査と情報: ISSUE BRIEF> No.1088(2020. 2.25)  
[https://dl.ndl.go.jp/view/download/digidepo\\_11451855\\_po\\_1088.pdf?contentNo=1](https://dl.ndl.go.jp/view/download/digidepo_11451855_po_1088.pdf?contentNo=1)
- 神足祐太郎(2020). サイバーセキュリティ政策の現状. <調査と情報: ISSUE BRIEF> No.1078(2020.1.9)  
[https://dl.ndl.go.jp/view/download/digidepo\\_11423782\\_po\\_1078.pdf?contentNo=1](https://dl.ndl.go.jp/view/download/digidepo_11423782_po_1078.pdf?contentNo=1)
- 神足祐太郎(2020). 通信の秘密をめぐる議論の諸相>レファレンス> No.834.  
[https://dl.ndl.go.jp/view/download/digidepo\\_11516811\\_po\\_083403.pdf?contentNo=1](https://dl.ndl.go.jp/view/download/digidepo_11516811_po_083403.pdf?contentNo=1)
- 神足祐太郎(2020). ‘フェイクニュース’/偽情報問題の現状と対策. ソーシャ

ルメディアの動向と課題:科学技術に関する調査 プロジェクト報告書(Trends and Issues of Social Media)  
[https://dl.ndl.go.jp/view/download/digidepo\\_11472873\\_po\\_20190508.pdf?contentNo=1](https://dl.ndl.go.jp/view/download/digidepo_11472873_po_20190508.pdf?contentNo=1)

高田寛(2015). 特定電気通信役務提供者に対する発信者情報開示請求権についての一考察. <富山大学紀要 富大経済論集> 61(2)

総務省(2020). インターネット上の誹謗中傷への 対応に関する政策パッケージ(2020年9月)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04625.pdf](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04625.pdf)

総務省(2017). 電気通信事業における個人情報保護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507466.pdf](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507466.pdf)

インターネット・ホットラインセンター(2020). 2020年上半期におけるインターネット・ホットラインセンターの運用状況について(2020年10月30日)

[http://www.internethotline.jp/pdf/statistics/first\\_half\\_2020.pdf](http://www.internethotline.jp/pdf/statistics/first_half_2020.pdf)

電気通信事業者協会・テレコムサービス協会・日本インターネットプロバイダー協会・日本ケーブルテレビ連盟(2014). インターネット上の違法な情報への対応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消費者保護ルールの在り方に関する検討會

[https://www.soumu.go.jp/main\\_sosiki/kenkyu/shouhisha\\_hogo/index.html](https://www.soumu.go.jp/main_sosiki/kenkyu/shouhisha_hogo/index.html)

発信者情報開示の在り方に関する研究會

[https://www.soumu.go.jp/main\\_sosiki/kenkyu/information\\_disclosure/index.html](https://www.soumu.go.jp/main_sosiki/kenkyu/information_disclosure/index.html)

홈페이지

유튜브 홈페이지 서비스약관(<https://www.youtube.com/t/terms>)

네이버 홈페이지 네이버 약관 및 개인정보보호

(<https://policy.naver.com/policy/service.html>)

카카오 홈페이지 이용약관(<https://www.kakao.com/policy/terms?type=a&lang=ko>)

● 저 자 소 개 ●

---

권 오 상

- 연세대 경영학과 졸업
- 연세대 경영학과 석사
- 연세대 법학과 박사
- 현 미디어미래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윤 금 낭

- 성신여대 법학과 졸업
- 성균관대 법학과 석사
- 현 미디어미래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이 순 환

- 고려대 법학과 졸업
- 고려대 법학과 석사
- 고려대 법학과 박사수료
- 현 미디어미래연구소 책임연구위원

김 민 주

- 연세대 법학과 졸업
- 연세대 법학과 석사
- 연세대 법학과 박사수료
- 현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

남 승 용

- 동국대 경제학과 졸업
- 동국대 경제학과 석사
- 동국대 경제학과 박사수료
- 현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

노 창 희

- 단국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 중앙대 신문방송학 석사
- 중앙대 신문방송학 박사
- 현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

성 지 연

-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졸업
-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석사
- 인하대 언론정보학과 박사
- 현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

유 지 윤

- 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졸업
- 중앙대 언론정보학과 석사
- 현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

방송융합정책연구 KCC-2020-33

이용자보호 강화를 위한 정보통신망법령

정비방안 연구

---

2020년 12월 31일 인쇄

2020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발행처 방송통신위원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TEL: 02-2110-1323

Homepage: [www.kcc.go.kr](http://www.kcc.go.kr)

---